

체육예술건강과-2068

(2020. 2. 17.)



배움이 즐거운 학교 · 함께 가꾸는 경남교육

2020년 학생건강증진 기본계획[건강관리분야]

2020. 2.



경상남도교육청

<http://www.gne.go.kr>

(체육예술건강과)

학생건강 유지 및 증진을 통한 신체적·정신적·사회적으로 건강한 민주시민 육성



CONTENTS

I 학교보건 운영관리 내실화 1

1. 학생건강증진계획 수립 3
2. 보건교육 및 업무관리 효율화 4
3. 학교보건실 시설·설비 확보 8
4. 학생건강증진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 10

II 학생 건강증진 활동 활성화 11

1. 학생 건강검사 관리 철저 13
2. 학생 정신건강 지원 강화 20
3. 건강증진학교 운영 활성화 24
4. 학생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 확대 26

III 감염병 및 응급상황 관리 강화 35

1. 학생 감염병 예방 종합대책 추진 37
2. 감염병 예방 및 위기대응력 제고 40
3. 학교 내 응급상황 관리체계 구축 46
4.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교육 강화 50

CONTENTS

IV 보고서식

53

1. 보건교육 실시 현황	56
2. 학생건강증진 교육 실시 현황	57
3. 학교 감염병 발생 현황 및 조치현황/언론취재 보고(3-1/3-2) ..	58
4. 응급처치교육 실시 현황(4-1/4-2/4-3)	62
5. 1개 검진기관, 출장검진 승인 신청	64
6. 학생 별도검사 추진실적(소변·결핵·시력)	65
7. 학생 건강검진 추진현황 및 통계표	67
8. 초등학교 구강검진 현황	68
9. 소아당뇨 등 학생 재학 및 지원 현황	69
10. 희귀난치성 질환 등 건강장애 학생 현황	70
11. 2021년 학생건강증진 기본계획 개정의견서	71

V 참고자료

73

1. 경상남도 학교보건실 시설 및 기구에 관한 규칙	75
2. 학교보건실 의약(외)품 보관 및 관리 방안	79
3. 비만 및 생활 습관병 관련 자료	80
4. 비만학생 관리카드 양식	84
5. 시력, 구강 예방 자료(예시)	87
6. 감염병 분류 및 종류	91
7. 표준예방접종일정표	92
8. 손 씻기 6단계	93
9. 감염병 예방 위한 기침예절	96
10. 등교중지 및 출석인정 근거법령	97
11. 등교중지 안내서 및 진료확인서(예시)	98
12. 학교에서의 결핵환자 발견과 관리	100
13. 교직원 결핵(의심)환자 명단 작성서식	103
14. 감염병 NEIS 사용법	104
15. 학교 내 응급상황 관리체계	106
16. 학교 구강보건실 설치 현황	109
17. 보건교사 미배치교 보건실 방문기록지(안)	110
18. 학생 건강검사 실시요령	111
19. 2020년 주요 변경내용	185

학교보건 운영관리 내실화

1. 학생건강증진계획 수립
2. 보건교육 및 업무관리 효율화
3. 학교보건실 시설·설비 확보
4. 학생건강증진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





학교보건 운영관리 내실화

1. 학생건강증진계획 수립

기 본 방 침

-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을 보호·증진하기 위해 학생의 건강상태를 파악·분석하여 학교 실정에 맞는 학생건강증진계획 수립
- 학교 구성원의 건강관리 인식을 제고하고 학교 내 관리수준 향상 도모
- 학교 현장의 우수사례 확산 및 개선을 통한 효율적인 보건교육 및 건강증진 활동 활성화

현 황

- 대부분의 학교가 각 학교실정에 맞게 수립하고 있으나, 일부 학교의 경우는 형식적 작성 및 활용 미흡
 - 학생 건강검사 결과 등을 분석·평가하여 실질적인 학생 건강관리 및 학교 구성원 모두가 동참할 수 있는 학생건강증진 활동 내용 등 포함 필요

추진과제

- 학생건강증진계획은 실현 가능하도록 학생 건강상태 등 실태를 파악하여 수립
- 학교의 여건 등을 감안하여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계획하고 적정 예산 확보로 사업의 효율성 제고
- 학교 홈페이지 등에 탑재하여 학생 및 학부모가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
- 보건교사 부재 시 대리자 지정 등 학생건강관리 및 응급상황에 대한 대응 체계 구축 내용 포함

2. 보건교육 및 업무관리 효율화

기 본 방 침

- 성장기 학생들의 자기 건강관리 능력 함양을 위하여 단위학교 여건에 맞게 실질적인 보건교육 방안 수립·추진
- 학교 보건교육 내실화를 위한 교사 연수, 보건교육실 설치, 보건교사 보조인력 배치 등 지원 강화

현 황

- 「학교보건법」 및 초·중등학교 교육과정에 따른 체계적인 보건교육 실시
- 교육청 및 학교 교육과정 편성 시 창의적 체험활동 및 보건과목 선택 운영

【 2019년 학교 보건교육 실시 현황(창의적 체험활동, 단위: 시간) 】

구분	급별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경남	초	4.2	4.2	4.7	4.9	12.1	11.1
	중	4.4	5.2	2.9	—	—	—
	고	6.6	4.3	3.7	—	—	—

※ 학년단위 17차시 이상 보건교육 실시 학교 : 경남 초중고 975교 중 458교(47%)

【 2019년 중·고등학교 보건과목 선택 현황(단위: 교, %) 】

구 분	중학교		고등학교		계	
	전체	선택	전체	선택	전체	선택
경남	266	57 (21.4%)	190	27 (14.2%)	456	84 (18.4%)



○ 보건교사 미배치 등 학교 현장의 학생건강관리 전문 인력 부족

【 보건교사 배치 현황(2019.12월 기준) 】

구 분	초등학교	중 학 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계
전체 학교	519	266	190	10	985
배치 학교	390 (75.1%)	122 (45.9%)	126 (66.3%)	9 (90%)	647 (65.7%)

※ 분교 21교 포함(초 18교, 중 3교)

○ 학교에서 활용 가능한 다양한 보건교육 자료 및 프로그램 개발 보급 미흡

추진 과제

가.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을 통한 체계적인 보건교육 실시

- 학교운영계획 수립 시 실질적인 교육내용, 방법, 시수, 대상 등을 고려하여 연 중 지속적·체계적인 교육이 가능하도록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 (모든 학교) 최소한 1개 학년 이상을 대상으로 교과와 창의적 체험활동을 통해 연간 17시간* 이상 보건교육 실시(단, 보건과목 운영학교는 제외 가능)
 - * 1시간 기준 : 초 40분, 중 45분, 고 50분
 - (보건과목 운영학교) 연간 17차시 이상 시수를 확보하여 교육과정 운영토록 필요한 사항 조치
- 교육장은 학교 교육과정 운영과 교수·학습 방법 등에 대한 장학지도 강화
- 척추옆굽음증 예방, 건강한 체중 관리, 구강 및 시력 건강관리 등 학생 건강 증진 프로그램을 교육과정과 연계한 보건교육 활성화

나. 행·재정적 지원 강화

- 보건교사 수업 중 학생건강관리 및 응급상황에 대한 대응체계 구축
 - 특히, 학생수가 많거나 소아당뇨 등 특별관리·보호 학생이 있는 학교는 원활한 응급처치 및 건강관리를 위해 보건교사 업무 적정화 노력
- 학교실정에 따라 보건실 근접 교실 또는 보건실 내 보건교육실 설치 등 응급상황 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환경 조성
- 교재 및 교구지원, 학교보건 보조인력 지원 등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

다. 학교 보건교육 내실화

- 교육지원청 및 학교 여건에 따라 보건교육 내실화를 위한 보건교사 연수 등 지원 활동 강화
- 단순 지식 중심의 교사연수 지양, 교육과정, 교수법 등 실질적인 연수 운영
- 장학(동료장학, 임상장학 등) 활성화를 통한 교수법, 교육자료 공유 등 실질적인 연찬 기회 확대
- 보건교과(교육)연구회 등을 통한 우수사례 발굴·공유 등

※ 학생건강정보센터, 교육청 및 학교 홈페이지를 적극 활용하여 관련 자료 공유(저작권·산권 유의)

라. 보건교사 미배치 학교의 보건업무 관리 철저

- 「학교보건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학생들의 체계적인 보건교육 및 건강관리를 위하여 보건교사가 배치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
- 학교장은 교원 중 보건업무 담당교사를 지정하여 보건업무 수행
- 보건담당교사제를 실시하여 학생들의 건강관리, 학교보건위생, 보건교육 등의 직무 수행
- 학생 및 교직원의 보건교육과 효율적인 건강관리를 위한 보건교사의 역할이 증대되고 있는 실정으로 보건교사가 미배치된 사립학교장은 보건교사가 배치될 수 있도록 정원 확보 방안 강구



- 보건교육 및 학생건강관리를 위한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지원청 주관 보건교사 미배치 학교 업무 담당교사 연수 실시
- 기존 보건교사(멘토)와 신규 보건교사·보건담당교사(멘티) 간 멘토링제 운영
- 보건교사 미배치교 보건실 방문기록지 작성 운영<참고자료 17>
- 학생건강정보센터(<http://www.schoolhealth.kr>)를 적극 활용
 - 다양한 학생건강 정보 및 전문적인 컨설팅 역할 제공
 - 교육지원청 및 각급 학교에서는 홈페이지 적극 활용하여 관련자료 공유



← 학생건강정보센터 QR코드, <http://www.schoolhealth.kr>

3. 학교보건실 시설·설비 확보

기 본 방 침

- 학생 및 교직원의 건강증진을 위한 보건교육, 건강관리, 건강상담 등 학교보건의 구심적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보건시설 마련
- 보건실 위치는 응급처치 및 환자이송 등이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학교 실정에 맞게 배치(응급후송 용이)
- 보건실 내부를 처치실, 안정실, 건강상담실, 보건업무실, 기타 공간으로 구분·설치하고 보건실과 연계된 보건교육실 설치 권장
- 「학교보건실 현대화 사업 매뉴얼」을 참고하여 보건실 시설·기구의 확충 및 효율적 관리

현 황

- 대부분의 학교에 보건실이 설치되어 있으나, 일부학교에서 학생 이용이 불편한 장소, 채광이 되지 않는 장소, 일반교실(60㎡) 크기 미만 확보 등 시설·설비와 학생복지 측면에서 기본적 기능을 수행하기 어려운 상황
- 「경상남도 학교보건실 시설 및 기구에 관한 규칙」에 따라 보건실에 갖추어야 하는 시설 및 기구의 소요기준을 보건교사 배치학교와 미 배치학교로 구분
- 학교보건실 현대화 사업 추진 현황(2019.12월 기준)

구분	대상 학교수	보건실 현대화 완료 학교수			2019년 신·이설	미설시 학교수
		2018년 이전	2019년	계		
초	501	459	8	467	5	29
중	263	236	4	240	3	20
고	190	184	1	185		5
특수	10	9		9	1	
기타	5	3	1	4		1
계	969	891	14	905	9	55

※ 분교 21교(초18, 중3) 및 기타학교 4교(지리산중학교-휴교, 충무고등공민학교, 경남국제외국어학교, 거제국제외국어학교) 제외

※ 미설시 사유 : 30㎡미만, 이설·통·폐합 예정, BTL 운영, 타교실 겸용 등



추진과제

가. 학교보건 기능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보건시설 및 기구 확보

○ 학교보건실의 설치기준 준수

- 보건실 위치는 학생 및 교직원의 응급처치 등이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용이 쉽고 통풍과 채광이 잘 되는 장소에 설치

※ 「학교보건법 시행령」 제2조(보건실의 설치기준)

- 보건실 면적은 60㎡(유치원 15㎡) 이상 확보. 다만, 부득이하게 교실이 부족한 경우 보건실 면적의 완화 가능

※ 「경상남도 학교보건실 시설 및 기구에 관한 규칙(교육규칙 제813호, 2018.6.7., 타법개정)」

○ 학생 및 교직원의 원활한 건강관리를 위해 규정에 맞는 충분한 시설·기구 구비

○ 신·개·증축 학교는 설계 시부터 보건실 적정규모 확보, 시설 및 기구기준에 맞는 현대화된 보건실 설치(시설담당부서와 적극 협조)

○ 학생들이 건강상담을 위해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도록 보건실을 개방

나. 학교보건실 시설·기구 실태조사 및 확보계획 수립

○ 학교장은 매년 3월 1일 기준 보건실의 시설 및 기구 실태조사 후 미달되는 시설·기구의 확보계획 수립 보완

- 필수기구는 빠른 시일 내 구비 완료, 권장기구는 학교장 판단하에 필요한 기구 구비 <참고자료 1. 유치원 보건실 및 학교보건실 시설 및 기구 소요기준>

※ 「2020학년도 학교회계예산편성기본지침」 예산편성 권장사업 ‘15. 보건실 시설·기구 및 용품 구입’

○ 현재 학교보건실 상태를 자체적으로 진단하여 문제점(노후, 면적 협소, 위치 부적정 등)이 있는 경우 개선계획 수립하여 보완

4. 학생건강증진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

기 본 방 침

- 학생·교직원의 건강유지·증진과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우수사례를 발굴·홍보하여 학생 건강증진 내실화 도모
- 우수학교 및 유공자 표창 등 인센티브 제공으로 보건 업무관계자의 사기진작

현 황

- 2019년 학생건강증진분야 우수학교 및 유공자 표창

구 분	계	보건	교육환경	정신건강 대책추진	유해시설 합동단속	감염병 예방관리
교육부장관	8	4	1	1	1	1
교육감	22	22				

- 2019년 학생건강증진 우수사례집¹⁾ 발간·배포('19.12월)

추진과제

가. 학생건강증진 분야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

- 우수사례 발굴 및 전파를 위한 ‘학생건강증진 프로그램 우수사례 공모전 (‘20.10월)’ 개최 시 적극 참여(선정자에 대한 표창, 국외연수 등 인센티브 제공)
 - 학생 건강검사 결과분석 활용 및 건강지표에 근거한 학생 건강관리, 학생 비만 예방, 보건교육 내실화 등 학생건강증진을 위한 교육적 관리
 - 학교 먹는물, 교사내 공기질 관리 및 개선, 학교석면의 효율적 관리, 교육환경 보호제도 운영관리
 -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 학생정신건강증진 교육 및 예방관리, 학생정신건강증진 지역협력모델 구축·운영, 학교 내·외 정신건강협의체 운영 및 상담 관리
 - 감염병 발생 학생 및 학교에 대한 신속·적절한 대처를 통한 확산 방지, 학생 감염병 예방을 위한 지역 내 공동대응 및 협조체계 구축 등

나. 우수학교 및 유공자에 대한 표창 등 인센티브 제공

※ 2020년 유공자 등 표창 계획은 하반기 중 별도 안내

1) 경상남도교육청 홈페이지 체육예술건강과 자료실 탑재

학생 건강증진 활동 활성화

1. 학생 건강검사 관리 철저
2. 학생 정신건강 지원 강화
3. 건강증진학교 운영 활성화
4. 학생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 확대





학생 건강증진 활동 활성화

1. 학생 건강검사 관리 철저

기 본 방 침

- 성장기 학생들의 건강생활 습관 및 신체적·정신적 건강 상태를 파악하고, 질병을 조기에 발견·치료하여 건강한 삶 도모
- 나쁜 건강행태 또는 건강 문제, 질병이 발견된 학생에 대해서는 교육 및 건강 상담, 치료 및 보호 등 적절한 대책 강구

현 황

- 초·중·고등학교에서는 「학교보건법」 및 「학교건강검사규칙」에 따라 재학생에 대한 건강 검사를 하도록 하고 있으나,
 - 학기 초에 신체발달상황 및 건강조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아 학교 별 학생건강증진계획 수립 시 학생건강조사 결과 활용 미흡
 - 2005년 제도개선 이후 학생들의 질병 향상 및 건강행태 변화 등을 고려하여 건강검진 항목 및 문진표, 건강조사 시기 등 보완 필요
- 학교에서 검진기관 선정 시 「학교건강검사규칙」에서 규정²⁾한 최소한의 검진기관만을 선정함으로써 학생 및 학부모 선택의 폭을 제한
 - 일부 학교에서는 학생들이 검진기관을 방문하는 일자를 지정함으로써 학생 몰림 현상 등에 따른 불편 및 형식적 검진 초래

2) 제5조의2(건강검진의 절차 등) ① 학교의 장은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학생의 건강검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2개 이상의 검진기관을 선정하여야 한다.

추진과제

가. 건강검사 실시계획 수립

- 2020.3.1. 시행되는 「학교건강검사규칙」에 따라 학생건강검사 추진
 - 건강검진 일부항목 삭제 및 추가, 문진표와 건강조사서 분리
 - ※ 건강조사는 전교생을 대상(건강검진 대상 학년 포함)으로 학교장이 실시
 - 비만도 산출은 ‘체질량지수(BMI)’ 기준 산출방식 일원화
 - 신체발달 측정 및 건강조사는 매 학년도 1학기까지 완료
 - 학생건강증진 정책 추진 등을 위해 유병률이 높은 시력 및 구강 등 일부 항목 검사 결과 제출 <보고서식 7. 학생 건강검진 추진현황 및 통계표>
- 학교장은 건강검사에 필요한 소요예산을 포함한 구체적인 건강검사 실시계획을 매년 3월 31일까지 수립(학교건강검사규칙 제2조)
- 건강검사 예산 확보·지원, 건강조사에 필요한 구조화된 설문지 제공 등 학교에서 건강검사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조치
- 「학교보건법」 제7조(건강검사 등), 「학교건강검사규칙」에 따라 학생 건강검사 관리 및 지원
- 「학생건강기록부 전산처리 및 관리지침(교육부훈령 제327호, 2020.3.1.시행)」, 「학교 건강검진 실시방법·결과 판정 및 기재방법 등에 관한 기준(교육부고시 제2020-217호, 2020.3.1.시행)」에 따라 건강검사결과 관리 철저
- 학부모 의견수렴 등을 통해 학생·학부모의 검진기관 선택권 보장
 - 검사가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가급적 학생·학부모가 원하는 날짜에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검진기관과 협의하여 추진



【 학생 건강검사 항목 및 방법 】

구 분			검사 대상	시기	비 용	검사기관	검사항목 및 방법
학생 건강 검사	신체의 발달상황		●초·중·고등학교 전 학년 (특수학교·각종학교 포함) ※ 단, 건강검진을 실시하는 학년 의 경우 검진기관에서 실시	1학기 완료	—	당해 학교 (교직원)	키, 몸무게 측정 *비만도 산출 → 결과처리: 학생건강 기록부 작성
	건강조사		●초·중·고등학교 전 학년 (특수학교·각종학교 포함) (건강검진 대상 학년 포함)	4월중 (1학기 완료)	—	당해 학교 (교직원)	병력, 식생활 및 건강생활 행태 등 설문조사 → 결과처리: 상반기 분석 후 학교 보건관리에 반영
	건강검진		●초 1·4학년 ●중·고 1학년 (특수학교·각종학교 포함) ※ 구강검진: 전체 초등학교 대상	연중 (가급적 1학기 완료)	보건 복지부 고시금액	학교장 지정 「건강검진기본법」 제14조의 검진기관	척추, 눈, 귀, 콧병, 목병, 피부병, 구강, 병리검사 등 학생이 검진기관 방문 검진
	별 도 검 사	소변	●초 2·3·5·6학년 ●중·고 2·3학년	별도 일정	730원 /1인당	한국학교보건협회 울산경남지부 (055-386-1178)	당, 단백, 잠혈, pH
		결핵	●고 2·3학년	별도 일정	3,240원 /1인당	대한결핵협회 울산경남지부 (055-246-4225)	흉부X-선
		시력	●초 2·3·5·6학년 ●중·고 2·3학년	연중	—	당해 학교 (교직원)	공인시력표에 의한 간이 측정
중학생 결핵 조기발견 사업			●중 2학년(18개 시군 읍·면 지역 및 마산·진해 동지역) ●중 3학년 ●검진희망 교직원	별도 일정	시·군 보건소 부담	대한결핵협회 울산경남지부 (055-246-4225)	흉부X-선

※ 세부내용 및 학교별 검사일정은 <참고자료 18. 학생 건강검사 실시요령> 참조

나. 검진기관 선정 및 방법

○ 검진기관 선정

- 학교장은 「건강검진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2개 이상의 검진기관 선정
- 다만, 검진기관을 2개 이상 선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교육장³⁾의 승인을 얻어 1개의 검진기관만 선정할 수 있음

3) 「경상남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각급 학교는 해당 교육지원청교육장이 승인 (「학교건강검사항목」 일부개정, 교육부령 제198호 2020.1.9.)

- 지역 내 검진기관이 없는 학교 및 특수학교 등에서는 1개의 검진기관만 선정하여 출장검진 가능(「학교건강검사규칙」 제5조의2(건강검진의 절차 등) 제4항)

【 별도 승인 신청 없이 1개 검진기관만 선정하여 출장검진 가능한 경우 】

- 학교가 소재한 지역(읍·면·동)에 검진기관이 없는 경우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른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의 학생을 대상으로 검진을 실시하는 경우
-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출장검진이 불가피하다고 교육감(교육장)이 승인한 경우

- 「초·중등교육법」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받을 수 있으며, 학교장 책임하에 공정하고 투명하게 선정
- 검진기관과 계약 시 「건강검진기본법」에 따른 ‘건강검진기관’ 여부 확인
- 검진기관 의료 인력·시설 및 장비기준 준수 확인

【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기관 안내 】

- ① 국민건강보험공단(<http://www.nhis.or.kr>) → 메인화면 “건강iN-병원 및 검진기관 찾기” → 검진기관 찾기
- ② 건강IN(<http://hi.nhis.or.kr>) → 메인화면 “검진기관 찾기”

- 건강검진기관에 상근 치과의사가 없어 별도로 구강검진기관을 선정할 경우 구강검진기관과 별도 계약 <참고자료 18. 학생 건강검사 실시요령(구강검진기관 관련) 참고>

○ 검진비용 <참고자료 18. 학생 건강검사 실시요령(학생 건강검진 수수료) 참고>

- 전액 학교회계 부담(학교운영비에 포함)
- 건강검진에 소요되는 비용의 범위는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금액을 적용

○ 건강검진 절차

- 건강검진 대상자는 학부모 또는 이에 상응하는 보호자 등과 함께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지참하고 지정 검진기관에 내원하여 검진



다. 검진결과 처리

[검진기관]

- 검진완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검진결과 통보서 2부를 작성하여 1부는 학생 또는 학부모에게, 나머지 1부는 학교장에게 각각 통보
- 특히, 건강검진 결과 긴급히 정밀검사 등을 요하는 학생에 대하여는 본인 또는 학부모(보호자)와 학교장에게 지체 없이 결과 통보
 - 검진결과를 통보기일에 관계없이 가능한 조속히 통보하여 이중 수검을 방지
- 학생 개인에 대한 인적사항 및 검진결과와 관련된 사항은 반드시 비밀보장이 될 수 있도록 관리 철저

[학교]

- 학생건강검사 및 구강검진 결과는 학생건강기록부에 기록 관리 및 건강관리 자료로 이용
 - 학생건강기록부를 비롯한 건강검사 등의 실시결과를 학생이 최종으로 재적한 날로부터 5년간 보존
- 학생건강검사 결과 건강이상 및 요정밀검사 등 사후관리가 필요한 학생은 가정통신문 등을 통하여 정밀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
- 검진여부 및 검사결과를 확인하는 등 건강이상자는 요보호학생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추구관리, 해당 학생 상담 등 특별지도 대책 강구

라. 요보호 학생 관리

- 학기 초(입학, 개학 직후) 건강실태조사를 통해 건강 문제를 가진 학생 파악 및 정기적 건강상담 등을 통한 응급상황 대비 사전 예방관리
 - ※ 건강실태조사서는 반드시 보호자 날인(사인)을 받고 담임이 1년간 보관
- (담임교사) 실태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면담을 통해 선별된 학급별 건강이상자 명단을 보건실에 제출 → (보건교사) 학급별 건강이상자 상담 후 선별하여 “요보호 학생 명단” 작성 및 관리

- 학생의 학교활동에 참고할 수 있도록 교직원에게 요보호 학생 명단 공유 및 학생 주의 사항, 유의 관찰방법, 교사 지도조언 등 연수를 통한 학생 보호관리 철저
- ※ 교직원은 요보호 학생 명단이 학생과 외부인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보안관리 철저

마. 검사결과의 적극 활용 및 민원 대응

- 학교장은 학생건강검사(신체의 발달상황, 건강조사, 건강검진) 결과를 평가하여 이를 바탕으로 학생건강증진계획을 수립·시행(「학교보건법」 제7조의2제3항)
- 모든 학생에 대한 건강조사 실시,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학생의 건강행태 개선을 위한 보건교육 등 적극적인 건강증진 활동 전개
 - 특히 시력이상 및 구강질환 예방, 건강한 체중관리, 흡연·음주 등 약물 오·남용 예방 등 보건교육을 포함한 다양한 건강관련 프로그램 운영
- 검사결과에 따라 건강상담, 질병의 예방조치 및 치료 등의 보호 또는 양호 대책이 필요한 학생에 대한 학부모 상담 등 적절한 대책 마련·추진
 - 보건의료기관, 체육단체 및 대학 등 협조를 받아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관리 지원
 - 학생 건강검진 자료를 학생의 건강관리에 활용할 수 있도록 가급적 1학기 내 검진 완료
- 민원 발생 시 학교에서 검진기관 방문 등 해당 민원에 대한 설명 및 개선 요청 등 적극 대응
 - 필요시 학생 및 학부모 등 대상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문제점 파악 및 적극적인 해결 방안 강구
 - 학교 건강검사의 적법한 운영 지원 및 현장 지도·점검 철저



바. 표본학교 건강검사

- 국가 차원의 학생건강 변화 추이를 파악하기 위한 건강검사 표본학교 운영
 - 학생 신체발달상황, 질병이환 등 학생건강 실태분석을 통한 체계적이고 신뢰성 있는 학생건강지표 생성으로 과학적 근거 기반의 학생건강증진정책 추진
 -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학생건강 실태분석을 통한 과학적 근거기반의 학생건강증진 및 학교보건 정책 개발
- 3년마다 표본설계 개선을 위해 표본학교 지정 및 연동제 운영
 - ※ 2018년~2020년(3개년) 표본학교: 전국 1,023교, 경남 59교

【 2018년~2020년 표본학교 건강검사 실시 현황 】

대상학교	검사항목	검사대상	시기	비용
59교 (초 17교 중 18교 고 24교)	●신체발달상황(3개) 키, 몸무게, 비만도	초1~6/중1~3/고1~3학년 (학년별 1개 학급) * 중·고등학교 남녀 분반 경우 남녀 각 1개 학급	4~7월	교육청 예산지원
	●건강조사(9개) 식생활, 신체활동, 개인위생, 심리정서, TV시청·인터넷 사용 등	초1~6/중1~3/고1~3학년 (학년별 1개 학급) * 중·고등학교 남녀 분반 경우 남녀 각 1개 학급		
	●건강검진(13개) 근골격, 눈·귀, 콧병·목병·피부병, 기관능력, 구강, 병리검사 등	초1·4, 중1, 고1학년 (구강검진은 초등 전체)		학교회계

- 학교건강검사 표본학교의 검사결과 작성·제출 등 철저
 - 해당 학교는 2020.7.20.까지 NEIS 입력 마감 제출

2. 학생 정신건강 지원 강화

기 본 방 침

- 학생들의 ADHD, 우울, 자살, 불안 등 정서·행동 문제에 대한 사전예방, 조기발견 및 치료지원 등 관리체계 구축·지원
- 교육지원청 중심의 지역사회(가정 포함) 전문기관 연계 지원체계 구축·운영을 통한 학교 역량 제고

현 황

- 관련 규정⁴⁾에 따른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발달 지원
- 「학교보건법」 개정(‘13.12.30.)으로 교육감과 학교의 장에게 학생 정신건강 보호·증진을 위한 지원 책무 강화
 - ※ 주요내용 : 상담 및 의료기관 연계조치 등, 검사비·치료비 지원, 개인정보 누설 금지 등
- 학교 정신건강정책 추진관련, 지속적인 제도개선 및 담당자 연수 등을 통해 학교 역량을 강화해 나가고 있으나,
 - 여전히 교사 전문성 결여, 학생의 의도적 검사 조작, 교사에 의한 검사결과 유출, 학부모 치료거부, 자살위험 등 관심군 학생 관리 미흡 등의 한계

【 관심군 학생의 전문기관 연계조치 현황(%) 】

구분	전문기관 연계조치 현황			학부모 거부로 인한 미연계 현황		
	2017년	2018년	2019년	2017년	2018년	2019년
경남	81.7	81.3	83.7	92.9	93.7	93.6

4) 「교육기본법」 제27조, 「학교보건법」,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추진과제

가.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 철저

- (검사대상) 초(공민) 1·4학년, 중(고등공민) 1학년, · 고(고등기술) 1학년, 특수학교, 각종학교

※ 단, 검사 주체인 학교장이 교육청과 협의하여 대상자(학생) 제외*처리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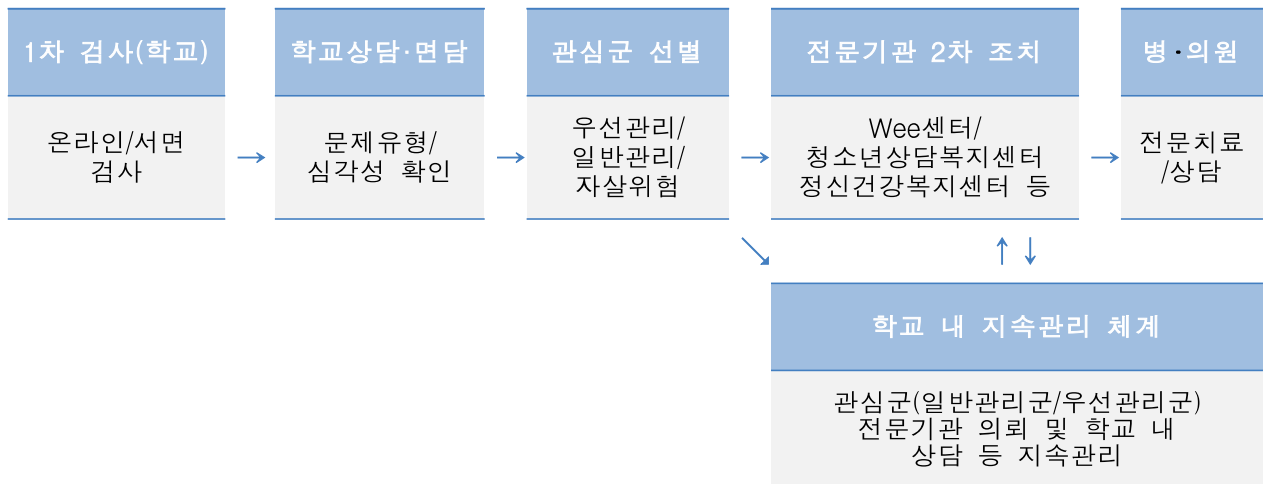
(제외 예시: 신체적·인지적으로 검사가 불가능한 경우, 대상자가 성인인 경우 등)

- 기타 학년 학생은 이전 검사결과에 따라 상담, 생활지도 등 추구관리 지속

※ 학교 내·외 사례관리 체계 구축, 승급 및 분반 등에 따른 학생관리 공백 방지대책 마련

- (검사절차) 2단계 검사(학교 내 1차, 전문기관 2차) 절차 유지

- 1차 학교 온라인(NEIS)/서면검사 : 검사대상 학교의 학생 대상 특성검사
- 2차 전문기관 심층검사 : Wee센터, 정신건강복지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의료기관 등에서 심층평가 실시



- (검사도구) 학교급별 1종

- 학교 내 검사는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 도구(초등 CPSQ-II, 중등 AMPQ-III)를 사용하고 기타 표준화도구를 활용한 심리검사 중복 실시 지양

※ 기본검사(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 후 추가검사 필요시 관심군 대상 표준화도구 적용 가능

- (평가영역 및 문항) 학생의 정서·행동문제, 성격 특성을 평가하며, 문항에 대한 신뢰도 확보 및 자살위기학생 선별 문항 등 포함

○ (검사기간) 2020. 4. 1.(수) ~ 4. 30.(목)

[중요 유의사항]

- ▶ 지속관리를 요하는 학생이 학년승급, 전·출입 등으로 인한 학생관리(전문기관 2차 조치 포함)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시 재검사, 관련자료 확인 및 학생 관리 철저
- ▶ 학생 검사결과 통보 시, 검사 결과지 및 관리(상담)일지 등 관련 자료 작성·개인정보 보안에 유의하고 재학 중 학생관리 자료로 활용, 용도 소멸 즉시 폐기(파쇄)
- ▶ 온라인 검사시스템 결과와 달리 변동사항(관심군↔정상) 적용 시, 객관적이고 타당한 방법과 절차에 근거하여 신중 처리, 담당자 주관적 견해에 따른 변경 지양
- ▶ ‘학교폭력 피해사례(별도문항)’ 응답자의 경우 반드시 사실관계 확인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적정 조치하도록 학교폭력 담당자에게 인계
- ▶ 당해 연도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 실시 기간 이후 개교한 경우에는 전입생 관리방안을 준용하고 전문기관 조치결과 보고 등 기본방향에 따라 조치

※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 및 관리 매뉴얼」 및 동영상(사업 안내) 별도 안내 예정

나.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 결과에 따른 후속조치 철저

○ (정보관리)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계법령 준수, 검사 결과 및 학생(학부모) 상담 · 치유지원 등 개인정보 등이 공개되지 않도록 보안관리 철저

- 학생검사 및 상담관리 등 관련 자료 일체가 동 검사제도와 무관한 제3자(외부 민간업체 등)에 유출되지 않도록 열람 및 관리 적정성 확보
- 심층 상담 · 관리가 필요한 학생만을 집단으로 모아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을 지양하고 다른 학생들에게 낙인이 되지 않도록 특히 주의

※ 검사 및 상담관리 등 ‘실명 기재 자료’의 대내·외 공개 시 제3자 정보제공 동의 필요

○ (사후관리) 관심군 학생에 대한 지속관리 등 관리 공백 방지

- 학생 전 · 출입 등 학적변동 시 전입교는 학부모 동의를 얻어 원적교(전출교)에 자료 요청·확인, 원적교 검사결과를 참고하되, 필요시 재검사 등 학생 관리 철저

다. 학교 내·외 학생정신건강 관리체계 내실화

○ 학교 내 총괄책임자 지정(부장교사 이상) 의무화, 협의체(담임교사·보건교사·전문상담(교)사·생활지도담당교사·지역사회 전문가 등) 구성 · 운영 등 단위학교 학생관리 역량 강화



- 위험수준별 전문기관 의뢰·관리시스템 정립, 학교-교육지원청-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전문인력·가용자원 정보구축 활용) 등 통합적·집중적 관리체계 구축

[위험수준별 학생 관리방안]	
관심군	■ (학교 내 관리체계 구축) 업무 총괄자(부장교사 이상) 지정 의무화, 협의체(보건·상담·담임 등) 운영 등 ■ (학교 내 지속관리) 학교 상담 정례화(최소 분기별 1회 이상), 생명존중 및 자살 예방교육 강화(연 4시간 이상) 등 ■ (전문기관 연계) Wee센터·정신건강복지센터 등 연계, 전문기관 2차 조치 등
우선관리	■ (학교 내 집중관리) 학교장·교사·학부모, 전문기관·병의원 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위기대응팀 운영 의무화, 학교 상담 강화(월 1회 이상) 등 ■ (병의원 즉시의뢰) 검사절차와 관계없이 자살위험 학생 등 긴급을 요하는 학생 확인 즉시 전문기관·병의원 의뢰체계 구축, 운영

- 교육지원청 단위 협의체 운영 활성화 등을 통한 학교 전문성 강화 등 지원

- 전문적인 치료지원이 필요한 학생 등에 대해서는 단위학교별 대응에 한계, 학교-지역사회 연계하여 지역 전문자원 활용체계 구축·운영

[학생정신건강 학교-지역사회 연계 지원체계 구축·운영)]

- ▶ (사업개요) 자살, 우울, 불안 등 학생 정신건강 문제에 대한 교육(지원)청·지역·학교차원의 체계적인 대응관리 체계 마련
 - 특히,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 결과 관심군 학생에 대한 지원을 위한 학교-지역사회 전문 자원의 연계·활용
- ▶ (추진방법) 교육지원청이 중심이 되어, 학교-지역사회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 및 체계적 역할분담, 학교 지원
 - 교육지원청은 자체 추진방안 마련, 전체 학교에서 학생 관리에 필요한 지역사회 전문(가)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

3. 건강증진학교 운영 활성화

기 본 방 침

- 학교의 총체적인 건강 수준을 진단하고 학교 구성원·학부모·지역사회가 협력하여 학교의 건강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 나갈 수 있는 학교 역량 강화
 - 교육과정에 기반한 학생 건강증진 활동을 통해 학교주도의 현장 중심·상향식 학교 경영시스템을 갖춘 건강증진학교 운영 활성화

현 황

- 학생 건강관리의 중요성 증대
 - 학령기(소아청소년기)는 일생 동안 건강한 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건강한 생활 습관을 형성하는 매우 중요한 시기
 - 소아청소년기에 잘못 형성된 생활 습관은 성인기 질병 유발로 의료비 증가와 삶의 질 저하로 이어짐
- 학생 건강 문제의 복잡성 및 해결의 어려움
 - 신체 활동량 부족, 영양 불균형, 과도한 스트레스 등 다양한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건강 문제 야기
 - 학생들의 건강 문제 해결 및 건강증진 활동(사업)이 보건·영양·체육·상담 등 개별 영역에서 분절적으로 시행
- 교육부 주도 건강증진학교 운영
 - (2009년) 건강증진학교 국내 도입
 - (2012~2014년) 건강증진학교 운영 확대(건강증진모델학교 85교 운영)
 - (2015~2019년) 건강증진학교 일반화를 위한 연구학교 및 거점학교 운영
 - ※ 경남: '15년 1교(남해여중), '16~ '17년 1교(온천초), '18년 거점학교 2교-연계학교 4교[온천초-북면초, 하천초 / 밀양중-밀양여중, 미리별중], '19년 거점학교 3교-연계학교 3교[(창원)풍호초-동부초, (진주)가좌초-이반성초, 밀양중-밀양여중]

【 건강증진학교의 특징 】

구 분	특 징
학교정책	교사, 학생의 참여하에 합의된 정책 결정(상향식 의사결정)
보건교육	지식, 태도 및 기술교육을 통한 역량 강화
지역사회(외부기관) 연계	외부기관이 학교의 건강증진 활동에 참여(학교 중심)

- (2020년) 건강증진학교 운영 사업 시도교육청 자체계획에 따라 추진



추진과제

가. 지역별 ‘건강증진학교’ 운영 활성화 지원

- 교육장은 기존의 교육부지원 건강증진학교 운영사례, 자료 등을 참고하여 지역별로 예산 확보 및 추진체계를 마련하여 건강증진학교 적극 운영
 - ※ 교육부 : 건강증진학교 운영실적, 사례 등 자료집 발간 보급 예정(‘20년 초) / 건강증진학교 운영에 관한 매뉴얼 및 참고자료는 ‘학생건강정보센터(www.shoolhealth.kr)’ 탑재
-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기획·추진한 건강증진 우수 프로그램(사업) 발굴·보급, 운영성과 발표회 등을 통한 건강증진학교 일반화 추진
 - 우수사례 선정 학교에 대한 표창, 국외연수 등 인센티브 제공 예정

나. 교육과정과 연계한 건강증진 활동 추진

- 학교 교육계획에 반영하여 연중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추진
 - 일회성 행사가 아닌 연중 지속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프로그램 계획·추진
- 단위학교별 건강 문제를 진단하여 우선순위를 정하고,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많은 학교 구성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추진
 - 특정 업무 담당자에게 업무가 편중되지 않도록 업무분담을 통해 모든 구성원 참여 독려

다. 지역 단위 건강증진 네트워크 구축

- 지역 단위 건강증진학교 거점학교 운영 등을 통해 주변 학교로 건강증진학교를 확산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 학교의 건강증진 프로그램(사업)에 지자체(보건소, 공공기관 등 포함), 민간단체 등 참여를 유도하여 학교-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

라. 관리자 및 교원의 건강증진학교 운영역량 강화 지원

- ‘중앙교육연수원’의 초·중등학교장 자격 연수과정, 일반교원 연수에 건강증진학교 관련 커리큘럼 포함
 - ※ 연구학교 운영 지원을 위한 컨설팅 지원 및 워크숍 개최 병행
- 건강증진학교 개념에 대한 이해를 돕고 운영 방법 안내 사이버 연수 과정 운영·지원(중앙교육연수원 원격 연수과정 운영, ‘16년~)

4. 학생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 확대

기 본 방 침

- 성장기 학생들에게 흔한 보건·위생 및 약물, 비만 등 건강 문제의 예방·관리를 위한 체계적인 프로그램 적극 운영
- 학생 개개인의 건강한 생활 습관 및 자기 관리능력 실천으로 평생 건강의 기틀 마련 및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 도모

가. 척추옆굽음증 예방 관리

현 황

- 도내 학생 건강검진 결과, 2019년 근·골격 및 척추 질환자는 검사인원 123,970명 중 624명으로 0.5%를 차지
 - 전년도 0.47% 대비 0.03% 증가
 - 최근 3년간 추이를 보면, 초등학생보다 중·고등학생의 발생률이 높게 나타남

【 최근 3년간 근골격 및 척추 질환 발생률(경남, %) 】

2017년				2018년				2019년			
초	중	고	계	초	중	고	계	초	중	고	계
0.1	1.09	1.29	0.66	0.07	0.73	1.06	0.47	0.04	0.43	1.5	0.5

추진 과제

- 올바른 자세를 유지하여 청소년기 척추옆굽음증 및 근·골격계 질환 예방
- 학교장은 척추옆굽음증 예방 교육 및 프로그램 운영 활성화
 - 등교시간·점심시간·쉬는시간, 보건수업 등을 이용하여 동영상 교육⁵⁾ 등 실시
 - 도교육청 주관 근골격계 질환 예방을 위한 건강 활동지원 학교방문사업 적극 참여
 - ※ 2020년 건강 활동지원 학교방문사업(건강지킴이) 추진계획 별도 안내
 - ※ ‘초등 바른걸음 걷기 활동(‘18년~, 체육교육담당)’ 등과 연계 활동 추진

5) 초등학생용 동영상 교육자료 활용: 2016년 배부 CD, 학생건강정보센터(<http://www.schoolhealth.kr/>) 탑재



나. 건강한 체중관리

현 황

- 학생 비만뿐 아니라 저체중 문제의 총체적 진단 및 건강한 체중관리 필요
 - 생활환경 변화 등으로 신체 활동량은 부족한 반면 패스트푸드, 인스턴트 식품 등 섭취 증가와 서구화된 식생활로 소아 비만이 사회적인 문제로 인식
- 2018년 표본학교 건강검사 결과 현황(경남)
 - 비만도⁶⁾는 12.9%로 전국 평균(14.4%)과 전년도(14.5%)에 비해 낮게 나타남
 - ※ 성별 비만도: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높음(남 15.2% > 여 10.4%)
 - 급별 비만도: 남녀 모두 고등학생의 비만도가 가장 높고 중학생, 초등학생 순임
(초 11.5% < 중 12.5% < 고 16%)
 - 저체중 학생은 6%(남 5.7%, 여 6.4%)로 지난해 4.4%(남 4.3%, 여 4.6%) 대비 증가로 나타남

【 최근 5년간 표본학교 학생 비만도 현황(BMI 기준, 단위: %) 】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전국	11.5	11.9	12.9	13.6	14.4
경남	13.3	12.7	13.2	14.5	12.9

【 2018년 표본학교 건강조사⁷⁾ 결과(단위: %) 】

구 분		초	중	고
격렬한 신체활동 실천 (주3회 이상)	전국	59.25	35.08	23.6
	경남	58.07	39.88	25.84
음료수 섭취 (주1회 이상)	전국	80.04	88.74	90.61
	경남	79.07	88.32	90.36
패스트푸드 섭취 (주1회 이상)	전국	65.98	77.66	80.54
	경남	61.94	76.17	80.97
라면 섭취 (주1회 이상)	전국	77.06	88.03	82.24
	경남	74.74	88.85	83.03

6) 체질량지수 기준 비만도(BMI): 경남 59개 학교 6,711명(남 3,485명, 여 3,226명) 검사 결과

7) 표본학교 건강조사: 학생 신체발달상황, 질병이환 등 학생건강 실태분석을 통한 학생건강지표 생성을 위해 3년 단위 표본학교 선정하여 25개 영역을 조사하며, 교육부의 학생건강증진정책 자료로 활용(2018년 전국 1,023교, 경남 59교)

○ 2019년 청소년건강행태조사 결과(경남)

- 비만도는 11%로 전국 11.1%보다 약간 낮은 편이며, 2014년 대비 3.7% 증가, 남학생(13.9%)이 여학생(7.7%)보다 높게 나타남
- 주 3회 이상 탄산음료 마신 학생이 37.3%로 2016년 이후 전국 평균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남학생(45.1%)이 여학생(28.8%)보다 높았음
- 주 3회 이상 피자, 햄버거, 치킨 등 패스트푸드 섭취 학생이 24.5%로 남학생(26.8%)이 여학생(22%)에 비해 높게 나타남

【 최근 5년간 청소년건강행태조사⁸⁾ 결과(단위: %) 】

구 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비만도	전국	7.5	9.1	10	10.8	11.1
	경남	7.6	9.7	10.2	11	11
7560+운동 ⁹⁾	전국	14.2	13.1	13.8	13.9	14.7
	경남	14.9	12.2	14.3	13.9	15.2
탄산음료 섭취 (주3회 이상)	전국	28.3	27.1	33.7	34.7	37
	경남	28.3	28.5	34.4	35.2	37.3
패스트푸드 섭취 (주3회 이상)	전국	14.8	16.7	20.5	21.4	25.5
	경남	14.6	15.5	18.0	20.4	24.5

추진과제

○ 학생의 적정 체중관리에 대한 지식, 태도, 습관 등 교육 실시

○ 「비만예방 프로그램 운영 매뉴얼」¹⁰⁾ 적극 활용

- 학생 신체발달상황 조사에 의한 비만도 측정과 건강검진을 통한 비만관련 건강검사의 실시

8) 청소년건강행태조사: 청소년의 건강행태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전국 800개 표본학교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비만, 신체활동, 아토피천식 등 15개 영역을 매년 조사하며, 보건복지부의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및 교육부의 청소년 건강정책 자료로 활용

9) 7560+운동: 1주일에 5일 이상, 하루에 60분 이상 누적(+)해서 운동

10) 우리도교육청의 비만예방 프로그램 운영 매뉴얼(학생건강증진과-4178, 2011.4.6.)



- 비만의 원인분석 및 원인별 행태 관리와 개인별 실천 예방교육 등 다양한 모델을 제공하여 학교별로 실천
- 비만도(경도, 중등도, 고도)별 체중감량, 식습관, 운동 등 집중 지도
- 가정과 연계한 학부모 대상 비만예방 교육 확대

○ 비만예방 교육 수업과정(전 학년) 도입, 방과 후 교실 비만프로그램 운영 등 내실 있는 비만 개선 프로그램 운영 활성화

- 학생 및 교원 대상 교육, 교육자료 배부, 전시회 등 각종 행사 개최, 건강한 체중관리 프로그램 운영, 기타 예방교육 등
- 아동 비만 예방을 위해 보건소 ‘건강돌봄놀이터 비만예방관리사업’과 연계 프로그램 운영

※ 2019년 운영 현황 : 마산·사천·김해·밀양·함안·고성·함양지역 23개 초등학교 돌봄교실

○ 비만 관리의 중요성 인식을 위한 적극적인 홍보

- 교직원 연수 등을 통한 비만예방 생활습관 지도, 멘토링 프로그램 운영(교사-학생 간, 학생-학생 간)
- 가정통신문, 현수막, 전광판 등을 이용한 가정과 지역사회 분위기 조성
- 비만관리 예산 확보(체지방 측정기, 운동기구 구입, 비만관련 도서, 만보기 등)

○ 건강한 체중관리 중점학교 운영

- 「건강한 체중관리 중점학교 운영 결과 보고서」¹¹⁾ 활용하여 적극 운영
- 효과적인 체중관리를 위한 보건교육, 체육교육, 영양교육 연계 실시
- 가정 및 지역사회와 연계한 통합 프로그램 확대 실시

※ 건강한 체중관리 학교 운영

(' 12년) 시범학교 9교 → (' 13년) 중점학교 14교 → (' 14년) 중점학교 20교

11) 경상남도교육청 홈페이지 체육예술건강과 자료실 탑재

다. 구강건강 관리

현 황

○ 2019년 구강질환 발생 현황(경남)

- 전년도 대비 치아우식증 0.47% 감소, 대상 학생의 약 1/3 정도 구강질환 발생

【 경남 구강질환 발생 현황(학생 건강검진 결과, 단위: %) 】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치아우식증	34.13	32.41	33.15	32.68
치주질환	11.83	10.53	9.96	10.28
부정교합	15.08	12.76	12.7	12.78

○ 2019년 최근 7일간 학교에서 점심식사 후 칫솔질 현황(경남)

- 전국보다 높으나, 남학생 35.3%로 여학생 63.7%보다 현저히 낮았으며, 고등학생(남 38.2%, 여 60.8%)이 중학생(남 19.4%, 여 35.2%)에 비해 높게 나타남

【 1주일간 학교에서 점심식사 후 칫솔질 현황(청소년건강행태조사 결과, 단위:%) 】

구 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전국	39.4	39.3	38.5	39.5	38.5
경남	47.8	44.9	46.6	48.2	48.8

추진과제

○ 구강 보건교육, 집단 잇솔질, 불소용액 양치 등 구강건강 관리 프로그램 추진

- 치아우식증과 치주질환의 이환율이 높은 점을 감안하여 예방 측면의 구강 보건교육, 가정과 연계한 구강 건강검진 및 치료 지도
- 점심식사 후 양치질 생활화 및 개인 양치 도구의 위생적 관리 지도
- 지자체와 협의하여 초등학교 불소용액 양치사업 추진

※ 불소용액 약품관리 철저



○ 기존 음수대 시설 보완 또는 신규 설치로 구강보건시설 확충 권장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구강 보건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학교장에게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학교장은 지자체 예산 확보 노력)

○ 지자체와 연계한 학교 구강건강 관리 사업 추진

구 분	대 상	방 법	비 고
불소용액 양치사업	초등학교	0.2% 불소용액으로 주1회 양치(입가심)	
치아홈메우기 사업	초등학교 1·2학년 등	어금니 교합면 홈을 치아우식증 발생 전 치과용 재료(실런트)로 메움	
학교 구강보건실	초등학교 특수학교	해당학교 별도 공간 마련 설치, 시·군 보건소 치과 의사 및 치과위생사 주 2~3회 출장 진료	도내 44개교 설치 (’19.12월 기준) <참고자료 16>

라. 시력건강 관리

현 황

○ 실내외주 생활로 TV, 컴퓨터, 스마트폰 사용 등으로 인한 시력건강 관리 필요

- 2019년 시력 이상 학생은 전년도 대비 0.83% 증가, 대상 학생의 절반 이상 이 시력에 문제 발생

【 경남 시력이상 학생 현황(학생 건강검진 결과 현황, 단위: %) 】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교정대상	21.73	19.69	22.32	21.99
교정한 학생수	30.98	29.76	28.48	29.65
계	52.71	49.45	50.81	51.64

추진과제

○ 학교·가정에서 근시 예방을 위한 생활습관 개선 등 시력 저하 예방교육 강화

- ※ 올바른 독서법, 컴퓨터·TV시청 지도, 올바른 안경 착용법, 컴퓨터 스크린 전자파로 인한 VDT증후군 예방대책 등
- 학교 단위 시력저하 예방 관련 행사 개최
 - ※ 예) 매년 11월 11일 ‘눈의 날’ 행사, 시력보호 포스터·글짓기 등
- 시력보호를 위한 일정한 휴식 및 영양교육 실시
 - ※ 비타민, 칼슘 부족 시 근시가 생길 수 있으므로 균형 잡힌 영양공급 필요

○ 학교건강검사 결과를 토대로 학생 시력관리 강화

- 건강검사 결과 고도근시, 저시력, 기타 안과 질환 학생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안과 전문의에게 정밀검사를 받도록 안내
- 고도근시 학생의 경우 과중한 운동 금지(망막박리로 인한 실명 원인 제공)
- 저시력 학생(교정시력 0.04~0.3)에 대한 학습지도 대책 및 특수교육 실시 여부 등 강구

○ 학교 조도 관리기준 준수

- 채광(자연조명) : 직사광선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최대·최소 비율이 10:1 이내 유지 및 교실 밖 반사물로부터 눈부심 발생 억제
- 조도(인공조명) : 교실 책상 면이 300Lux 이상이고 최대·최소 비율이 3:1 이내 유지 및 인공조명에 의한 눈부심 발생 억제
- 실내마감(창 면적 변경, 유리교체, 차양설치 등) 유지 관리, 조명설비 청소, 형광등·안정기 교환 등



마. 아토피 · 천식 관리

현 황

○ 학생 천식, 알레르기비염, 아토피피부염 의사진단 현황

- 최근 5년간 청소년건강행태조사 결과 발생 추이를 보면, 매년 비슷한 발생률을 보이며 전국 평균보다 약간 낮은 편임

【 경남 학생 알레르기질환 의사진단 현황(청소년건강행태조사 결과, 단위: %) 】

구 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천식	7.6	7.4	6.7	8.3	6.5
알레르기비염	30.7	33.3	35.6	34.5	33.5
아토피피부염	23.1	22.9	25.6	23.7	21

추진과제

○ 아토피 · 천식 유발 환경요인 제거

- 쉬는 시간 교실 환기 철저
- 칠판, 책상 위 물건레질 청소, 교실 바닥은 진공청소 후 물건레질 청소하고 마지막으로 마른 걸레질
- 학교 시설 신·개축(리모델링) 시 친환경 자재 사용

○ 아토피 · 천식 학생 관리 및 예방교육 실시

- 아토피 · 천식 학생에 대한 특별 관리교육
- 아토피 · 천식 학생에 대한 교직원 대상 응급처치교육
- 홈페이지, 가정통신문을 통한 학부모 홍보 강화

○ 아토피 · 천식 학생 관리에 대하여 교육지원청, 교사, 학부모의 관심 제고

○ 지역 보건소와 연계하여 아토피 · 천식 학생 관리 지원

【 지자체 지원 아토피·천식 안심학교 운영(11개 지역 56개교) 】

2019.12월 기준

지역	학교명	계
창원	내동초, 대원초, 명곡초, 명도초, 명서초, 안민초, 양곡초, 온천초, 평산초 감천초, 광려초, 봉덕초, 성호초, 용마초, 전안초, 진전초, 경남혜림학교 용원초, 웅동초, 제황초, 진해중앙초	21
통영	광도초, 원평초, 유영초, 인평초, 충무중	5
사천	남양초, 노산초, 대방초, 대성초, 사천초, 삼천포초, 정동초, 축동초	8
김해	김해부곡초, 김해합성초, 대감초, 용산초, 진례초, 한림초	6
거제	신현초, 연초초	2
양산	백동초, 서창초, 영천초	3
함안	군북초, 아라초, 칠서초	3
고성	동해초	1
남해	미조초, 성명초	2
함양	금반초, 서하초, 수동초	3
거창	가조초, 북상초	2

감염병 및 응급상황 관리 강화

III

1. 학생감염병 예방 종합대책 추진
2. 감염병 예방 및 위기대응력 제고
3. 학교 내 응급상황 관리체계 구축
4.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 강화





감염병 및 응급상황 관리 강화

1. 학생 감염병 예방 종합대책 추진

기 본 방 침

- 「학생 감염병 예방 종합대책」 추진으로 교육기관의 감염병 예방·대응체계를 강화하여 감염병으로부터 학생 및 교직원 건강 보호

현 황

- 「학교보건법」¹²⁾ 및 교육부 대책을 토대로 경남교육청 「2016~2020년 학생 감염병 예방 종합대책 수립·추진('16.9월~)」
- 학교에서 감염병 발생 시 효과적으로 대응하도록 「학생 감염병 예방·위기 대응 매뉴얼」 제작·배포('16.12월 배포)
- 감염병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모의훈련 실시
 - 평상시 학교 내 감염병 유행 및 감염병 국가위기상황을 가상하여 학교가 참여하는 감염병 대응 모의훈련을 연1회 이상 실시(매년)
- 2019년 도내 감염병 발생 현황
 - 총 감염병 발생건수와 인플루엔자 및 수두 발생률은 2018년에 비해 감소했으나 초등학교에서 수족구병이 평년 대비 많이 발생

【 최근 3년간 도내 감염병 발생 현황(NEIS 집계, 단위: 명) 】

구분	인플루엔자	유행성 이하선염	수두	수족구병	유행성 각결막염	결핵	기타	총 감염병 발생건수
2017년	18,300 (84.1%)	436 (2.0%)	1,360 (6.3%)	149 (0.7%)	971 (4.5%)	16 (0.1%)	523 (2.4%)	21,755
2018년	33,840 (83.1%)	428 (1.1%)	3,293 (8.1%)	314 (0.8%)	1,754 (4.3%)	9 (0.02%)	1,094 (2.7%)	40,732
2019년	21,031 (76.1%)	237 (0.8%)	2,595 (9.4%)	1,771 (6.4%)	1,058 (3.8%)	9 (0.03%)	931 (3.3%)	27,625

12) 「학교보건법」 제14조의3(감염병예방대책의 마련 등)(2016.3.2.개정, 2016.9.3.시행)

추진과제

가. 학교 감염병 예방관리 계획 수립·시행

- 「학생 감염병 예방·위기대응 매뉴얼¹³⁾」 준수
- 학교 내 감염병 예방·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신속한 대응체계 구축
- 학교의 장은 매년 3월 말까지 학생 감염병 예방·관리 계획 수립
- 감염병 발생 시 신속한 조치를 위하여 ‘학생 감염병 관리조직’ 편성·운영
- 교육(지원)청 세부대책 내용 반영 및 정기적 추진상황 모니터링 후 미진한 사항 즉각 보완
- 매월 빈발·유행 감염병 정보를 보건소식지, 가정통신문 등을 활용하여 적극 홍보·제공

나. 교육지원청 단위 감염병 관리 협의체 구성·운영

- 학교·보건소(의료기관) 관계자 및 소아감염병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교육지원청 단위 협의체 구성하여 연 1회 이상 운영
- 지역 내 감염병 발생 정보 공유 및 확산 징후 발견 시 조기차단 대책 수립

다. 감염병 위기대응 모의훈련 실시

- (교육지원청) 신종감염병 등으로 인한 감염병 위기상황 대비 모의훈련 실시
 - 평상시, 유행시, 신종감염병 유입을 가정한 도상훈련모형을 바탕으로 학교와 교육지원청·지자체 등 참여시켜 상반기에 실시
- (학교) 감염병 유행·위기상황 대응능력 향상을 위한 모의훈련 실시
 - 「학생 감염병 대응 모의훈련 모형(‘17년 보급)¹⁴⁾」의 시나리오를 활용하여, 연 1회 이상 가급적 상반기에 실시

13),14) 경상남도교육청 홈페이지 체육예술건강과 자료실 탑재



라. 학교현장의 감염병 예방 및 관리체계 구축

○ 감염병으로 인한 휴업·휴교 또는 등교중지 조치

< 참고자료 10. 등교중지 및 출석인정 근거법령, 참고자료 11. 등교중지 안내서 >

- 인플루엔자, 수두, 유행성이하선염, 유행성각결막염 등 빈발 감염병으로 인한 휴업은 권고하지 않으나, 보건당국의 역학조사 결과 권고하는 경우에는 실시

※ 감염병으로 인한 휴업, 단축수업 등 학사일정 변동시 관할 교육지원청으로 즉시 유선 보고

○ 휴업을 한 경우 학생 생활지도 및 휴업 학생의 수업결손에 따른 대책 강구

- 감염병으로 인한 등교중지는 출결 인정 조치

「학생 감염병 예방·위기대응 매뉴얼」 p98~99

- ▶ 등교중지가 필요한 감염병이 의심되는 경우 확진을 확인할 때까지 등교중지
- ▶ 등교중지 학생이 확진일 경우, 관련법령에 따라 출석처리 하고, 진료결과 감염병이 아니었다 해도 확인기간까지는 출석으로 인정
- ▶ 감염병이 의심되어 의료기관 진료를 의뢰할 때 보호자에게 진료확인서와 등교중지 안내서 배부(참고자료)
 - ※ 등교하지 않고 병원에 가는 경우,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을 수 있도록 학부모(학생)에게 안내(병원에서 참고할 수 있도록 제시)
- ▶ 담임교사는 가정에서의 유의사항(가정 내 격리, 학원 등원 중지 등)을 반드시 안내
- ▶ 등교 재개 시 진료확인서, 의사소견서, 진단서 제출 권장(부득이한 경우 처방전 인정)

○ 보건교사 미배치교 담당자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 멘토-멘티 제도 운영으로 감염병 대응 업무 등 자문·지원

○ 교육(지원)청은 빈발 감염병 발생학교, 보건교사 미 배치학교, 역학조사 추진학교 등 감염병 취약학교 물품지원, 지도서 보급 등 자문·지원 활동 강화

○ 감염병 예방수칙 홍보·캠페인 추진

2. 감염병 예방 및 위기대응력 제고

기 본 방 침

- 학생·학부모 대상 지속적인 교육·홍보를 통한 감염병 예방수칙 생활화

현 황

- 학생대상 예방교육 및 학부모대상 홍보 강화를 위한 자료 제작·배포('17.3월)
 - ※ 학생 빈발 감염병 5종(인플루엔자, 수두, 볼거리, 수족구, 유행성 눈병)에 대한 학생용 교육자료(유, 초·중·고 구분)와 학부모 대상 감염병 예방 홍보용 리플릿(5개 국어 번역본 포함)
- 감염병 관리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과정 운영
 - 학교관리자 및 담당 교원 대상의 원격연수과정 운영(경남교육연수원, 매년) 및 교육(지원)청 담당자 대상 집합연수 실시(매년)
 - ※ '19년 원격연수 이수결과: 학교관리자(79.4%), 담임교사(36.4%), 보건(담당)교사(91.8%)

추 진 과 제

가. 감염병 예방 및 대응 기반 조성

- 교내·외 방역소독으로 취약환경 및 병원소 관리를 통한 감염원 제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6조제4항에 따라 4월부터 9월까지 2개월에 1회 이상, 10월부터 3월까지 3개월에 1회 이상 소독
- 감염병 위기상황시 안정적 대응을 위한 방역물품 구비
 - 학교별 방역물품 확보(상반기)·비축
 - ※ 2020학년도 학교회계예산편성기본지침(p.85) 참조하여 예산 확보
 - ※ 학교별 필요한 방역물품 소요량 계산기(엑셀)는 도교육청 홈페이지 탑재
- 예방접종을 통한 학교 내 감염병 확산 방지
 - 학생의 예방접종력 확인을 통해 '표준예방접종 일정표' <참고자료 7>에 따라 적기에 예방접종을 실시하여 예방접종 대상 감염병의 학교 내 확산 방지



- 초·중학교 입학생 예방접종 확인 철저

※ 초·중학교 입학생 예방접종기록은 나이스와 질병관리본부 시스템 연계되어 전산으로 확인 가능

【 초·중학교 입학생 예방접종 확인 대상 】

접종시기	예방접종 대상 감염병	예방접종 및 접종차수
만4~6세 (초등학생)	디프테리아, 파상풍, 백일해	DTap 5차
	폴리오(소아마비)	IPV 4차
	홍역, 유행성이하선염, 풍진	MMR 2차
	일본뇌염	JE 불활성화 백신4차(또는 약독화 생백신 2차)
만11~12세 (중학생)	디프테리아, 파상풍	Tdap(또는 Td) 6차
	사람유두종바이러스(女)	HPV 1차

- 시스템 연계를 통한 예방접종력 확인기간 종료 후에도 예방접종 미 실시 학생에 대하여 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접종금지자 제외) 학부모에게 지속 안내
- 매 학년도가 종료되기 전에 예방접종관련 NEIS 기록 누락, 입력 착오 등의 사항이 없는 지 확인 후 정정
- 인플루엔자 예방접종률 향상을 통한 학교 내 확산방지 노력
- 정부의 인플루엔자 무료예방접종 지원 사업 적극 홍보

※ 보건당국: ‘20~ ‘21절기부터 만13세(중1학년)까지 무료접종 확대, 백신 3가→4가 변경 예정

- 해외전입생의 예방접종 관리 철저

- ▶ 접종증명서가 있는 경우, 관할지역 보건소에서 등록이 가능(접종기관의 직인, 공식사인 필요)
- ▶ 미 접종자의 경우 접종기관의 권고(예방접종 따라잡기 지침의 권고대상 7종*)에 따라 접종

* 7종: A형간염, B형간염, 폴리오, MMR, 수두, 일본뇌염, Tdap/Td

나. 감염병 예방교육 및 연수 강화

- 학생 눈높이 맞게 개발한 교육자료를 활용하여 학생 빈발 감염병에 대한 예방수칙, 유의사항 등 교육과정과 연계한 보건교육 실시
 - ※ 유·초·중·고등학생용 교육자료(3차시, 워크북·지도서) 보급(학생건강정보센터 탑재)
- 손 씻기, 기침예절 지키기 등 개인위생수칙 지도 강화를 통한 실천율 제고
 - 학교별 화장실에 손씻기 6단계 포스터 부착하여 홍보<참고자료 9>
 - 초등학생 올바른 손씻기 실습교육 지원 사업 적극 참여
 - ※ 사업 참여율: ('17년) 80.5% → ('18년) 82.4% → ('19년) 82.5%
 - ※ 도내 중·고등학생의 연간 손씻기 등 개인위생교육 경험률('19년 청소년건강행태조사) 전체 38.8%(전년대비 3.8% 감소), 남학생(39.9%)에 비해 여학생(37.6%)이 낮음
 - 학교 신·개축 및 보수 시, 손 씻는 시설 및 온수공급이 확충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시설개선 요구
 - 비누, 종이타월, 손 건조기 등 손 씻기에 필요한 비품 비치(단, 손 닦는 수건 비치 금지)
- 교육부 및 도교육청에서 제공하는 ‘학생 감염병 감시정보’ 적극 활용하여 학생 및 학부모 감염병 예방교육 및 안내 강화
 - ※ (교육부) 매주 학생건강정보센터 탑재(주간분석자료), (경남교육청) 매월 공문 안내 (월별 감시정보)
- 학부모용 홍보자료 활용하여 가정과 연계한 감염병 예방관리 강화
 - 학기초 학부모 연수시 가정에서의 협조 및 유의사항¹⁵⁾을 포함한 학부모 교육자료 적극 활용(영어, 베트남어, 일본어, 중국어, 필리핀어 번역본 포함)
 - 가정내 개인위생 관리 및 지도 협조, 감염병 유행시 유의사항 등을 가정통신문, SNS 등을 통해 적극 홍보

15) 경상남도교육청 홈페이지 체육예술건강과 자료실 탑재



[가정에서의 유의사항]

1. 초등학교·중학교 입학전, 보건소·의료기관 방문하여 예방접종 하기
2. 자녀가 감염병이 의심될 경우, 마스크 착용 후 의료기관 방문
3. 완치되어 전염성이 소실될 때까지 **학교 및 학원 등교중지, 다중이용시설 방문 통제**
※ 감염병 확진(의심)환자의 등교중지기간은 출석 처리
4. 등교중지 기간에는 가정내 독립된 공간에서 생활하여 가족과의 접촉을 제한하고, 수건 따로 사용, 락스 소독 등 예방수칙 준수
5. 보건소·의료기관에서의 등교중지 권고 기한이 지나고, 증상 완쾌한 경우 등교
6. 감염병 유행시기에 병문안 자제, 특히 해외여행 후 감염병 의심증상이 있을 경우 즉시 보건소 및 ☎1339(질병관리본부)로 신고

○ 학교관리자 및 교사, 교육(지원)청 담당자 역량 강화 교육 및 연수

- 교장(감), 보건(담당)·담임교사 원격연수 과정 개설·운영(전년도 이수자 제외)
- 2020년 신규(관리자, 보건(담당)교사)와 종전 신규자 중 미이수자는 반드시 이수
- ‘18~ ‘19년 미 이수한 초등학교 담임교사와 중학교 담임교사 우선 이수

○ 교육지원청 업무 담당자 대상 역량강화 연수 추진

- 교육부 주관 집합연수, 교육청 주관 연수 및 회의를 통한 전문성 신장

다. 감염병 발생 보고 및 확산 차단 등 후속 대응 철저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2020.1.1.)

- 감염병 분류체계, 신고기간, 보고기간 및 대상, 신고의무자 별칭 규정(별급) 등 개정
- 종전 질환별 특성(물/식품매개, 예방접종대상 등)에 따른 군(群)별 분류에서 심각도·전파력·격리수준을 고려한 급(級)별 분류로 개편
※ (종전) 제1군~제5군 및 지정감염병 총 80종 → (변경) 제1급~제4급 감염병 총 86종

○ 학교 내 감염병 발생 시 감염병 환자(의심자 포함) 관리 강화

- 학생 감염병 확진 및 의심환자 발생 시 NEIS로 즉시 보고하고, 필요시 신속 격리(등교중지 포함)를 통해 확산 방지 조치 철저

※ 환자 발생시 조치내용 및 절차는 「학생 감염병 예방·위기대응 매뉴얼」에 따르며, 등교중지 및 출석인정 등 출결상황 관리는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및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에 따름

- (학교) 특히, 학교내 감염병 유행상황이 발생(한 학급에 동일 감염병 2명 이상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교육지원청으로 유선보고(NEIS 병행)
- (학교) 최초 NEIS보고¹⁶⁾ 이후, 완치된 경우 수정보고 철저

※ 예시: 최초 의심 보고 → 확진(수정보고) → 완치(수정보고)

- (학교) 학생 및 교직원이 결핵, 홍역, 콜레라,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세균성 이질,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A형간염에 감염된 경우 즉시 보건소에 유선 및 서면으로 신고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시행규칙 제8조

- (교육지원청) 매일 NEIS를 확인·제출하여 보고지연 및 누락이 없도록 관리
- (교육지원청) 관내 감염병 발생 현황을 모니터링하여 유행 여부를 즉시 도교육청 유선 보고하고, 유행 학교 인근 학교에 정보 공유

※ 학생 및 교직원 감염병 발생으로 인한 역학조사, 긴급방역 조치, 언론 취재·보도 등 특이사항 발생 시에는 즉시 학교<보고서식3> → 교육지원청 → 도교육청 보고

○ 「학생감염병 예방·위기대응 매뉴얼」 등 감염병 관련 매뉴얼 및 지침 준수

라. 결핵 예방·관리 강화

○ 학생·학부모 대상 결핵 인식 개선 교육 및 홍보 강화

- 국립마산병원과 연계한 중·고등학교 대상 찾아가는 결핵예방 교육 추진(3월중 신청)
- 결핵 예방 교육 동영상 자료 적극 활용(유튜브 결핵 예방 교육자료)

○ 학생 및 교직원 중 2주 이상 기침하는 경우 결핵 검사 안내

○ 학생 및 교직원 결핵 (의심)환자 발생 시 보고 철저

- 결핵 의심환자 검사 결과는 즉시 유선 보고(학교 → 교육지원청 → 도교육청)
- 교직원 결핵환자 명단의 별도 관리(참고자료 13)(학생은 NEIS로 대체 가능)

16) 참고자료 14. NEIS 사용법 참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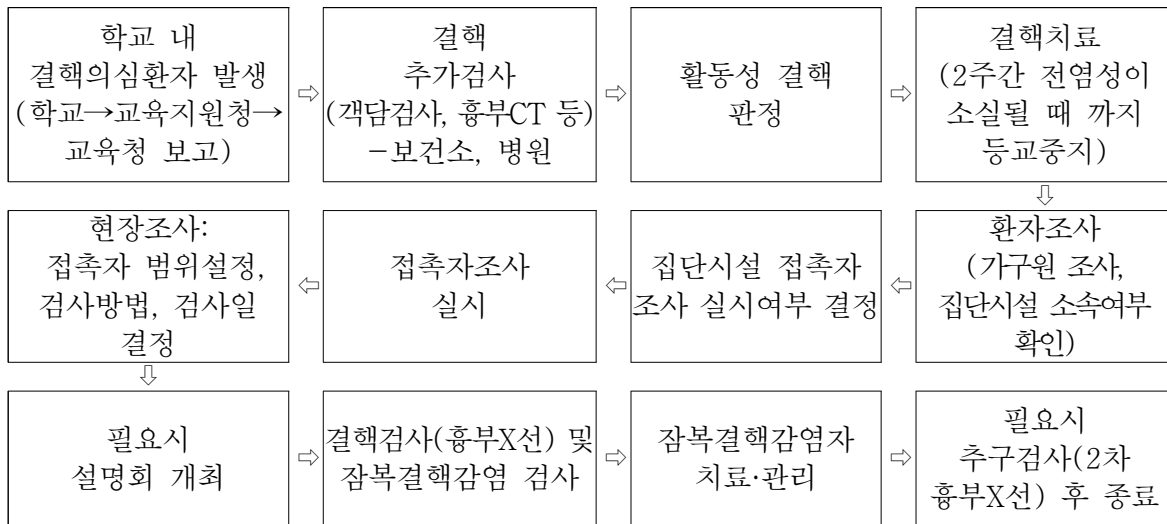


○ 학교 내 결핵 발생 시 대처방법(참고자료 12)에 따라 방역기관 역학조사 협조 등 조치 철저

- 학교 및 교육(지원)청 담당자는 결핵 역학조사에 적극 참여
- 필요시 관할 보건소의 협조를 받아 학생 및 학부모 대상 결핵관련 설명회 개최
- 결핵환자 역학조사 이후 5일 이내 서면보고(보고서식 3)

※ 최초(접촉자 X선 검사 결과 포함), 중간(잠복결핵감염검사 결과 포함), 최종(추구검사) 3회 이상 보고

【 결핵(의심)환자 발생시 역학조사 절차 】



○ 기숙사 운영학교는 입소 학생이 보건소를 통한 결핵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입소 전 해당 학생 및 학부모에게 안내

※ 지역 보건소 사정에 따라 무료 결핵검진이 상이하므로 학생 및 학부모에게 안내 전 관할 보건소에 지원 여부 확인

3. 학교 내 응급상황 관리체계 구축

기 본 방 침

- 학교 내 응급환자 발생 시 신속한 응급처치 및 후송체계를 확보, 응급증상을 보이는 학생에 대하여 적기에 적정 수준의 응급의료 제공
- 소아당뇨 등 질병이나 장애로 인하여 특별한 보호·관리가 필요한 학생에 대한 지원체계 구축
- 학생·교직원을 대상 심폐소생술 등 교육을 통해 응급처치능력을 강화하여 교육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응급상황 시 학교 구성원의 건강 및 안전 확보

현 황

- 「학교보건법」 제12조(학생의 안전관리) 및 학교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조(학교안전교육의 실시)
- 제1형 당뇨병으로 인한 저혈당 및 아나필락시스 쇼크로 인한 보건교사의 응급처치 제공 법적근거 마련(2018.5.29.시행)

학교보건법 제15조의2(응급처치 등)

- ① 학교의 장은 사전에 학부모의 동의와 전문의약품을 처방한 의사의 자문을 받아 보건교사 또는 순회 보건교사(이하 보건교사 등)로 하여금 제1형 당뇨병으로 인한 저혈당쇼크 또는 아나필락시스 쇼크로 인하여 생명이 위급한 학생에게 투약행위 등 응급처치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건교사 등에 대하여는 「의료법」 제27조제1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② 보건교사 등이 제1항에 따라 생명이 위급한 학생에게 응급처치를 제공하여 발생한 재산상 손해와 사상(死傷)에 대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해당 보건교사 등은 민사책임과 상해(傷害)에 대한 형사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사망에 대한 형사책임은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2017.11.28. 신설, 2018.5.29. 시행)

- 「경상남도교육청 응급처치교육 지원 조례(2018.2.14. 공포·시행)」
- 「당뇨병 학생 지원 가이드라인 보급(체육예술건강과-10083, 2019.9.24.)」



추진과제

가. 학교 응급환자 조치 및 관리 철저

- 학교장은 교육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응급상황 대처 관리방침 수립
 - 학교 실정에 따라 응급상황 관리반을 구성하여 응급환자 발생시 역할분담에 따라 신속하게 대처<참고자료 15. 학교 응급의료 관리체계 매뉴얼 활용>
 - 응급환자 관리 대책 수립 시 총괄책임자, 이송책임자 등 학교실정에 맞게 교직원의 역할을 분담하고, 구체적으로 명시
 - 응급환자 이송지연 방지 및 보호자의 긴급 연락 체계 구축
 - 학년초 학생건강실태조사 시 학교 응급환자 관리체계 관련 안내문과 응급사고 시 필요 사항을 사전 안내, 보호자 동의서와 연락처, 희망 이송병원 등 파악
 - 병원 이송 교직원은 사전 출장조치가 불가능한 경우 구두보고 후 사후 처리
 - 교내 발생 응급환자 이송 및 초기진료비 등 필요 경비는 학교회계 편성 · 운영
 - 응급사고로 병원 이송한 모든 사안은 응급환자기록지 작성 · 보관(보건일지 대체 가능)
 - 응급환자 발생 시 대응 및 보고체계 교육 등을 통한 응급상황 대응력 제고
 - 학생 및 교직원 대상 대응 · 보고가 생활화될 수 있도록 교육 강화, 「응급상황 보고 체계」를 교무실, 교실 등에 부착하여 신속한 대응
- ※ 학교 내 응급상황 처리 이후 법무행정서비스가 필요할 경우 경상남도교육청 홈페이지 ‘법률 자문 제도’ 활용

- **응급처치에 대한 기록 및 요양호자(요보호자) 관리**
 - ▶ 학생 응급처치에 관한 주요 처리사항이 누락되지 않도록 보건일지 등에 기록
 - ▶ 병원이송 치료 등 응급환자 발생 중요사항은 사건 날짜, 시간, 장소, 사고현황, 환자상태, 응급처치내용 등을 육하원칙에 의거 정확하게 기록
 - ▶ 개인정보 유출 주의
 - **보건교사 부재시 응급환자 관리**
 - ▶ 학교장은 학년 초에 보건교사 부재 시 업무 대행자를 지정하여 업무분장에 명시함으로써 응급상황 예방 및 초기대처 철저
 - **보건교사 미배치교 응급환자 관리**
 - ▶ 보건실 운영 활성화 방안 마련
 - ▶ 보호자 연락 후 귀가 조치, 병원의뢰
 - ▶ 보건업무 담당교사는 복용약은 투약할 수 없음
- ※ 보건실 의약품 등 전반적인 관리 실태 점검 예정

나. 교내 자동심장충격기(AED) 확충 및 관리를 통한 응급상황 신속대응

- 학교 내 심정지 등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대응을 위한 자동심장충격기(AED) 설치
 - ※ 학교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현황('19.12월): 전 학교 설치 완료
- 학생 및 교직원 대상 설치장소 안내 및 사용방법 교육, 기기별 관리기준에 따라 장비 점검 및 관리 철저
 - 접근이 용이하도록 중앙현관에 설치하고, 안내 표지판 설치 및 홍보

다. 소아당뇨(제1형 당뇨) 학생에 대한 지원·관리체계 강화

- 소아당뇨 학생 조사 관리
 - 학교장은 학생건강검사(건강조사)시 소아당뇨 학생의 재학여부 조사, 교육지원청은 관내 학교의 현황 관리<보고서식 9. 소아당뇨 등 학생 재학 및 지원 현황>
 - ※ (학교) 학생 또는 학부모(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관련 정보를 수집하여 학생지원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 ※ (교육지원청) 학교별 소아당뇨 학생수만 수합하여 소아당뇨 학생 지원을 위한 자료로 활용하고, 학생 개인정보 수집은 원칙적 금지



- 기 보급된 「당뇨병 학생 지원 가이드라인¹⁷⁾」에 따라 학교장은 담임교사, 보건·영양·체육교사 등으로 하여금 필요한 지원방안을 마련·시행하도록 조치

[학교에서 당뇨병 학생 지원 절차(당뇨병 학생 지원 가이드라인, 2019.9.)]



- 학교장은 질병이나 장애로 특별관리·보호가 필요한 학생을 위해 보조인력을 둘 수 있음(「학교보건법」 제15조의2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

17) 당뇨병 학생 지원 가이드라인(수정본) 안내(경상남도교육청 체육예술건강과-10083, 2019.9.24.) 참고

4.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교육 강화

기 본 방 침

- 학생 및 교직원을 대상으로 학교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교육을 통해 심폐소생술 수행 능력 강화
- 교육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응급상황 시 학교 구성원의 건강 및 안전을 확보

현 황

- 「학교보건법」 제9조의2에 따라 모든 학교에서는 모든 학생과 교직원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 학생은 보건교육 등 교육과정에 포함, 교직원은 별도 교육계획 수립 실시
- 초·중·고등학생의 심폐소생술 능력 향상을 위해 ‘경상남도교육청-경상남도-경남일보’ 간 「심폐소생술 교육 활성화」 협약 체결(2013.2.8.)
- 「경상남도교육청 응급처치교육 지원 조례(2018.2.14. 공포·시행)」
- 전국 중·고등학생 심폐소생술 경연대회 개최(2019.11.23., 250명 참가)

추진과제

가. 학생 응급처치교육을 통한 응급상황 대처능력 제고

- 학교 교육계획 수립 시 7대 안전교육 표준안 적극 반영
 - 연중 효율적 운영되도록 학년단위 교육계획 수립 추진
 - 반드시 최소 1개 학년 이상의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실습을 포함한 심폐소생술 교육 실시
 - 교육완료 후 참여인원, 교육시간, 내용 등 교육결과 보고(내부결재)
- 교내 심폐소생술 등 실습교육을 위한 기자재 확충하여 활용
- 학생 심폐소생술 경연대회 등을 통한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교육 활성화



나. 교직원 응급처치교육 의무화로 학교 안전관리 강화

- 학교장은 매 학년도 3월 31일까지 교직원 대상 응급처치교육계획 수립 시행
 - 모든 교직원이 매 학년도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함

< 교육계획 수립 시 교육대상에 포함하여야 하는 교직원의 범위 >

1. 모든 교원(기간제 교사 포함)
2. 학교운동부 지도자, 스포츠강사 등 학교 스포츠 활동과 관련된 사람
3. 교육감 소속의 일반직 공무원
 - ※ 그 밖의 교직원(시간강사 등 단기 상주 직원 포함)에 대한 교육실시 여부는 학교장이 해당 교직원의 학생 교육 참여 정도를 고려하여 교육대상 선정
 - ※ 건강상의 문제로 실습을 수행하기에 어려움이 있는 교직원에 대해서는 별도의 계획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는 방안 고려

- 단, 다른 법령(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학교안전법 등)에 따라 응급처치교육을 받았거나, 교육(지원)청, 연수원에서 실시하는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내용이 포함된 연수·교육을 받은 교직원은 응급처치교육 면제(인정) 가능
 - ※ 「학교보건법」 제9조의2 및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제10조[별표9]
- 상·하반기 교직원 응급처치교육 결과 제출(학교 → 교육지원청 → 도교육청)
- 교육계획 수립 시 외부기관 강사 초빙, 내부 강사 활용 등을 통한 학교 자체교육 실시(가급적 12월까지 이수 완료)
- 교육완료 후 개인별 교육이수 결과는 학교에서는 별도 관리(내부결재)
- 교직원의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교육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 강화
 - 교장·교감·교원의 직무연수 과정에 심폐소생술 교육내용을 포함할 수 있도록 협조 요청
 - 교육지원청에서는 상반기 교직원 교육결과를 모니터링하여 이수율이 낮은 학교 독려, 외부기관 연계 지원 등을 통한 이수율 제고
 - 학교장은 소속 교직원의 개인 또는 단체 응급처치교육 비용을 학교회계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가능

【 2020년 교직원 대상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교육 개설 기관 】

구 분	교육기관명
대학 (10)	(창원) 마산대, (진주) 진주보건대, (김해) 김해대, 가야대 (거제) 거제대, (부산) 동주대, 경남정보대, 부산과학기술대, 동명대 (거창) 거창도립대
협회 등 (8)	(창원) 대한적십자사 경남지사, 수상인명구조교육협회 (부산) 대한안전연합 영남중앙본부, 대한손상예방협회, 대한안전교육센터, 생명의별, 다숨에듀 (대구) 국제통합안전협회
공공기관	보건소 및 각 시·군 소방서

※ 기관별 교육과정 등 세부내용 별도 안내

보고서식

IV





연번	내 용	서식	보고기한	
			학교→교육지원청	교육지원청→도교육청
1	보건교육 실시 현황	서식 1호 [자료집계시스템]	'20.11.30.(월)	'20.12.07.(월)
2	학생 건강증진 교육 실시 현황	서식 2호 [NEIS 자료집계시스템]	'20.12.08.(화)	'20.12.15.(화)
3	학교 감염병 발생 현황(조치현황/언론취재 보고)	서식 3-1/3-2호 [한글]	발생시	발생시
4	상반기 교직원 응급처치교육 실시 현황	서식 4-1호 [자료집계시스템]	'20.07.14.(화)	'20.07.21.(화)
	학생 및 교직원 응급처치교육 실시 현황	서식 4-2호 [자료집계시스템]	'20.12.08.(화)	'20.12.15.(화)
	교직원 응급처치 미이수자 최종 이수결과	서식 4-3호 [한글]	'21.02.10.(수)	'21.02.19.(금)
5	1개 검진기관 및 출장검진 승인 신청 해당학교	서식 5호 [엑셀]	'20.03.06.(금)	'20.03.13.(금)
6	학생 별도검사 추진실적 (소변·결핵·시력)	서식 6호 [NEIS 자료집계시스템]	'20.12.08.(화)	'20.12.15.(화)
7	학생 건강검진 추진현황 및 통계표	서식 7호 [NEIS 자료집계시스템]	'20.12.08.(화)	'20.12.15.(화)
8	초등학생 구강검진 현황	서식 8호 [NEIS 자료집계시스템]	'20.12.08.(화)	'20.12.15.(화)
9	소아당뇨 등 학생 재학 및 지원 현황	서식 9호 [NEIS 자료집계시스템]	'20.04.17.(금)	'20.04.24.(금)
10	희귀난치성 질환 등 건강장애 학생 현황	서식 10호 [NEIS 자료집계시스템]	'20.04.17.(금)	'20.04.24.(금)
11	2021년 학생건강증진 기본방향 개정의견서	서식 11호 [한글]	'20.12.01.(화)	'20.12.03.(목)

서식 1호

보건교육 실시 현황

※ 자료집계시스템(NEIS)으로 보고

1. 보건교육 실시 현황

교육 청명	구분	학교 급별	학교수	학년단위 학급 당 연평균 수업 시수						학년단위 17차시 이상 실시 학교 수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보건교사 순회학교	초								
		중								
		고								
		특 수	초							
			중							
			고							
			소계							
	보건교사 배치학교	계								
		초								
		중								
		고								
		특 수	초							
			중							
			고							
			소계							
		계								

※ 작성요령

- * 학급 당 연평균 수업 시수 : 교사의 수업시수가 아닌, 학급 기준 교과 또는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 이용, 연평균 보건수업 시수
- * 학년단위 17차시 이상 실시 학교 수 : 1개 학년 이상 연간 17차시 이상 정규교육과정에서 지속적으로 보건교육을 실시하는 학교 수
- * 당해 학년도 내 추진계획에 근거하여 작성
- * 보건교사에 의한 보건교육 시수를 작성하되, 보건교사 미배치 학교는 인근학교 또는 교육청 소속 보건교사 지원을 받아 실시한 보건교육에 한하여 기재

2. ‘보건’ 과목 선택 현황

교육 청명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계	
	총 학교수	선택 학교수	총 학교수	선택 학교수	총 학교수	선택 학교수	총 학교수	선택 학교수

※ 작성요령

- * ‘보건’과목 선택 학교수 : ‘보건’을 선택과목으로 운영하는 학교 중 보건교사가 수업하는 학교수



서식 2호

학생 건강증진 교육 실시 현황

※ 자료집계시스템(NEIS)으로 보고

1. 건강한 체중관리 교육(저체중 및 비만 예방 / 단위 : 교)

전체 학교수				실시 학교수			
초	중	고	특수	초	중	고	특수

※ 학생을 대상으로 수업시간, 방송교육, 강당 등에서 실시한 교육을 모두 포함(단순 자료배포는 제외).
미실시 학교는 제출 생략

2. 구강관리 교육 (단위 : 교)

전체 학교수				실시 학교수			
초	중	고	특수	초	중	고	특수

※ 학생을 대상으로 수업시간, 방송교육, 강당 등에서 실시한 교육을 모두 포함(단순 자료배포는 제외).
미실시 학교는 제출 생략

서식 3-1호

(감염병명) 학교 감염병 발생 연왕 보고

< '20. 00. 00(), 00교육지원청 >

- ◆ 보고대상 (긴급,특이사항 발생시)
 - 1군, 결핵, 홍역 등 감염병 발생한 경우
 - 법정·비법정 감염병 집단 발생으로 인한 역학조사 실시
- ◆ 보고방법 : 즉시 교육지원청 유선 및 메일 보고 후, 서면 보고
- ◆ 보고체계 : 학교 → 교육지원청 → 교육청
- ◆ 보고시기 : 사안 발생이후 교육청과 협의하여 발생현황 및 조치사항 일일보고

□ 학교현황

학교명	설립	학교장	학급	교직원	학생수	담당자/전화번호
				명	명	

□ 발생현황: 총 11명 (완치 3명, 치료중 8명/등교중지 명)

구 분	계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치료중	8			1	6		1
치료완료	3		1		1		1
계	11	0	1	1	7	0	2

- 최초환자: 4학년(2반,여)이며 3학년과 가족관계(자매)

□ 조치사항 ※ 날짜별 조치사항, 기입 방법 통일(2019.00.00.)

(2020.00.00.목)

- 00 발생 관련 현장조사 및 역학조사
 - 00초, 경상남도청, 00보건소, 00교육지원청 관계자 총 8명
 - 전교생 대상 유증상자(발진, 수포 등) 일일 모니터링 현황 일일 보고
- 전교생 대상 00 예방접종력 확인 완료 → 미접종자 학부모에게 접종 안내
- 유증상자 일일 모니터링하여 보고 및 격리 조치
- 전교생 학부모 대상 00 발생 안내, 및 교육자료 가정통신문, SMS 발송
- 교실 책상, 출입문, 사물함 소독 등 학교 방역활동 실시

(2020.00.00.금)



□ 향후 대책

- 도내 00 유행양상 모니터링
- 0.0.(수) 유관기관 회의
- 개학 대비 관내 감염병 유행정보 공문 발송 계획(회의 이후)



서식 3-2호

[감염병명] 발생에 따른 [조치현황/언론취재] 보고

< '20. 00. 00(), 00학교(00교육지원청) >

◆ 보고대상

○ 감염병 발생으로 역학조사를 실시한 경우

○ 교내 감염병 발생으로 인해 긴급 방역조치, 언론보도 등의 특이사항 발생시 (법정 비법정 구분없이 모든 감염병 대상)

◆ 보고방법 : 3-1 서식 먼저 보고 후, 역학조사 결과 정리하여 교육지원청 서면보고

◆ 보고체계 : 학교 → 교육지원청 → 교육청 → 교육부

◆ 보고시기 : 최초 역학조사 실시 직후 1회 보고하며, 사안에 따라 마지막 조사가 완료된 후 최종결과를 정리하여 추가 보고

※ 결핵의 경우 최초 접촉자 조사(X-선 검사) 결과 이후 1회, 잠복결핵감염자 결과 이후 1회, 마지막 조사 완료된 후 최종결과를 정리하여 보고(총 3회 이상)

□ 학교 현황

학교명	소재지	학교 규모		담당자(성명/연락처)			비고
		학생수	교직원수	학교	교육지원청	교육청	

□ 감염병 발생 개요 (※서식은 감염병 발생 상황에 따라 수정 가능)

역학조사 실시일	감염병명	발생인원			나이스 보고일**	보건소 신고일**	다음 역학조사일
		환자수	직업	학년-반(인원수)*			
`20.1.12	백일해	30	학생	1-1(10)	`20.1.3 / `20.1.11	`20.1.11	미정
`20.2.22	결핵	1	교원	2-3 담임(1)	해당 없음	`20.2.21	미정



- * 교직원의 경우 직급, 담임여부, 교과목 등을 기재
- * 동일 감염병에 대하여 반복하여 보고한 경우, 최초 보고일과 최종 보고일 기재

□ 역학조사 결과 보고 ※ 보고시점에 따라 현행화

역학조사 실시일	조사단계 (최초/중간/최종)	조사자 현황			조사결과	비고(또는 조치사항)
		직업	학년/반	조사인원		
`20.1.10	최초 (X-선)	총 인원		34		
		학생	2-1	30	전원 정상	지표환자가 속한 반
		학생	3-1	3	전원 정상	지표환자와 같은 동아리 소속
		교직원	2-1 담임 및 교원	5	기타: 1명	지표환자 담임(과거 결핵 흔적)
`20.1.24	중간 1차 TST 및 IGRA 결과	총 인원		17	잠복결핵감염 3명	학생 1명 치료중 학생 1명 치료거부 교직원 1명 치료중
		학생	2-1	15	잠복결핵감염 2명	
		학생	3-1(동아리)	2	잠복결핵감염 0명	
		교직원	2-1 담임 및 교원	4	잠복결핵감염 1명	

□ 기타특이사항

○ 학부모 설명회 개최, 민원사항 등 잠복결핵약 복용 문의 전화, 5건(2020.00.00.)

□ 언론취재사항

○ 2020.00.00. ○○일보에서 잠복결핵발생 및 학교 조치사항 등에 대해 유선으로 취재함(통화자 : ○○학교 보건교사 김○○)

- 주요 취재내용 :

서식 4호

응급처치교육 실시 현황

※ 학교→교육지원청: 자료집계시스템으로 보고

※ 교육지원청→도교육청: 학교취합본 포함하여 공문 제출

□ 서식 4-1 [상반기] 교직원 응급처치교육 실시현황

※ (학교) 2020.7.14.(화) → (교육지원청) 2020.7.21.(화) →도교육청 제출(자료집계시스템)

학교명	급별	교직원 응급처치 교육 실시 현황(중간점검)			자동심장충격기(AED) 설치 현황 ※교육용AED제외			비고
		교육대상 인원	교육이수 인원	미이수자	총 설치 대수	2019년 하반기 구입예정	미 구입 사유	

□ 서식 4-2 [하반기] 학생 및 교직원 응급처치교육 실시현황

※ (학교) 2020.12.08.(화) → (교육지원청) 2020.12.15.(화) →도교육청 제출(자료집계시스템)

1. 학생 교육 실시 현황(해당사항에 1로 표시, 중복 표기 가능)

학교명	급별	보건교사 배치	교육에 활용한 시간 기준					교육 실시 학년 현황						교육 실시자(강사) 현황					
			보건교사	기타교과	창체	기타	미실시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학교 내부 강사			외부기관 강사		
														보건교사	체육교사	기타교직원	공공기관	민간기관	기타
	초																		
	중																		
	고																		

* 보건교사 배치학교 : 기간제 보건교사 배치학교 포함(순회학교는 제외)

2. 교직원 교육 실시 현황

가. 교육이수자 현황

학교명	급별	교육대상 인원(명)				교육이수 인원(명)				미이수 인원 (명)	미이수자 이수계획 (학년도내 이수완료)
		보건교사	체육지도자	그 외 교직원	계	보건교사	체육지도자	그 외 교직원	계		

1) 매 학년도 학교 교육계획 수립 시 교육대상에 포함한 인원

※ 전출 및 휴직 등 교육결과 제출시 학교에 근무하지 않는 교직원은 교육대상 인원에서 제외

2) 교육계획에 포함된 교육대상¹⁾ 중 실제 교육을 이수한 교직원의 수

※ 외부기관에서 실시하는 각종 연수·교육에 심폐소생술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이수 받은 자도 교육 이수인원에 포함하여 작성



나. 학교 내 교육 실시 현황(해당사항에 1로 표시, 중복 표기 가능)

학교명	급별	학교 내부 강사활용 학교			외부기관 강사 초빙 학교		
		보건교사	체육교사	기타 교직원	보건소, 소방서 등 공공기관	민간기관 소속 의료기관 대학 협회 등 그 외 기관	기타

※ 외부기관 위탁교육과 병행한 학교도 강사 활용현황은 작성

다. 외부기관 방문교육실시 현황(해당사항에 1로 표시, 중복 표기 가능)

학교명	급별	연수 주최 기관(외부기관 방문 연수 실시현황)					
		교육(지원)청 (연수원 포함)	공공기관 (소방서, 보건소)	의료기관	대학	협회 (기본방향 명시)	그 외 (기관명 명시)

- 1) 학교 내 자체교육과 병행한 학교도 외부기관 방문 연수 실시현황 작성
- 2) 다른 법령(응급의료에관한법률 등)에 따라 교육받은 경우 외부기관 위탁교육에 작성
- 3) 연수 주최 기관을 작성
(교육지원청에서 00병원에 위탁하여 실습교육을 포함한 연수를 실시한 경우, 교육청에 작성)

☐ 서식 4-3 교직원 응급처치교육 미 이수자 최종 이수 결과

※ (학교) 2021.2.10.(수) → (교육지원청) 2021.2.19.(금) →도교육청 공문 제출(한글)

학교명	‘20.12월까지 미이수 인원	‘20.12월~ ‘21.2월 이수 인원	교육기관	교육 이수 날짜	비고

※ 교육기관이 다를 경우, 행 추가하여 작성 가능

서식 5호

1개 검진기관, 출장검진 승인 신청

※ 엑셀프로그램으로 보고

지역	학교명	소재지	의과검진		구강검진		사유	비고
			1개 검진기관 요청	출장검진 요청	1개 검진기관 요청	출장검진 요청		
예시)	00초		○	○	○	○		

※ 작성요령(단위학교에서 교육지원청으로 제출)

- 해당 학교만 작성
- 1개 검진기관 신청 대상

내용	대상	신청대상
2개 이상 검진기관+내원	전 학교	해당없음
1개 검진기관+내원	지역 내(시·군 단위) 1개 검진기관이 소재하는 학교 ※ 의과-의령, 산청 / 구강-산청만 해당('20.2.기준)	승인신청
1개 검진기관+출장	· 학교가 소재한 읍면동 지역에 검진기관이 없는 경우 · 특수학교(특수학급)	해당없음 (학교장 재량)
	부득이한 사유	승인신청

- 1개 검진기관, 출장검진 신청

- 부득이한 사유로 출장검진이 불가피한 경우(※ 승인요청 시 객관적인 자료 제출-검진기관에 의뢰한 공문 등)
- 의과검진/구강검진 구분기재(중복기재 가능)
 - ※ 부득이한 사유 예시 : 도서벽지 / 검진기관이 학생 건강검진사업에 참여하지 않아 2개 검진기관 선정이 어려운 경우(검진 의뢰 및 회신 자료 추가 제출, 구두 의뢰 등 객관적 자료가 부족할 경우 미승인) 등

※ 별도승인 신청 없이 1개 검진기관 선정하여 출장검진 가능한 경우

(「학교건강검사규칙」 일부개정, 교육부령 제198호 2020.1.9.)

- 학교가 소재한 지역(읍·면·동)에 검진기관이 없는 경우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른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의 학생을 대상으로 검진을 실시하는 경우
-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출장검진이 불가피하다고 교육감¹⁸⁾이 승인한 경우

18) 「경상남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각급 학교는 해당 교육지원청교육장이 승인



서식 6호

학생 별도검사 추진실적

※ 자료집계시스템(NEIS)으로 보고

1. 학생 소변검사 현황

학교 급별	지정 학년별	성별	검사 대상자수	검사자수	소 변 검 사 결 과					비고
					정상	단백양성	혈뇨(잠혈) 양성	단백·혈뇨 동시양성	기타소견	
초	2	남								
		여								
		계								
	3	남								
		여								
		계								
	5	남								
		여								
		계								
	6	남								
		여								
		계								
중	2	남								
		여								
		계								
	3	남								
		여								
		계								
고	2	남								
		여								
		계								
	3	남								
		여								
		계								

2. 학생 시력검사 현황

학교 급별	학년 별	성별	검사 대상자수	검사자수 (A=B+C+D)	정상 (B)	시력이상		비고
						교정대상(C)	교정중인학생(D)	
초	2	남						
		여						
		계						
	3	남						
		여						
		계						
	5	남						
		여						
		계						
	6	남						
		여						
		계						
중	2	남						
		여						
		계						
	3	남						
		여						
		계						
고	2	남						
		여						
		계						
	3	남						
		여						
		계						

※ 시력이상/교정대상(C): 어느 한쪽의 맨눈 시력(나안시력)이 0.7이하인 학생수(시력교정 학생 제외)

3. 고등학생 결핵검사 현황

학교 급별	학년	성별	검사대상자수	검사자수(A=B+C)	정상(B)	결핵(C)	비고
고	2	남					
		여					
		계					
	3	남					
		여					
		계					

※ 결핵 확진 또는 의심되어 치료 중인(치료를 받은) 학생, 폐결핵에 한함



서식 7호

학생 건강검진 추진현황 및 통계표

※ 자료집계시스템(NEIS)으로 보고

교육청명	구분	성별	학생 건강검진 추진현황				척추	눈			구강			혈압		소변		홍부방사선		
			검진 대상 인원	검진 완료 인원	완료 비율	검진 비용 (천원)		시력		눈 병	충 치	치 주 질환	부 정 교 합	고 혈 압	저 혈 압	요 단 백	요 잠 혈	결핵		
								교정 대상	교정한 학생수											
	초등 학교 1학년	남																		
		여																		
		계																		
	초등 학교 4학년	남																		
		여																		
		계																		
	중학교 1학년	남																		
		여																		
		계																		
	고등 학교 1학년	남																		
		여																		
		계																		
	특수/기타	남																		
		여																		
		계																		
	합계	남																		
		여																		
		계																		

서식 8호

초등학생 구강검진 현황

※ 자료집계시스템(NEIS)으로 보고

교육 청명	구분	성별	검진 대상 인원	검진 완료인원	완료 비율	구강검진 결과					비고
						정상	충치	치주 질환	부정 교합	기타	
	초등학교 2학년	남									
		여									
		계									
	초등학교 3학년	남									
		여									
		계									
	초등학교 5학년	남									
		여									
		계									
	초등학교 6학년	남									
		여									
		계									
	소계	남									
		여									
		계									

※ 구강검진 결과 : 중복기재 가능



서식 9호

소아당뇨 등 학생 재학 및 지원 현황

※ 자료집계시스템(NEIS)으로 보고

연번	지역	학교명	학교급별	보건교사 배치 여부 (배치/미배치)	1. 소아당뇨 학생 재학현황		2. 학교에서의 소아당뇨 학생 지원내용 (해당란"1"표기, 중복표기가능)						3. 보호자가 지원을 요청한 내용 (해당란"1"표기, 중복표기가능)					
					학년	학생구분 (알파벳 대문자표기, 성명기재x)	직접주사	주사보조	별도투약장소제공	혈당체크	인슐린보관	글루카곤보관	직접주사	주사보조	별도투약장소제공	혈당체크	인슐린보관	글루카곤보관
1	○○	○○초등학교	초	배치	1학년	A		1	1					1	1			
2	○○	○○초등학교	초	배치	1학년	B			1	1						1		
3	□□	□□중학교	중	배치	3학년	A			1	1						1		

1. 작성요령

- 작성 기준일: 2020.4.1.
- 작성대상: 소아당뇨 학생이 재학중인 학교
- 학생구분: 알파벳 대문자 표기, 1교2명 이상 재학시 A,B,C...로 구분(성명기재 아님)
- 해당란에 '1' 표기
- (학교) 2020.4.17.(금) → (교육지원청) 2020.4.24.(금)

2. 지원내용

- 직접주사 : 보건교사가 인슐린 주사를 직접 투약
- 주사보조 : 학생이 인슐린 자가 주사를 할 때 주사행위 지도
- 투약장소 제공 : 보건실 등 별도 공간에서 인슐린 자가 주사를 할 수 있도록 장소제공
- 혈당체크 : 보건교사 등이 직접 정기적으로 혈당을 측정해줌
- 인슐린보관 : 학교에서 인슐린을 보관하여 줌
- 글루카곤 보관 : 학교에서 글루카곤을 보관



서식 10호

희귀난치성 질환 등 건강장애 학생 현황

※ 자료집계시스템(NEIS)으로 보고

연 번	지 역	학 교 명	학 교 급 별	1. 기도흡인 및 인공도뇨 필요학생재학현황		2. 학교에서의 학생 지원내용 (해당란"1"표기,중복표기가능)		3. 보호자가 지원을 요청한 내용 (해당란"1"표기,중복표기가능)	
				학 년	학생구분 (알파벳순 대문자표기, 성명기재x)	기도흡인(석션)	인공도뇨	기도흡인(석션)	인공도뇨
1	○○	○○초등학교	초	1학년	A		1		
2	○○	○○초등학교	초	1학년	B	1		1	
3	□□	□□중학교	중	3학년	A				1
4	◇◇	◇◇고등학교	고	2학년	A				

1. 작성요령

- 작성 기준일: 2020.4.1.
- 작성대상: 희귀난치성 질환 등 건강장애로 기도흡인 및 인공도뇨가 필요한 학생이 재학중인 학교
- 학생구분: 알파벳 대문자 표기, 1교 2명 이상 재학시 A,B,C...로 구분(성명기재 아님)
- 해당란에 '1' 표기
- (학교) 2020.4.17.(금) → (교육지원청) 2020.4.24.(금)

2. 지원내용

- 기도흡인: 흡인기구를 이용하여 호흡기계의 축적된 분비물을 제거
- 인공도뇨: 도뇨관을 요도를 통해 방광에 삽입하여 소변 배출



서식 11호

2021년 학생건강증진 기본방향(건강관리분야) 개정 의견서

분야	페이지	현행(2020년)	수정안(2021년)	사유	제출자
건강 관리					소속 직 성명 연락처
건강 관리					소속 직 성명 연락처

참 고 자 료

V

- 〈참고자료 1〉 경상남도 학교보건실 시설 및 기구에 관한 규칙
- 〈참고자료 2〉 학교보건실 의약(외)품 보관 및 관리 방안
- 〈참고자료 3〉 비만 및 생활 습관병 관련 자료
- 〈참고자료 4〉 비만학생 관리카드 양식
- 〈참고자료 5〉 시력, 구강 예방 교육자료(예시)
- 〈참고자료 6〉 감염병 분류 및 종류
- 〈참고자료 7〉 표준예방접종일정표
- 〈참고자료 8〉 손 씻기 6단계
- 〈참고자료 9〉 감염병 예방 위한 기침예절
- 〈참고자료 10〉 등교중지 및 출석인정 근거법령
- 〈참고자료 11〉 등교중지 안내서 및 진료확인서(안)
- 〈참고자료 12〉 학교에서의 결핵환자 발견과 관리
- 〈참고자료 13〉 교직원 결핵(의심) 환자 명단 작성서식
- 〈참고자료 14〉 감염병 NEIS 사용법
- 〈참고자료 15〉 학교 내 응급상황 관리체계
- 〈참고자료 16〉 학교 구강보건실 설치 현황
- 〈참고자료 17〉 보건교사 미배치교 보건실방문기록지(안)
- 〈참고자료 18〉 학생 건강검사 실시요령(검진수수료, 별도검사 일정표 등)
- 〈참고자료 19〉 2020년 주요 변경내용



참고자료 1

경상남도 학교보건실 시설 및 기구에 관한 규칙

(경상남도교육규칙 제813호, 2018.6.7., 타법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학교보건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의 보건실 면적과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제2조의 보건실에 갖추어야 하는 시설 및 기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의 적용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를 대상으로 한다.

제3조(보건실 면적) 각급 학교장은 보건실의 면적을 60제곱미터(유치원 15제곱미터) 이상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하게 교실이 부족한 경우 학교장은 보건실 면적을 완화 할 수 있다.

제4조(보건실의 시설 및 기구와 소요기준) 보건실에 갖추어야 하는 시설 및 기구의 소요기준은 별표 1, 별표 2와 같다.

제5조(기타 보건관리에 필요한 시설기구) 유치원장 및 학교장은 학교 특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표 1, 별표 2가 정하는 기준 외에 학생 및 교직원의 보건관리에 필요한 시설 및 기구를 갖추 수 있다.

제6조(실태조사 및 확보) 각급 학교에서는 매년 3월 1일을 기준으로 보건실의 시설 및 기구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미달되는 종목과 수량에 대하여 확보 계획을 수립하고 보완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유치원 보건실 시설 및 기구 소요기준

구 분	시설 및 기구명	소요기준	비고
1. 일반시설 및 기구 등	① 사무용 책상·의자	필수	
	② 약장·기기보관함	"	
	③ 소독(멸균)기	"	
	④ 냉·온장고	"	
	⑤ 물 끓이는 기구	"	
	⑥ 가습기	"	
	⑦ 수도시설 및 세면대	"	
	⑧ 냉·난방시설	"	
	⑨ 통신시설	"	
	⑩ 컴퓨터·프린터기	"	
	⑪ 칠판(환경게시판)	"	
2. 환자안정용 기구	① 침대·침구류 및 보관장	"	
	② 칸막이	"	
	③ 보온기구	"	
3. 건강진단 및 상담용 기구	① 신장계	"	
	② 체중계	"	
	③ 비만측정기	권장	
4. 응급처치용 기구	① 체온계	"	
	② 핀셋·핀셋통	"	
	③ 가위	"	
	④ 농반	"	
	⑤ 가제통	"	
	⑥ 드레싱카	"	
	⑦ 부목	"	
	⑧ 휴대용구급기구·구급낭	"	
	⑨ 휴대용산소기	"	
5. 보건교육용	① 치아·치솔모형	"	
	② 교통표지판	"	
	③ 성교육자료	"	



[별표 2]

학교보건실 시설 및 기구 소요기준

구 분	시설 및 기구명	소요기준		비고
		보건교사 배치학교	보건교사 미 배치학교	
1. 일반시설 및 기구 등	① 사무용책상·의자	필 수	필 수	
	② 건강기록부 및 서류·기자재보관장	〃	〃	
	③ 약장·기기보관함	〃	〃	
	④ 수도시설 및 세면대	〃	〃	
	⑤ 온·습도계	〃	〃	
	⑥ 가습기	〃	〃	
	⑦ 소독(멸균)기	〃	〃	
	⑧ 냉장고	〃	권 장	
	⑨ 물 끓이는 기구	〃	〃	
	⑩ 손전등	〃	〃	
	⑪ 공기청정기	〃	〃	
	⑫ 냉·난방시설	〃	〃	
	⑬ 전화기(착·발신)	〃	〃	
	⑭ 컴퓨터·프린터기	〃	〃	
	⑮ 칠판(환경게시판)	〃	〃	
	⑯ TV, DVD	〃	〃	
	⑰ 순간온수기(온수설비)	〃	〃	
	⑱ 세족기(샤워기 부착)	〃	〃	
	⑲ 온장고 또는 전자레인지	〃	〃	
	⑳ 스탠드 또는 탁상용 전등	〃	〃	
	㉑ 진공청소기	〃	〃	
	㉒ 페이퍼타올 또는 핸드드라이어	권 장	〃	
2. 환자 안정용 기구	① 침대	필 수	필 수	
	② 침구류(침대커버, 이불, 베게)	〃	〃	
	③ 침구류 보관장	〃	〃	
	④ 칸막이(가리개)	〃	〃	
	⑤ 보온기구(전기요)	〃	〃	
3. 건강진단 및 상담용 기구	① 비만측정기(신장·체중 자동측정)	필 수	필 수	
	② 전기시력표, 지시봉, 눈가리개	〃	〃	
	③ 펜라이트(penlight)	〃	〃	
	④ 상담용의자·탁자·진찰용 의자	〃	〃	
	⑤ 혈당측정기	〃	권 장	
	⑥ 혈압계·청진기	〃	〃	

구 분	시설 및 기구명	소요기준		비고
		보건교사 배치학교	보건교사 미 배치학교	
3. 건강진단 및 상담용 기구	⑦ 척추측만증 측정기(각도기)	"	"	
	⑧ 소아용 혈압계	"	"	
	⑨ 검안경·검이경·비경	"	"	
	⑩ 치과용거울, 탐침, 핀셋, 핀셋통	"	"	
	⑪ 긴의자	권 장	"	
	⑫ 스톱워치	"	"	
4. 응급 처치용 기구	① 체온계(디지털 고막체온계)	필 수	필 수	
	② 구급낭(휴대용 구급기구)	"	"	
	③ 냉·온 찜질기(팩), 얼음주머니	"	"	
	④ 세안수수기	"	"	
	⑤ 경추보호대	"	"	
	⑥ 들것·부목	"	"	
	⑦ 거즈통(드레싱캔, 스폰지캔)	"	권 장	
	⑧ 드레싱카	"	"	
	⑨ 스펀지캔(소, 중)	"	"	
	⑩ 소독접시	"	"	
	⑪ 구급처치용 침대	"	"	
	⑫ 의료용 가위	"	"	
	⑬ 농반	"	"	
	⑭ 휴대용산소기	"	"	
	⑮ 포셉·모스키토·켈리(지혈감자)·포셉통	"	"	
	⑯ 비염세정기	권 장	"	
	⑰ 목발·휠체어	"	"	
5. 일반 위생관리 검사용 기구	① 통풍건습계	권 장	권 장	
	② 흑구온도계	"	"	
	③ 조도계	"	"	
	④ 소음계	"	"	
	⑤ 먼지측정기	"	"	
	⑥ 수질검사용 기구	"	"	
6. 보건 교육용기 자재	① 성교육용 도구·자료	필 수	권 장	
	② 인체모형(흡연예방용)	"	"	
	③ 치아·잇솔 모형	"	"	
	④ CPR(심폐소생술)인형	"	"	
	⑤ 안전교육용 도구	권 장	"	
	⑥ 안구모형·인체해부도·식품모형·생식기 구조도·교통표지판·뇌모형	"	"	
	⑦ 기타 보건교육용 도구	"	"	
7. 기 타	① 학생 및 교직원의 보건관리에 필요한 시설 및 기구 등	권 장	권 장	



참고자료 2

학교보건실 의약(외)품 보관 및 관리 방안

■ 학교보건실에서의 의약(외)품 사용

● 약사(藥師)가 아닌 자에 의한 약사(藥事) 업무 수행

- 「학교보건법 시행령」 제23조제3항제1호 : 보건교사(간호사 면허를 가진 자)의 직무(의료행위)

● 학교보건실에서는 의약품 조제가 불가하며 일반의약(외)품만 사용

- 「약사법」 제23조, 「약사법 시행령」 제23조제5호

■ 학교보건실 의약(외)품 보관 등

● 의약품은 의약품이 아닌 다른 것과 구별하여 보관

- 의약품과 의약외품은 분류하여 보관하고, 냉장 보관 시에는 의약(외)품 이외의 것과 분리 보관

● 의약(외)품 사용 및 보관 기준 준수

- 의약품 보관 용기 또는 첨부문서에 명기된 유효기간, 보관방법, 사용방법 등을 준수
 - ※ 온·습도 조절, 직사광선 차단 등 보건위생상 위해(危害)가 없고 의약품효능이 떨어지지 않도록 관리

● 의약품의 안전관리, 오·남용 방지를 위하여 보관·관리에 철저

● 용기나 포장에 개봉된 상태의 의약품을 서로 섞어서 보관하지 아니할 것

■ 학교에서는 학교의사·학교약사의 자문·상담을 통해 의약(외)품 사용 및 관리할 것

참고자료 3

비만 및 생활 습관병 관련 자료

1. 비만이란?

가. 단순히 몸무게가 많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체내에 지방이 과다하게 축적

나. 소아비만의 발생원인

- 1) 맛별이 부모 자녀의 식습관 변화 : 인스턴트, 패스트푸드 선호
- 2) 한 자녀의 심리적 소외감 : 풍족한 간식거리로 해결하려는 경향
- 3) 높은 교육열과 방대한 학습량 : 운동부족 초래

2. 비만도란?

: 학생의 키와 몸무게를 이용하여 계산된 체질량지수(BMI)를 성별·나이별 체질량지수 백분위수 도표에 대비하여 판정

가. 비만도 표기방법

- 1) 체질량지수(kg/m^2) = 실측체중(kg) / 신장(m)²

체질량지수 백분위수 도표	
가. 5 미만인 경우	저체중
나. 85 이상 95 미만인 경우	과체중
다. 95 이상인 경우	비만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정상

3. 비만과 관련된 질환

가. 고혈압

- 1) 비만과 고혈압의 관계

가) 몸이 비대하여 몸 전체로 보내야 될 혈액이 많아 심장이 힘을 들여 펌프질을 해야 한다.

나) 피하지방들이 말초혈관에 저항을 주기 때문에 각 조직에 혈류를 보내기 위해서는 그만큼 압력이 세어지기 마련이다.

다) 고혈압이 생길 위험은 비만 환자에서 정상인보다 2배가량 높다.



라) 고혈압 환자가 체중 조절을 병행하여 5kg를 줄이면 수축기 혈압을 10mmHg, 확장기 혈압을 5mmHg 낮출 수 있다.

2) 고혈압의 치료 및 예방

가) 일반적 원칙과 상식

고혈압은 ‘완치되는’ 질환이 아니고 ‘조절하는’ 질환이므로 약물치료 및 생활습관을 개선하는 등의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

나) 흡연을 하시는 분은 꼭 담배를 끊어야 한다.

다) 염분섭취를 줄여야 한다.

라) 칼륨의 섭취 : 소금을 많이 섭취하는 사람의 경우 하루 3.5g 이상의 칼륨 섭취가 혈압강화에 도움을 줍니다.

마) 과음을 피하고 소량이라도 매일 마셔서는 안 된다.

바) 적절한 가벼운 운동을 규칙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사) 식생활에서 동물성 지방질, 당분의 섭취를 최소화해야 한다.

아) 표준체중의 범위를 유지해야 한다.

자) 스트레스를 줄인다.

차) 급격한 환경의 변화를 피해야 한다.

카) 변비를 피한다.

타) 정상혈압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파) 만약 약을 먹게 된다면 평생 계속해야 한다.

나. 당뇨병

1) 성인에서 유발하는 인슐린 비의존성 당뇨병은 비만과 매우 관련이 높다. 이것은 혈당 조절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인슐린이 부족해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인슐린은 충분히 있는데 당뇨병이 생기는 것으로 비만이 주요인이다.

2) 비만하면 인슐린이 충분히 있어도 워낙 쓰여야 될 곳이 많아 인슐린의 필요량이 증가 되고 인슐린이 말초조직에서 효과적으로 쓰이지 못하기 때문에 혈당이 높아질 수 있다.

3) 당뇨병 환자가 비만하다면 체중조절을 겸해야 당뇨가 좋아질 수 있다.

4) 당뇨를 예방하는 생활습관.

가) 규칙적인 식사, 규칙적인 운동

나) 콩제품을 섭취한다(된장국이나 두부)

- 다) 당분이 많은 음식은 먹지 않는다.
- 라) 이야기하면서 식사를 하지 않는다.
- 마) 우유나 과일을 많이 먹는다.
- 바) 당뇨병의 음식 메뉴에 따라 먹는다.
- 사) 천천히 꼭꼭 씹어 먹는다.
- 아) 스트레스를 적절하게 해소한다.
- 자) 급성 질병에 걸리지 않도록 한다.
- 차) 인스턴트음식은 적게 먹고 과일과 채소를 많이 먹는다.

다. 고지혈증

- 1) 고지혈증이란 혈액 중에 지방성분이 많은 것을 의미한다.
- 2) 혈액에서 측정할 수 있는 지방 성분으로는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이 있는데 콜레스테롤이라고 다 나쁜 것은 아니고 일부는 몸에 좋은 역할을 하는 것도 있다.
- 3) 총콜레스테롤이나 중성지방이 너무 많거나, 좋은 역할을 담당하는 콜레스테롤이 적으면 동맥경화가 생길 위험이 높다.
- 4) 비만한 사람에서 고지혈증이 생길 위험이 2~3배 높고, 그에 따라 동맥경화가 생길 위험이 높다.

라. 허혈성 심장질환(협심증, 심근경색증)

- 1) 허혈성 심장질환은 심장에 분포되어 있는 혈관이 막히거나 그 혈관에서의 혈액순환이 잘 안되어서 생기는 심각한 심장질환이다.
- 2) 비만 그 자체가 단독 위험요인으로도 작용하지만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이 동반되어 허혈성 심장질환이 그 위험을 가중시킨다고 볼 수 있다.
- 3) 심혈관계질환의 예방(심장학회)
 - 가) 일평생동안 음식과 생활습관에 길들여야 한다.
 - 나) 매일 30분 이상 걷도록 한다(운동을 안 하면 심장병이 2배 증가한다).
 - 다) 다양한 과일과 야채를 하루 5번 이상 먹고, 곡물섭취를 늘린다.
 - 라) 우유는 저지방 우유를 먹도록 하고, 콩과 생선 섭취를 늘리고, 기름기가 적은 고기를 선택한다.
 - 마) 포화지방, 콜레스테롤, 알코올 섭취를 줄이고 적당한 견과류를 섭취한다.
 - 바) 튀긴 음식의 섭취를 줄인다.
 - 사) 과음을 피한다.



아) 금연한다.

4) 심장병의 예방과 진행을 막기 위한 가이드라인(미국 심장학회)

가) 다양한 종류의 야채와 과일을 매일 5번 이상 먹을 것

나) 곡물섭취를 늘릴 것

다) 무지방 혹은 저지방 우유를 먹고, 콩과 생선섭취를 늘린다.

라) 섭취량에 따른 운동량 증가

마) 포화지방산과 콜레스테롤의 섭취를 줄이고, 콩, 곡물 등에서 불포화 지방의 섭취를 늘린다.

바) 소금과 알코올 섭취를 줄인다.

사) 육식은 닭고기나 기름이 없는 것을 선택

4. 적절한 체형관리를 위한 10가지 지침

가. 나의 현재와 미래의 표준체중(체형)을 알아두자.

나. 하루에 필요한 적정 칼로리만 먹도록 하자.

다. 세끼 식사를 골고루 섭취하자. 특히 아침식사는 꼭 하자.

라. 우유와 야채는 매일, 충분히 먹자.

마. 군것질과 간식을 줄이자.

바. 식사와 간식은 정해진 자리에서 바르게, 천천히 먹자.

사. 먹은 후 곧 이를 닦자.

아. 매일 규칙적으로 내게 맞는 운동을 하자.

자. 야외활동을 늘리자.

차. 한 가지 이상씩 잘 하는 운동을 만들자.

참고자료 4

비만학생 관리카드 양식

(대상 : 중등도 이상 학생)

□ 해당사항에 ☑표 해주세요. (어린이나 부모님이 기록)			
제 ___학년 ___반 성명 : _____ 성별 : ☐ 남 ☐ 여 연령 : 만 ___세 신장(키) : _____ cm 체중 : _____ kg (본인목표체중 : _____ kg)			
비 만 도	☐ 경 도 ☐ 중등도 ☐ 고 도	가족구성원	어른 _____명 어린이 _____명
나의 병력	입원이나 수술한 적이 있으면 ()질병으로		
가족 병력	상세히 기재바람. ()질병으로		
성격 및 취미	성격 : ☐ 급하다 ☐ 보통이다 ☐ 느리다 ☐ 아주 느린 편이다 취미 : ()		
식 습 관	식사속도 ☐ 빠르다 ☐ 보통이다 ☐ 느리다 ☐ 아주 느리다 식습관 ☐ 매우 짜게 먹는다. ☐ 보통이다 ☐ 싱겁게 먹는다.		
생 활 습 관	☐ 일찍 일어나고 일찍 잠자리에 든다. ☐ 밤늦게 잠자리에 들고 아침에도 늦게 일어난다. ☐ 잠자리에 드는 시간이 일정치 않고 일어나는 시간도 불규칙하다.		
좋아하는 음식	①	②	③
싫어하는 음식	①	②	③
좋아하는 운동	①	②	③
비 만 원 인	가족 중 비만인 사람이 있나요? 있다면, 적어주세요. ()		
과식하는 시 간 대 (모두 표시)	☐ 잠자리에서 일어난 직후 ☐ 아침 8~10시 사이 ☐ 오전 10~12시 사이 ☐ 오전 12~오후 2시 사이 ☐ 오후 2~4시 사이 ☐ 오후 4~6시 사이 ☐ 오후 2~7시 사이 ☐ 오후 6~8시 사이 ☐ 오후 8~10시 사이 ☐ 잠자리에 들기 전		
규칙적으로 하는 운동	혼자 하는 운동 예) 하루에 줄넘기 50번 이상	가족이나 친구와 함께 하는 운동 예) 1주일에 1회 가족과 함께 등산	



제 ____학년 ____반 성명 : _____ 성별 : ☐ 남 ☐ 여 연령 : 만 ____세												
신장(키) : _____ cm 체중 : _____ kg (목표체중 : _____ kg)												
측정항목	1차			2차			3차			4차		
	20	년	월 일	20	년	월 일	20	년	월 일	20	년	월 일
신 장	cm			cm			cm			cm		
체 중	kg			kg			kg			kg		
비 만 도	%			%			%			%		
혈 압	/			/			/			/		
구 분	행동 및 실태 분석내용						지도방법					
비만요인												
개인적 특성												
식사습관												
운동습관												
행동습관												
심리적 요인												
가족 특성												
개인별 처방	목표 체중		_____ kg		1일 섭취 칼로리		_____ kcal					
	목표 비만도		_____ %		1일 운동량		종목 : _____ 시간 : _____ 분					
					운동 시 최대 심박수		_____ 회/min					
다짐 한마디												
♣ 비만 관리할 때 주의사항 ▪ 식사는 1일 1,200kcal 이하의 칼로리 제한은 삼간다. ▪ 운동은 주 4회 이상 1회당 30분 이상 지속적으로 실시한다. ▪ 지나친 운동은 삼간다. ▪ 운동요법과 식이요법은 병행해서 실천한다. ▪ 스스로에게 긍정적이고 지속적인 격려와 칭찬을 하루에 하나씩 한다. ▪ 단시간 내 체중조절이 되지 않는다하여 실망하지 말고 꾸준히 실천한다.												

제 ____학년 ____반 성명 : _____ 성별 : ☐ 남 ☐ 여 연령 : 만 ____세 신장(키) : _____ cm 체중 : _____ kg (목표체중 : _____ kg)				
상담일자	주요상담내용	상담자		비고
		직명	성명	
월 일				
월 일				
월 일				
월 일				
월 일				
월 일				
월 일				
월 일				
월 일				



참고자료 5

시력, 구강 예방 자료(예시)

<눈 건강과 시력관리 방안>

1. 약시의 발견과 치료

시력발달과정상의 장애를 초래하는 대표적인 문제가 근시, 원시, 약시, 사시이다. 그 중에서 약시는 전 인구의 2~3%를 차지하는 대표적인 소아안과 질환이며, 조기검진을 통하여 사전에 발견하면 저비용으로도 쉽게 정상시력을 회복할 수 있기 때문에 예방보건의 측면에서도 중요

가. 약시란?

- 1) 어린 연령 때부터 눈이 제대로 사용되지 못하여 생긴 약화된 시력상태

※ 눈이 제대로 사용되지 못했다 함은?

시력발달에 필수적인 어린 연령 때부터(만 7세 이하) 적절한 시 자극이 양안에 같은 정도로 제공되지 못하여 정상적인 시력발달의 과정을 거치지 못했다는 의미

- 2) 일찍 발견되면 대부분 치료가 잘 되어 좋은 시력을 찾을 수 있음
- 3) 만 8~9 세 이후에 늦게 발견되면 치료가 어렵고 장기간 치료해도 영구적인 시력상실을 초래하는 경우가 적지 않음

나. 약시의 원인

- 1) 사시와 부등시, 시자극 결핍성 약시, 굴절이상 약시 등

○ 사시: 삐뚤어진 눈을 잘 쓰지 않기 때문에 두 눈 간의 우열이 생김

○ 부등시

- 두 눈에 맺힌 상의 질이 달라서 굴절이상이 심한 쪽이 상대적으로 열등한 눈이 됨
- 한 쪽 눈은 점점 강해지고 반대로 열등한 눈에 맺힌 상은 억제 당하고 무시 당하게 됨
- 상태가 지속되면 열등한 눈은 점점 약해져가고 교정시력도 떨어져 깊은 약시가 되어감

○ 시자극 결핍성 약시: 안검하수, 각막혼탁, 선천성 백내장 등에 의해 한쪽 눈의 빛 자극이 차단되어 발생

○ 굴절이상 약시: 심한 굴절이상에 의해 발생

다. 약시의 치료

- 1) 조기에 진단되고 치료하면 약시안의 시력도 정상적으로 발달되어 회복가능
- 2) 약시가 발생한 원인을 알아내는 것이 가장 중요
 - 제거할 수 있는 원인이라면 그 원인을 제거
 - 굴절이상 있으면 안경을 착용하여 망막에 선명한 상이 맺을 수 있도록 해서 시력발달 도모
 - 사시가 있으면 사시의 치료를 함께 고려
 - 수술 전에 약시의 치료가 선행되어야 하고, 수술 이후에도 약시의 치료는 병행
- 3) 대표적인 치료방법: 가림치료
 - 좋은 쪽 눈을 가려서 나쁜 쪽 눈을 자주 사용하고 일하도록 하여 시력을 강화시키는 원리
 - 가림치료용 안대나 거즈, 특수 안경을 이용하여 한눈을 가림
 - 깨어있는 시간의 전부 혹은 일정시간을 정하여 한눈을 가림
 - ※ 기간은 수주에서 수년까지 다양하게 걸릴 수 있음
- 4) 안약점안치료법
 - 좋은 쪽 눈의 시력을 흐리게 만들어 나쁜 쪽 눈을 자주 쓰도록 유도하는 방법

2. 시력관리(근시예방 및 진행억제를 위한)를 위한 '학생 7대 생활수칙'

- 가. 독서, 컴퓨터 활동 등 가까이 보는 일을 할 때는 30분 보면 10분은 멀리 보거나 눈이 휴식을 취하는 생활 원칙을 만들고 지키기
- 나. 불필요하거나 불건전한 근거리 시각 활동을 하는 데 시간을 소비하지 않기 (불건전 게임 혹은 인터넷)
- 다. 독서, 컴퓨터 작업을 할 때는 30cm 이상 충분한 거리를 두고 보기
- 라. 책을 읽거나 공부를 하는 등 근거리 작업 활동을 할 때는 충분히 밝은 조명 상태에서 하도록 환경을 조절하기
- 마. 충분한 야외 활동하기(하루 낮 시간 중 2시간 이상)
- 바. 충분한 수면시간, 규칙적인 수면습관 지키기
- 사. 음식을 골고루 섭취하기
(눈 건강에 필요한 영양소를 골고루 부족함 없이 섭취)



<건강한 치아를 위한 구강관리>

1. 자일리톨의 효과

자일리톨은 화학성분 물질이 아닌, 채소나 과일 등에 다양하게 존재하는 천연 감미료로 벚나무, 떡갈나무, 자작나무 등과 같은 활엽수에서 추출됩니다. 자일리톨은 설탕과 대등한 단맛을 내지만 충치균의 먹이가 되지 않고 입안의 산도를 떨어뜨리지 않는 충치예방에 효과가 있는 새로운 감미료

가. 자일리톨의 충치예방 발생 억제 활동

- 1) 충치균(S.mutans)은 자일리톨을 설탕으로 착각하고 먹는다.
- 2) 충치균에 의해서 소화되지 않으므로 산을 만들지 못하고 그냥 뱉어 낸다.
- 3) 계속해서 충치균이 또 자일리톨을 먹으면, 에너지를 다 써버려 활동이 약해지게 된다.
- 4) 설탕 등의 당분을 섭취해도 충치의 원인인 산을 만들지 못해 충치가 예방된다.

나. 자일리톨을 잇솔질 대신 사용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며, 자일리톨의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다음 순서대로 사용하는 것이 충치 예방에 큰 효과가 있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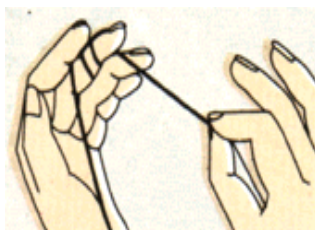
2. 건강한 치아를 위한 구강용품

가. 칫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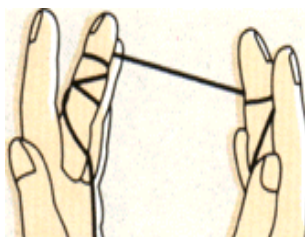
- 1) 칫솔모의 크기: 자신의 어금니 2개 반 정도가 적당하다.
- 2) 칫솔모의 세기: 보통모가 좋다.
- 3) 칫솔의 보관법: 청결한 장소에서 서로 닿지 않게 건조한 상태로 보관한다.
- 4) 칫솔의 교체시기: 2~3개월 정도이며 닳거나 벌어지면 바로 바꿔줘야 한다.

나. 치실

- 1) 치실은 잇솔질에도 닿이지 않는 치아와 치아 사이를 청결하게 하고 완전한 프라그 제거를 위한 방법이다.
- 2) 치실의 사용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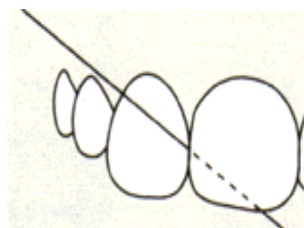
① 30cm 정도 잘라서
손가락에 감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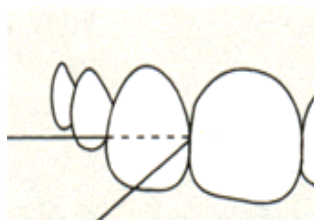
② 다른 쪽 손가락에도
감는다.



③ 엄지와 인지를 사용하여
실을 3cm정도로 만든다.



④ 치아와 치아 사이에
실을 넣는다.



⑤ 위, 아래로 치아를
닦는다.



⑥ 마지막 치아도 닦는다.



참고자료 6

감염병 분류 및 종류(86종)

구분	제1급감염병 (17종)	제2급감염병 (20종)	제3급감염병 (26종)	제4급감염병 (23종)
유형	생물테러감염병 또는 치명률이 높거나 집단 발생 우려가 커서 발생 또는 유행 즉시 신고하고 음압격리가 필요한 감염병	전파가능성을 고려하여 발생 또는 유행시 24시간 이내 신고하고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	발생 또는 유행시 24시간 이내에 신고하고 발생을 계속 감시할 필요가 있는 감염병	제1급~제3급 감염병 외에 유행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표본감시 활동이 필요한 감염병
종류	가. 에볼라바이러스병 나. 마버그열 다. 라싸열 라. 크리미안콩고출혈열 마. 남아메리카출혈열 바. 리프트밸리열 사. 두창 아. 페스트 자. 탄저 차. 보툴리눔독소증 카. 야토병 타. 신종감염병증후군 파.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 하. 중동호흡기증후군 거.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너. 신종인플루엔자 더. 디프테리아	가. 결핵 나. 수두 다. 홍역 라. 콜레라 마. 장티푸스 바. 파라티푸스 사. 세균성이질 아.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자. A형간염 차. 백일해 카. 유행성이하선염 타. 풍진 파. 폴리오 하. 수막구균 감염증 거. b형헤모필루스 인플루엔자 너. 폐렴구균 감염증 더. 한센병 러. 성홍열 머. 반코마이신내성황색포도알균(VRSA) 감염증 버. 카바페넴내성장내세균속균종(CRE) 감염증	가. 파상풍 나. B형간염 다. 일본뇌염 라. C형간염 마. 말라리아 바. 레지오넬라증 사. 비브리오패혈증 아. 발진티푸스 자. 발진열 차. 찰저가무시증 카. 랩토스피라증 타. 브루셀라증 파. 공수병 하. 신증후군출혈열 거. 후천성면역결핍증(AIDS) 너. 크로이츠펔트-야콥병(CJD) 및 변종크로이츠펔트-야콥병(vCJD) 더. 황열 러. 뎅기열 머. 큐열 버. 웨스트나일열 서. 라임병 어. 진드기매개뇌염 저. 유키타 쳐. 치쿤구니야열 커.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터.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가. 인플루엔자 나. 매독 다. 회충증 라. 편충증 마. 요충증 바. 간흡충증 사. 폐흡충증 아. 장흡충증 자. 수족구병 차. 임질 카. 클라미디아감염증 타. 연성하감 파. 성기단순포진 하. 침균권딜로 거. 반코마이신내성장알균(VRE) 감염증 너. 메티실린내성황색포도알균(MRSA) 감염증 더. 다제내성녹농균(MRPA)감염증 러. 다제내성아시네토박터바우마니균(MRAB)감염증 머. 장관감염증 버. 급성호흡기감염증 서. 해외유입기생충감염증 어. 엔테로바이러스감염증 저.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
감시	전수	전수	전수	표본
신고	즉시	24시간 이내	24시간 이내	7일 이내

※ 법정감염병 분류체계 개편에 따른 변경사항

- (개정전) 물/식품매개, 예방접종대상 등 질환별 특성에 따른 군(群)별 분류 ⇨ 심각도·전파력·격리수준을 고려한 급(級)별 분류
- (개정전) 제1군~제5군감염병 및 지정감염병 총 80종 ⇨ (개정후) 제1급~제4급감염병 총 86종
- 바이러스성 출혈열(1종)을 개별 감염병(마버그열, 라싸열 등 6종)으로 분리·열거
- 사람유두종바이러스감염증을 제4급감염병에 신규 추가

참고자료 7

표준예방접종일정표

출처: 질병관리본부 「2019 표준예방접종 일정표」

구분	대상전염병	백신종류	0개월	1개월	2개월	4개월	6개월	12개월	15개월	18개월	19~23개월	24~35개월	만4세	만6세	만1세	만2세
국가 예방 접종	결핵 ¹⁾	BCG(피내용)	1회													
	B형간염 ²⁾	HepB	1차	2차			3차									
	디프테리아/파상풍/백일해	DTaP ³⁾			1차	2차	3차		추4차				추5차			
		Tdap ⁴⁾													추6차	
	폴리오 ⁵⁾	IPV			1차	2차	3차						추4차			
	b형헤모필루스 인플루엔자 ⁶⁾	PRP-T/HbOC			1차	2차	3차	추4차								
	폐렴구균	PCV(단백결합) ⁷⁾			1차	2차	3차	추4차								
		PPSV(다당질) ⁸⁾									고위험군에 한하여 접종					
	홍역 ⁹⁾ /유행성이하선염/풍진	MMR						1차					2차			
	수두	Var						1차								
	A형간염 ¹⁰⁾	HepA							1-2차							
	일본뇌염	IJEV(불활성화백신) ¹¹⁾							1-2차			3차		추4차		추5차
		IJEV(약독화백신) ¹²⁾							1차			2차				
	사람유두종바이러스 ¹³⁾	HPV														1-2차
	인플루엔자	IIV						매년접종								
기타 예방 접종	로타바이러스	RV1(로타릭스)			1차	2차										
		RV5(로타텍)			1차	2차	3차									

- 국가예방접종 : 국가가 권장하는 예방접종(국가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통해 예방접종 대상 감염병과 예방접종의 실시기준 및 방법을 정하고, 국민과 의료 제공자에게 이를 준수토록 하고 있음.)

- 기타예방접종 : 국가예방접종 이외 민간 의료기관에서 접종 가능한 예방접종

- 1) BCG : 생후 4주 이내 접종
- 2) B형간염 : 임신부가 B형간염 표면항원(HBsAg) 양성인 경우에는 출생 후 12시간 이내 B형간염 면역글로불린(HBIG) 및 B형간염 백신을 동시에 접종하고, 이후 B형간염 접종일정은 출생 후 1개월 및 6개월에 2차, 3차 접종 실시
- 3) DTaP(디프테리아·파상풍·백일해) : DTaP-IPV(디프테리아·파상풍·백일해·폴리오) 혼합백신으로 접종 가능
- 4) Tdap : 만 11~12세에 Td 또는 Tdap으로 추가 접종, 이후 10년 마다 Td재접종(만1세 이후 접종 중 1번은 Tdap로 접종)
- 5) 폴리오 : 3차 접종은 생후 6개월에 접종하나 18개월까지 접종 가능하며, DTaP-IPV(디프테리아·파상풍·백일해·폴리오) 혼합백신으로 접종 가능
※ DTaP-IPV(디프테리아·파상풍·백일해·폴리오) : 생후 2,4,6개월, 만4~6세에 DTaP, IPV 백신 대신 DTaP-IPV 혼합백신으로 접종할 수 있음. 이 경우 기초 3회는 동일 제조사의 백신으로 접종하는 것이 원칙이며, 생후 15~18개월에 접종하는 DTaP 백신은 제조사에 관계없이 선택하여 접종가능
- 6) b형 헤모필루스 인플루엔자(Hib) : 생후 2개월~5세 미만 모든 소아를 대상으로 접종, 5세 이상은 b형 헤모필루스 인플루엔자균 감염 위험성이 높은 경우 (겸상적혈구증, 비장 절제술 후, 항암치료에 따른 면역저하, 백혈병, HIV 감염, 체액면역 결핍 등) 접종, DTaP-IPV/Hib혼합백신으로 접종가능
- 7) 폐렴구균(단백결합) : 10가와 13가 단백결합 백신 간의 교차접종은 권장하지 않음.
- 8) 폐렴구균(다당질) : 2세 이상의 폐렴구균 감염의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하며 건강상태를 고려하여 담당의사와 충분한 상담 후 접종
※ 폐렴구균 감염의 고위험군
 - 면역 기능이 저하된 소아 : HIV 감염증, 만성 신부전과 신장후군, 면역억제제나 방사선 치료를 하는 질환(악성종양, 백혈병, 림프종, 호치킨병) 혹은 고형 장기 이식, 선천성 면역결핍질환
 - 기능적 또는 해부학적 무비증 소아 : 겸상구 빈혈 혹은 헤모글로빈증, 무비증 혹은 비장 기능장애
 - 면역 기능은 정상이나 다음과 같은 질환을 가진 소아 : 만성 심장 질환, 만성 폐 질환, 당뇨병, 뇌척수액 누출, 인공와우 이식상태
- 9) 홍역 : 유행 시 생후 6~11개월에 MMR 백신 접종이 가능하나 이 경우 생후 12개월 이후에 MMR백신 재접종 필요
- 10) A형간염 : 생후 12개월 이후에 1차 접종하고 6~18개월 후 추가접종(제조사마다 접종시기가 다름.)
- 11) 일본뇌염(불활성화백신) : 1차 접종 후 7~30일 간격으로 2차 접종을 실시하고, 2차 접종 후 12개월 후 3차 접종.
- 12) 일본뇌염(약독화백신) : 1차 접종 후 12개월 후 2차 접종
- 13) 사람유두종바이러스 : 만 11~12세에 6개월 간격으로 2회 접종(2가와 4가 백신 간 교차접종은 권장하지 않음.)
- 14) 인플루엔자(불활성화백신) : 접종 첫 해는 4주 간격으로 2회 접종이 필요하며, 접종 첫 해 1회 접종을 받았다면 다음 해 2회 접종을 완료, 이전에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받은적이 있는 6개월~만9세미만 소아들도 유행주에 따라서 2회 접종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매 절기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관리지침을 참고



참고자료 8

손 씻기 6단계

1단계 : 손과 손목을 물로 적시고 비누를 칠한다.



2단계 : 오른손 바닥으로 왼손 등을 닦고, 왼손 바닥으로 오른손등을 씻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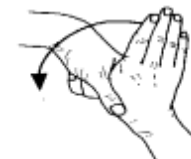
3단계 : 손가락지를 끼고 양손바닥을 마주 대고 문지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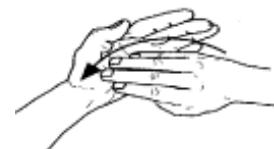
4단계 : 반대편 손가락과 깍지를 끼고 문지른다.



5단계 : 엄지손가락을 다른 편 손바닥으로 돌려주면서 문지른다.



6단계 : 손가락 끝으로 다른 편 손에 앞뒤로 돌려주며 문지른다.



물과 비누를 이용한 손 씻기 방법

- 눈에 보이는 오염이 있을 때 반드시 물로 손을 씻어야 합니다.



전체 소요시간 40~60초

0



손에 물을 묻힌다.

1



손에 모두 비누 만큼 충분한 비누를 묻힌다.

2



손 바닥과 손바닥을 마주하여 문지른다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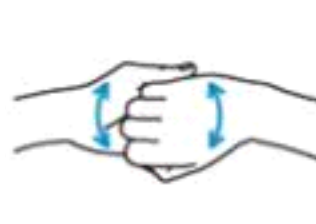
양손을 번갈아 가며 손바닥으로 다른 손의 손등을 문지른다.

4



손바닥을 마주하고 각지를 끼고 문지른다.

5



손바닥을 마주하고 손가락을 쥐어 문지른다.

6



양손을 번갈아 가며 한 손에 엄지손가락을 잡고 회전하면서 문지른다.

7



양손을 번갈아 가며 손가락 끝을 손바닥에 비빈다.

8



흐르는 물에 손을 잘 행군다.

9



종이타월을 사용해 손을 말린다.

10



사용한 종이타월을 이용해 수도꼭지를 잠근다.

11



깨끗한 손!



손 소독제를 이용한 손 씻기 방법

- 눈에 보이는 오염이 있을 땐 물로 손을 씻어야 합니다.



전체 소요시간 20 ~ 30초

Duration of the entire procedure : 20 ~ 30

sec

1a



손바닥 표면을 모두 비를 만큼
소독제를 떨어낸다.

1b



2



손 바닥과 손바닥을
마찰하면서 문지른다.

3



손 바닥과 손바닥을
마찰하면서 문지른다.

4



손바닥을 마주하고
각지를 끼고 문지른다.

5



손바닥을 마주하고
손가락을 쥐어 문지른다.

6



양손을 번갈아 가며 한 손에
엄지손가락을
잡고 회전하면서 문지른다.

7



양손을 번갈아 가며 손가락 끝을
손바닥에 비빈다.

8



건조 후,
깨끗한 손!

참고자료 9





참고자료 10

등교중지 및 출석인정 근거법령

학교보건법 제8조(등교 중지)

학교의 장은 제7조에 따른 건강검사의 결과나 의사의 진단 결과 감염병에 감염되었거나 감염된 것으로 의심되거나 감염될 우려가 있는 학생 및 교직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교를 중지시킬 수 있다. <개정 2009.12.29.>

[전문개정 2007.12.14.]

학교보건법 시행령 제22조(등교 등의 중지)

- ① 학교의 장은 법 제8조에 따라 학생과 교직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등교중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0.12.29., 2016.8.29.>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환자 및 병원체 보유자(이하 "감염병환자등"이라 한다). 다만, 의사가 다른 사람에게 감염될 우려가 없다고 진단한 사람은 제외한다.
 2. 제1호 외의 환자로서 의사가 감염성이 강한 질환에 감염되었다고 진단한 사람
- ② 학교의 장이 제1항에 따라 등교중지를 명할 때에는 그 사유와 기간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다만, 질환증세 또는 질병유행의 양상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다.

초·중등교육법 제64조(휴업명령 및 휴교처분)

- ① 관할청은 재해 등의 긴급한 사유로 정상수업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학교의 장에게 휴업을 명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학교의 장은 지체 없이 휴업을 하여야 한다.
- ③ 관할청은 학교의 장이 제1항에 따른 명령에도 불구하고 휴업을 하지 아니하거나 특별히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휴교처분을 할 수 있다.
- ④ 제2항에 따라 휴업한 학교는 휴업기간 중 수업과 학생의 등교가 정지되며, 제3항에 따라 휴교한 학교는 휴교기간 중 단순한 관리 업무 외에는 학교의 모든 기능이 정지된다.

[전문개정 2012.3.21.]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7조(휴업일 등)

- ① 법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의 휴업일은 학교의 장이 매 학년도가 시작되기 전에 법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되, 관공서의 공휴일 및 여름·겨울휴가가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1.3.2.>
- ② 학교의 장은 비상재해 기타 급박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임시휴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지체 없이 관할청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교육부훈령 제195호, 2016.12.27, 일부개정]

[별지 제8호] 출결상황 관리

지진, 폭우, 폭설, 폭풍, 해일 등의 천재지변 또는 법정 감염병 등(학교 내 확산 방지를 위해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법정 감염병을 포함)으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에는 출석으로 처리한다.

참고자료 11

(앞면)

등교 중지 안내서

학년 반 번 이름 : _____

안녕하세요?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길 기원합니다.

위 학생은 감염병(예시 : 수두)에 감염되었거나 의심되어 다른 학생의 감염을 예방하기 위하여 등교중지를 권고 하오니, 뒷면 진료확인서에서 의사가 적시한 기간 동안 등교중지 시키고 아래의 가정에서 지켜야 할 사항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등교 중지 기간 동안 가정에서 지켜야 할 사항

1. 완치될 때까지 가정 또는 병원에서 격리치료를 받습니다.
2. 학교 밖 교육시설(학원, 교습소, 개인과외 등) 이용과정에서 타 학생 감염이 초래되지 않도록 가정 내 생활지도를 철저히 하여야 합니다.
3. 가족 간에도 감염 우려가 있으므로 가정 내에서도 위생관리를 철저히 합니다.
4. 완쾌 후 등교할 때는 선생님께 진료 확인서, 의사소견서, 진단서, 처방전 중 1부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등교 중지 기간까지 완치되지 않은 경우 전염력이 없다는 의사의 진단일까지 기간을 연장합니다.

※ 등교 중지 기간은 결석으로 처리되지 않습니다.

〈관계법령〉

- ◆ 「학교보건법」 제8조, 동법 시행령 제22조
- ◆ 「초·중등교육법」 제64조, 동법 시행령 제47조
- ◆ 교육과학기술부훈령 제205호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 지침」 제8조 제2항
-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20 . . .

○ ○ 학 교 장



(뒷면)

진료 확인서(예)

안녕하십니까? 항상 본교 학생들의 질병관리에 힘써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본교에서는 「학교보건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에 의거 법정감염병 또는 감염성이 강하여 학교 내 단체 생활에 피해가 우려되는 질병에 대하여 병원의 소견서를 근거로 등교 중지를 통해 가정에서 요양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등교 중지 대상자 선별을 위해서 의사선생님의 진단과 소견을 참고하고자 하오니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어 적어 보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학년 반 번 이름 : _____

1. 진단(의심) 질환명 :

2. 발 병 일 :

3. 소견내용 :

위 환자는 상기질환으로 약 월 일부터 월 일까지의 (통원, 입원)치료를 요하나, 증상의 호전정도에 따라 그 기간의 증감이 필요하고, 추후 위 질환과 관련된 합병증의 관찰과 지속적인 주의를 요합니다.

※ 참고자료 : 학교 빈발 감염병별 권장 등교 중지 기간

학교 빈발 감염병	권장 등교 중지 기간
급성 출혈성 결막염	격리없이 개인위생수칙을 지킬 것을 권장함
수두	모든 수포에 가피가 형성될 때 까지
수족구병	수포 발생 후 6일간 또는 가피가 형성될 때 까지
유행성각결막염	격리없이 개인위생수칙을 지킬 것을 권장함
유행성이하선염	증상 발현 후 5일까지
인플루엔자	증상 발현 후 5일 경과하고 해열제 없이 체온회복 후 48시간 까지
노로바이러스	구토, 설사 등 증상이 없어진 후 2일까지

발 행 일 : 20 . . .

의 사 명 : (인)

(※고무인 유효함)

○ ○ 학 교 장 귀하

참고자료 12

학교에서의 결핵환자 발견과 관리

1. 목적

학교 내 결핵환자를 신속히 발견·신고하여 결핵 환자관리 및 예방·확산 차단 등 관리가 지체 없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관련근거: 결핵예방법,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학교보건법

2. 환자의 발견

- 가. 학생 및 교직원의 결핵 유증상자 검진 안내 ☞ 2주 이상 기침증상이 있는 경우 의료기관, 보건소 방문하도록 안내
- 나. 학생 건강검진, 별도검사를 통한 환자 발견
- 다. 교직원 결핵검진을 통한 환자 발견

3. 환자발견의 검사법

결핵환자 발견을 위해 흉부 X선 검사와 객담 검사(도말 및 배양)를 기본으로 실시하며, 객담 배양검사에서 양성인 모든 검체는 약제감수성검사를 실시하고, 결핵균 DNA 지문검사를 실시

- 가. 흉부 X선 검사: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결핵을 진단하기 위한 첫 번째 검사
- 나. 객담검사

- 흉부 X선 검사 상 결핵 유소견자
- 흉부 X선 검사가 정상이라도 결핵 의심 증상이 있는 경우 객담검사 시행
 - ※ 결핵 유소견자는 객담검사(도말 및 배양), 결핵균핵산증폭검사(TB-PCR)를 실시
 - ※ 검사 기간: 보건소에서 시행할 경우, 도말(1일 이내), PCR(3일 이내), 배양(2주~8주) 소요

4. 학교 내 결핵환자 관리

가. 등교 및 출근의 제한

- 학생 및 교직원 중 '전염성 결핵 환자'가 발생하면 전염성이 상실될 때까지 등교 및 출근 제한
 - ※ 전염성 결핵 : 객담 도말 및 배양, 핵산증폭검사(PCR)에서 양성인 결핵
- 비전염성 결핵으로 진단된 경우 등교 및 출근 제한은 필요 없음

나. 등교 및 출근 제한의 해제

- 도말 양성 환자: 최소 2주 이상 항결핵제 투약 후 주치의가 발급한 소견서 확인 후 해제
- 도말 음성, 배양 양성(2~8주후 결과)인 환자
 - 항결핵제가 2주 이상 투여한 자: 추가로 출근 또는 등교를 제한할 필요 없음
 - 항결핵제가 투여하지 않은 자: 최소 2주 이상 항결핵제 투약 후 소견서 확인 후 해제
- 도말 음성, 배양 검사중인 결핵치료 시작 환자: 등교 및 출근의 제한과 해제 모두 담당 주치의 소견서 참고하여 기관장이 결정



5. 집단시설 결핵역학조사

가. 목적: 집단시설 내 결핵환자 발생 시 결핵환자와 접촉자에 대한 역학조사를 신속히 실시하여, 추가 결핵환자 및 잠복결핵감염자 발견·치료

나. 결핵역학조사 방법 및 절차



다. 접촉자조사 실시 기준

- 지표환자의 객담을 포함한 호흡기검체 검사** 결과 양성으로 확인된 경우
 - ** 호흡기검체 검사: 항산균 객담 도말 및 배양 검사, 결핵균 핵산증폭검사(PCR)
- 지표환자의 객담을 포함한 호흡기검체 검사 결과 음성이나, 흉부 X선 상 공동이 확인된 경우
- 집단 내에서 6개월 이내에 활동성 결핵환자가 2명 이상 발생한 경우

라. 현장조사

- 결핵전문역학조사반과 보건소 조사반이 현장 방문 또는 유선조사 실시

마. 역학조사 범위

발생구분	접촉자조사 대상	검사
학생 또는 학급수업에 들어가는 교직원 1명의 호흡기검체 검사 결과가 양성인 경우	해당 학급(반)생 (교직원 포함)	결핵, 잠복결핵감염 검사
교직원 또는 학생에 관계없이 한 학교에서 6개월 이내 활동성 결핵환자 2명이상	해당 학교 전원 (교직원 포함)	결핵검사 : 대상자 전체 잠복결핵감염 검사 : 밀접접촉자

- **밀접접촉자**: 가족접촉자가 아닌 사람 중 지표환자와 같은 밀폐된 실내공간¹⁹⁾을 사용하며 장시간²⁰⁾ 동안 직접 접촉한 적이 있는 접촉자
 - ※ 현장조사 등의 결과에 따라 기준시간 이하의 접촉자도 밀접접촉자에 포함 가능
- **일상접촉자**: 접촉자 중 가족접촉자 또는 밀접접촉자가 아닌 접촉자

바. 접촉자 검사 방법

- 1) 접촉자 설문조사: 설문지를 배포하여, 검사전 설문결과 확인
- 2) **결핵검사**: 흉부 X선 (필요시 추가 흉부 CT 검사 가능)
- 3) **잠복결핵감염검사**
 - 초등학교: 학생 TST²¹⁾ 검사법, 교직원 IGRA²²⁾ 또는 TST/IGRA병합 검사법
 - 중·고등학교: 학생 및 교직원 IGRA 또는 TST/IGRA병합 검사법
- 4) **추구검사**
 - 접촉자 조사 대상자: 3개월 후 추구 흉부 X선 검사 가능
 - 잠복결핵감염 치료자: 치료 시작 및 종료 시점에 추구 흉부 X선 검사 시행
 - 잠복결핵감염 미실시자 또는 중단한자: 1년간 3개월 간격으로 추구 흉부 X선 검사 시행

사. 설명회

- 역학조사 실시 배경 및 조사안내문 배포로 대체 가능, 학교의 요청 시 설명회 실시 가능

(참고자료) 2013 학교 결핵 관리 지침 및 2020 국가 결핵관리지침

19) 밀폐된 실내공간의 경우 방, 교실 등 좁은 공간에서 주로 전염이 발생하며, 대형 강의실, 복도 등 넓은 공간에서는 실제적 전염의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음

20) 장시간 기준: 하루에 연속으로 8시간이상 접촉한 경우, 누적시간 40시간 이상 접촉한 경우

21) **TST**(투베르쿨린 피부반응검사, tuberculin skin test): 결핵균에 감염된 상태를 알아보기 위한 검사로, 결핵균 항원을 팔에 **피내 주사** 후 48-72시간 사이에 형성되는 지연과민반응을 관찰하여 판독

22) **IGRA**(인터페론감마 분비검사, interferon-gamma releasing assay): **혈액을 채취**하여 결핵균 특이항원으로 자극하여 인터페론감마 분비능을 측정하는 결핵감염 검사 방법



참고자료 13

교직원 결핵(의심)환자 명단

(20 년도)

○○학교 보건실

연번	학년반	성 명 (성별)	발생 인지일	환자 현황	역학조사 및 치료내용 (등교 중지 기간)	완치일	연락처 (전화)	비 고
	2-1반 담임 교사	유○○ (남)	2020. 00.00.	확진	현재 등교중지하여 2주간 치료약 복용중. (00.00.~00.00.) 접촉자조사(X-선) 결과 추가 환자 없음.			

참고자료 14

감염병 NEIS 사용법 (매뉴얼 162~168쪽 참고)

1. 감염병 환자 등록 [보건-감염병 환자관리-감염병 환자등록-등록]

2. 감염병 환자 보고 [보건-감염병 환자관리-감염병 환자등록-교육정보고서생성]

- 학교 조치사항, 향후 조치계획 등 입력 후 저장

3. 보고서 제출 [보건-감염병 환자관리-감염병보고제출]

4. 감염병 환자 일괄 등록 [보건-감염병 환자관리-감염병 환자 일괄등록]

- 입력항목을 선택한 후 입력값을 선택하거나 입력하고 일괄적용 선택 후 저장

5. 감염병 수정 보고 [보건-감염병 환자관리-감염병 환자조회]

- 수정보고 적용: 보고오류(삭제), 의심에서 확진환자, 확진에서 완치 되었을 때
- 수정 후 다시 [보건-감염병 환자관리-감염병 보고제출]에서 제출

참고자료 15

학교 내 응급의료 관리체계

1. 목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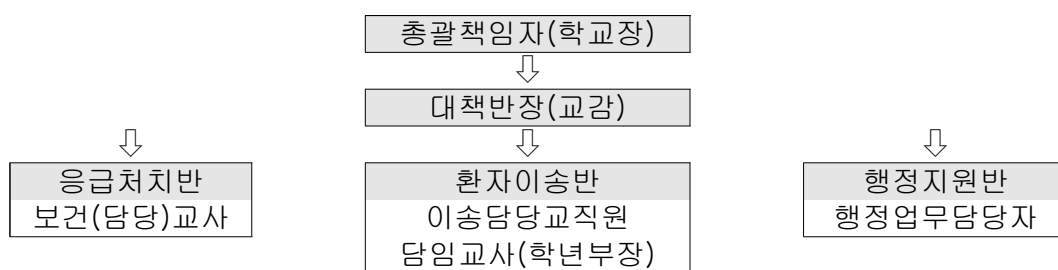
응급환자 발생 시 학교 실정에 맞게 총괄책임자, 이송책임자 등 교직원의 역할을 분담하고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함

2. 학교 응급환자 관리 기본계획 수립

각 학교의 장은 당해 연도 학교보건연간계획에 학교 내·외의 교육활동과 관련한 학생 및 교직원의 사고에 대한 손상을 최소화하기 위한 행·재정적인 응급체계 관리 방침 수립

3. 응급환자 관리 대책반 구성

- 가. 총괄책임자, 이송책임자 등 학교실정에 맞게 교직원의 역할 분담(업무 구체적으로 명시)
나. 분야별 역할은 다음 내용을 참고하여 학교의 인력구성 현황 및 여건에 맞게 수립·운영



- 다. 응급환자 이송 시, 보건교사가 동행하는 경우에는 보건실 관리를 위한 업무대행자가 보건실을 관리하도록 함. 보건실 업무대행자는 보건실의 구조와 물품의 사용 및 기록 등 보건실 관리 전반에 대해 필요한 사항을 사전에 숙지

- 라. 환자 이송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하여 다친 학생이 방치되지 않도록 조치

< 표 1 > 응급상황 시 업무분담 (상세내용은 매뉴얼 18~22쪽)

구분		원자상태가 위급하거나 중한 외상이 있는 경우	원자상태가 위급하지는 않으나 병원으로 이송해야 하는 경우
상황		의식장애 · 호흡곤란 · 약한맥박 · 심정지 · 다량출혈 · 개방골절 · 응급수술을 요하는 경우 등	단순외상 · 단순골절 · 고열 등으로 의료기관에서의 조치를 필요로 하는 경우
절차 및 업무	교장	• 상황총괄 • 원인분석 및 재발방지 조치	
	교감	• 상황파악 및 지시 · 보고 등 • 위기상황 처리에 필요한 조치 • 대체 인력 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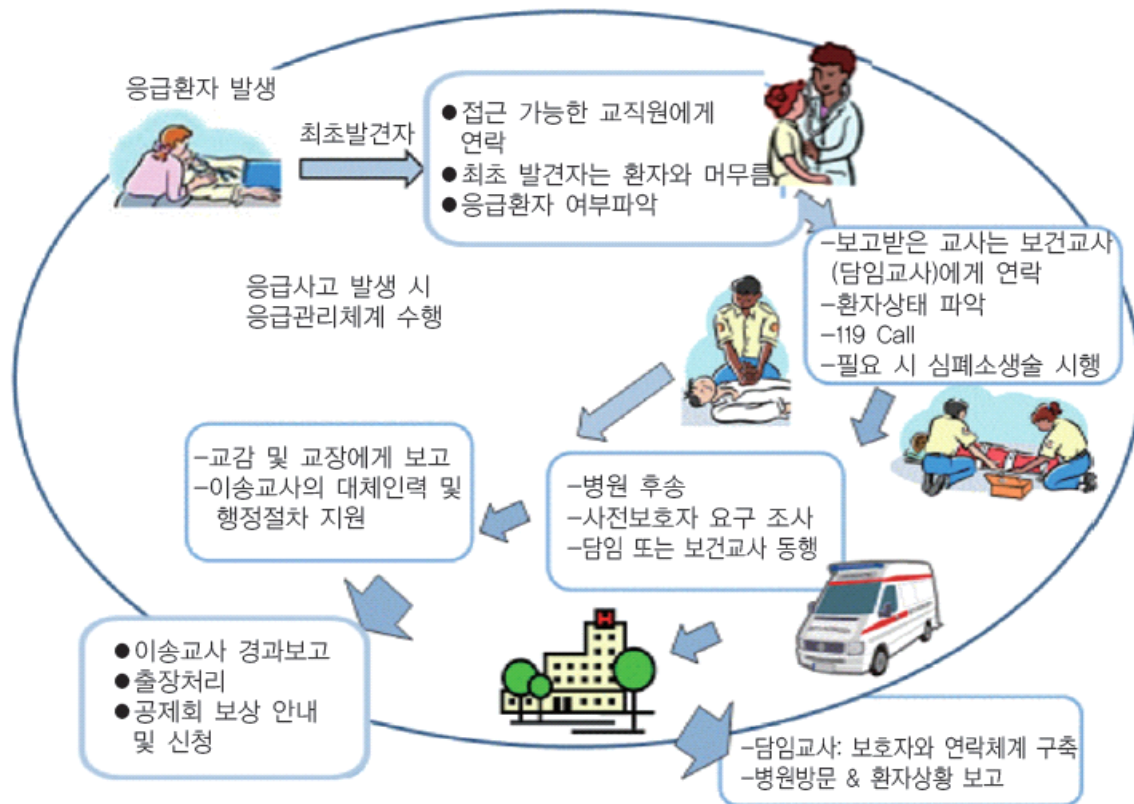
본 담	보건 (담당) 교사	• 응급처치 • 담임교사에게 통보 • 병원 이송 시 동행 • 관리자에게 처치 현황 보고	• 응급처치 • 담임교사에게 통보 • 학생 처치 결과 학부모 상담 • 관리자에게 처치 현황 보고
	담임교사	• 학부모 연락 • 관리자에게 사고경위 보고 • 환자 병원 이송 • 치료 후 보상 안내	• 학부모 연락: 학생 병원이송 안내 및 조치 • 필요시 병원 이송 • 관리자에게 사고 경위 보고 • 치료 후 보상 안내
	(학년) 부장	• 질서 및 생활지도 • 학년 수업 결손 방지 지원	
	이송담당	• 안전하게 병원 이송 • 응급처치자는 차량운전하지 않도록 함	
	행정담당	• 추후 보상 및 제반 서류의 작성 등에 대해 협조 • 병원 이송교사 등의 출장처리와 비용 청구 등에 관한 사항 처리	
기타		• 응급사고 기록지 작성 : 날짜, 시간, 장소, 사고현황, 환자상태, 응급처치내용 등을 6하 원칙에 의거하여 구체적으로 기록	

4. 응급사고 발생시 대처요령(CHECK, CALL, CARE)

CHECK	1. 응급상황 여부 확인하기 ☞ 일차적인 환자의 응급상태 파악 ※ 평소에 상황별 응급처치 방법(매뉴얼 71~147쪽)을 숙지하고, 사안 발생 시 응급 의 료체계에 따라 신속히 처리할 것 ☞ 최초발견자는 즉시 보건교사에게 연락하고, 보건교사가 배치되지 않은 학교에서는 보 건업무 담당교사에게 연락 ☞ 응급인 경우 119 도움 요청하고 동시에 보건(담당)교사에게 연락 2. 환자상태 파악하기 ☞ 보건교사는 활력징후 측정하고, 응급처치 및 이송준비 ☞ 보건교사가 배치되지 않은 학교의 경우, 업무 담당자가 환자상태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119에 도움요청
CALL	3. 응급구조 요청하기 ☞ 환자의 상태가 위급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119 도움요청 TIP 119 도움요청 (신고 시 요령) ① 위치 ② 응급상황 내용 (심장발작, 사고 등) ③ 도움이 필요한 환자 수 ④ 환자의 상태 ⑤ 환자에게 처치한 응급처치 내용 (심폐소생술 등) ⑥ 다른 질문이 없는지 확인 (“끝어도 되 겠습니까?”) • 응급의료원이 더 이상의 지시사항이 없음을 확인할 때까지는 통화를 유지함. 통화를 마친 후에는 119 도착 전까 지 휴대폰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도록 함 4. 응급원자 관리체계 가동하기 ☞ 응급환자 발견, 보고체계, 환자관리, 담당자 역할관리 및 보호자 연락 등 응급환자 관 리체계 지침을 준수하여 응급처치와 관리를 수행 ☞ 교원이 학교안전사고 피해자를 긴급 이송하다 사고가 발생할 경우는 공무상 재해에 해 당 「공무원연금법」 제34 조,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보상

CARE	5. 안전한 장소로 환자 옮기기
	☞ 가능한 경우 환자를 안전한 장소로 옮기되, 무리한 움직임을 피하고 전문가의 응급처치 요령에 따름(척추손상 등 중증의 부상자는 2차 손상을 예방하기 위해 무리한 이동 삼가)
	6. 응급처치 시행하기
	☞ 비 의료인은 구급차가 현장에 도착하기까지 응급처치가 필요한 경우 119에 연락하여 도움을 요청하고, 전화상담원의 지시에 따름
	☞ 119 구조대가 오기 전에 생명에 위험이 초래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심폐소생술 가능자가 응급처치 실시
	7. 병원으로 환자 이송하기
	☞ 학교에서 가까운 응급의료센터 및 증상에 따라 학교 협약 병원 또는 사전에 파악된 보호자가 원하는 병원으로 환자를 안전하게 이송
	☞ 학교 자체 처치: 간단한 상해는 보건실 방문·귀가조치, 장시간 안정을 요하는 경우 보호자에게 연락 후 귀가 조치
	8. 기록 및 추후 결과 확인하기
	☞ 전문가 인계 및 병원 이송까지의 과정을 ‘응급환자 기록지’에 기록·보관

5. 응급환자 발생시 환자 이송체계



6. 응급환자 이송 및 진료기록지는 『학교에서의 응급의료 관리체계』 매뉴얼 57쪽을 참고하여 사용

※ 매뉴얼 : 경상남도교육청 홈페이지 체육예술건강과 자료실 탑재



참고자료 16

학교 구강보건실 설치 현황

(2019.12월 기준)

지역	초등학교	특수학교	구강보건실 설치 학교
창원	5	2	내동초, 북면초, 대산초, 진전초, 대야초, 창원천광학교, 경남혜림학교
진주		1	진주혜광학교
통영	1		충렬초
사천	1		동성초
김해	2	1	대동초, 생림초, 김해은혜 학교
밀양	3		밀주초, 수산초, 예림초
거제	2	1	연초초, 옥포초, 거제애광학교
의령	2	1	남산초, 부림초, 경남은광학교
함안	5		아라초, 칠원초, 군북초, 칠서초, 가야초
고성	3		고성초, 회화초, 하일초
남해	2		해양초, 이동초
하동	4		하동초, 악양초, 진교초, 옥종초
산청	3		산청초, 단성초, 덕산초
함양	2		함양초, 안의초
거창	1		거창초
합천	2		합천초, 남정초
계	38	6	

※ 창원 : 명서초 작성제외(양치교실) / 양산 : 소토초 작성제외(양치교실)

참고자료 17

보건교사 미배치교 보 건 실 방 문 기 록 지 (안)						결 재	담당자	부장
보건행사						특이사항		
응 급 처 치	일자	학년/반	성명	성별	병명	처 치		



2020학년도 학생 건강검사 실시요령

2020학년도 학생 건강검사 실시요령

경상남도교육청

I 개 요

□ 목 적

- 학생에 대한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통한 질병의 조기발견·치료 및 예방에 필요한 조치
- 질병 또는 건강문제가 발견된 학생에 대한 건강 상담·치료 및 보호 등의 적절한 대책 강구로 자기건강관리 능력 배양 및 건강한 학교생활 유지

□ 근 거

- 「학교보건법」 제7조(건강검사 등), 제7조의2, 제7조의3
- 「학교건강검사규칙」
- 「건강검진기본법」 제14조(검진기관의 지정)
- 학교 건강검진 결과판정 및 기재방법 등에 관한 기준

II 학생 건강검사 실시

1. 건강검사 실시계획 수립

- 학교의 장은 건강검사를 원활하게 실시하기 위하여 건강검사에 필요한 소요 예산을 포함한 구체적인 건강검사 실시계획을 매년 3월 31일까지 수립
(학교건강검사규칙 제2조)
- 학교의 장은 학생건강검사(신체의 발달상황, 건강조사, 건강검진) 결과를 평가하여, 이를 바탕으로 학생건강증진계획을 수립 시행(학교보건법 제7조의2)
- 「학교보건법」 제7조 및 「학교건강검사규칙」에 따라 건강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관리·지원



2. 세부 실시내용

학 생 건 강 검 사	신체의 발달상황	키, 몸무게, 비만도(BMI)
	건강조사	예방접종/병력, 식생활 및 건강생활 등에 대해 구조화된 문진표를 통해 조사
	건강검진	척추, 눈·귀, 콧병·목병·피부병, 구강, 병리검사, 허리둘레 등 검진기관에서 실시
별도검사		소변검사, 결핵검사, 시력검사

○ 신체의 발달상황

- 검사시기 : 1학기말까지 완료
- 검사대상 : 초·중·고등학교(특수학교·각종학교 포함) 학생
- 검사종목 : 키(cm), 몸무게(kg), 비만도(BMI)
- 검사항목(방법) : 「학교건강검사규칙」 제4조제2항
- 검사자 : 교직원(단, 건강검진을 실시하는 학생에 대한 신체의 발달상황은 검진기관에서 실시)
- 결과처리 : 「학교건강검사규칙」 별지 제1호서식의 학생건강기록부로 작성

○ 건강조사

- 조사시기 : 4월 중(1학기말까지 완료)
- 조사대상 : 초·중·고등학교(특수학교·각종학교 포함) 학생(전 학년-건강검진 대상학생 포함)
- 조사항목 및 방법 : 「학교건강검사규칙」 제4조제2항
- 조사자 : 교직원
- 조사방법 : 설문조사(전교생)
- 유의사항 : 설문지를 학교자체에서 인쇄하여 전교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되, 설문내용 중 학부모의 도움이나 확인이 필요한 사항이 있으므로 가정에서 작성하여 제출토록 지도
- 조사결과 처리 : 상반기 중 설문결과 통계작성 및 결과 분석 후 학교 보건관리
에 반영

○ 건강검진

- 검진시기 : 연중(가급적 1학기에 완료하여 학생건강관리 철저)
- 검진대상
 - 초등학교 1·4학년(단, 구강검진은 초등학교 전체 학년에 대하여 실시)
 - 중·고등학교 1학년
 - 특수학교·각종학교의 초 1·4학년 및 중·고등학교 1학년
- 검진항목 및 방법 : 「학교건강검사규칙」 제5조제2항
- 검진방법 : 검사대상자인 학생들이 검진기관을 방문하여 검진 실시
 - ※ 단, 지역 내 검진기관이 없는 학교, 특수학교 등에서는 1개의 검진기관에 의한 출장검진 가능(「학교건강검사규칙」 제5조의2(건강검진의 절차 등) 제4항)

※ 별도 승인 신청 없이 1개 검진기관 선정하여 출장검진 가능한 경우(「학교건강검사규칙」 일부개정, 교육부령 제198호 2020.1.9.)

- 학교가 소재한 지역(읍·면·동)에 검진기관이 없는 경우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른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의 학생을 대상으로 검진을 실시하는 경우
-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출장검진이 불가피하다고 교육감(교육장)이 승인한 경우

○ 구강검진

- 초등학교 1·4학년 및 중·고 1학년 : 학교에서 지정한 검진기관에서 실시
- 초등학교 2·3·5·6학년(특수학교 해당학년 포함) : 치과 병·의원 내원검진 또는 출장검진 등 그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학교 실정에 따라 학교장이 결정
- 구강검진 비용 :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제7항 규정에 의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금액
- 구강검진을 검진기관에서 할 경우 : 지정된 검진기관에 상근 치과의사가 있는 경우 해당 검진기관에서 실시, 검진기관에 상근 치과의사가 없어 별도로 구강검진기관을 선정할 경우 검진기관과 별도로 구강검진기관과 계약



※ 초등학생 구강검진 관련 참고사항(법률자문가 유권해석 결과)

- ◇ 「학교보건법」 제7조제2항제1호 단서규정에 따르면(2007.12.14 개정) 초등학생 구강검진의 방법(출장검진과 내원검진 등 방법결정 및 검진비용 등)은 교육감에게 위임된 사항임
 - ▶ 따라서 「학교건강검사규칙」에서 정한 건강검사 세부방법은 구강검진을 제외한 일반검진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구강검진은 법률에서 정한대로 교육감이 지역실정에 맞게 정하여 시행할 수 있음
- ◇ 검진기관으로 승인 받지 않은 보건(진료)소에서의 구강진료를 건강검진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 검진기관으로 승인 받지 않은 보건(진료)소에서의 구강진료는 검진이 아니며 이 경우에는 학교건강검사에서 '구강검진'은 미 실시로 처리하고, 이에 대한 충분하고 객관적인 검토(근거)자료 첨부
 - 「학교보건법」 제7조제4에서는 '천재지변 등의 부득이한 사유(이용 가능한 검진기관 부재 등)로 검진이 어려운 경우에는 관할 교육감 또는 교육장의 승인을 받아 건강검사를 연기하거나 건강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 지역 내에 검진기관의 부재 및 인근지역 이동 등이 사실상 어려운 경우 지역내 보건(진료)소의 구강관리실 등에서 학생 구강진료를 받아 그 결과를 토대로 학생들의 구강보건 관리를 할 수 있음

3. 검진기관 선정 및 방법

○ 검진기관 선정

- 대상기관 :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검진기관
- 검진기관과 계약 시 「건강검진기본법」에 따른 “건강검진기관” 여부 확인
- 검진기관수 2개 이상의 검진기관 선정
- 검진기관 의료 인력·시설 및 장비기준 준수 확인

- **검진기관 선정방법** : 검진기관을 선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초·중등교육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받을 수 있으며, 학교장 책임 하에 공정하고 투명하게 선정

【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기관 안내 】

- ① 국민건강보험공단(<http://www.nhis.or.kr>) → 메인화면 “건강iN-병원 및 검진기관 찾기” → 검진기관 찾기
- ② 건강IN(<http://hi.nhis.or.kr>) → 메인화면 “검진기관 찾기”

- 학교장은 『건강검진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2개 이상의 검진기관을 선정, 다만 검진기관을 2개 이상 선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교육장의 승인을 얻어 1개의 검진기관만 선정할 수 있음

☞ 「경상남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각급 학교는 해당 교육지원청교육장이 승인(「학교건강검사규칙」 일부개정, 교육부령 제198호 2020.1.9.)

- **검진비용** : 전액 학교회계부담(학교운영비에 포함), 건강검진에 소요되는 비용의 범위는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금액을 적용
- **건강검진 절차** : 건강검진 대상자는 학부모 또는 이에 상응하는 보호자 등과 함께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지참하고 지정 검진기관에 내원하여 검진
- **건강검진 실시방법** : 검진기관은 당일 채취한 검체를 당일 중으로 분석 완료하여야 하며, 특히 출장검진 시에는 검체의 보관 및 수송, 검사 등에 철저히 기하여야 하고 검체 채취 후 2시간 이내에 수송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현지에서 혈청을 분리하여 혈청만을 냉장 수송

4. 검진결과 통보

- 검진기관이 검사결과를 통보하는 때에는 「학교건강검사규칙」 별지 제1호의5서식에 의한 학생건강검사 결과 통보서와 별지 제1호의6서식에 의한 학생구강검진 결과 통보서를 각각 작성하여 통보
- 검진기관은 검진완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검진결과 통보서 2부를 작성하여 1부는 학생 또는 학부모에게, 나머지 1부는 학교장에게 각각 통보



- 검진기관은 결과통보서를 수검자별로 각각 밀봉하여 우편 등으로 통보하여야 하며, 건강검진 결과 통보서가 제3자에게 누출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
- 검진기관은 수검자에게 검사결과와 상이한 내역으로 검진결과가 통보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검진결과 내역을 정정한 건강검진 결과통보서를 수검자와 소속 학교장에게 재송부
- 검진기관은 건강검진 기록지 및 학생건강검사(구강검진) 결과 통보서에 검진 담당의사가 서명 또는 날인 후 문진표를 첨부하여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검진 전산(자동화)시스템을 사용하는 기관은 전자서명법에 의한 전자서명이 기재된 전자문서로 작성·보관
- 검진기관은 검진결과를 통보기일에 관계없이 가능한 조속히 통보하여 이중수검을 방지하고, 건강주의자나 유질환자의 경우 치료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지체없이 통지[특히, 건강검진 결과 긴급히 정밀검사 등을 요하는 학생에 대하여는 본인 또는 학부모(보호자)와 학교장에게 지체 없이 결과를 통보]
- 학교장은 학생건강검사(구강검진) 결과 통보서를 확인한 결과 건강 이상 및 요정밀검사 등 사후관리가 필요한 학생은 가정통신문 등을 통하여 정밀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고, 검진여부, 검사결과를 확인하는 등 이상자에 대하여는 요보호학생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추구관리하여야 하며, 해당 학생들이 소외감과 좌절감을 갖지 않도록 상담활동 등 특별지도 대책을 강구
- 학교장은 검진기관으로부터 받은 학생건강검사(구강검진) 결과 통보서는 학생 건강기록부 작성 및 건강관리 자료로 이용하고, 학생건강검사(구강검진) 결과 통보서 보관·관리 및 활용 만전[고 1학년 건강검진(구강검진) 및 2·3학년 별도검사 결과에 대하여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 건강기록부 교부]

5. 건강검진 비용 청구 및 지급

○ 청구

- 건강검사와 관련한 검사항목별 건강검진 비용에 의해 청구
- 검진기관이 검진비용 청구서를 작성할 때에는 당해 검진기관의 종사자가 검진결과를 토대로 작성하고 그 청구내용 및 금액은 대표자가 확인한 후 서명 또는 날인

○ 건강검진 비용 청구 요령

- 자체 구강검사 실시 검진기관의 경우 구강검진을 포함한 비용을 청구
- 자체 구강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검진기관은 구강검진비용을 청구할 수 없고, 구강검진 계약당사자가 청구

○ 검진비용 청구서 접수 및 심사

- 학교장은 검진기관의 검진비용 청구가 있을 때 검진비용 청구서상의 각 항목 실시인원과 명단을 확인한 후 접수
- 학교장은 검진비용 심사결과 보완 또는 정산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검진비용 정산기준에 따라 조치하고 당해 검진기관이 납득할 수 있도록 항목별 사유별 내역 통보

○ 검진비용 지급

- 학교장은 수검자 개인별 검진비를 산출하고 합산된 금액을 검진비용으로 확정하여, 검진비용 청구서가 접수된 날부터 5일 이내에 지급(토요일, 공휴일 제외)
- 검진비용은 반드시 당해 검진기관의 건강보험 진료비 지급계좌로 송금

6. 학교 및 검진기관 유의사항

○ 학교장 조치사항

- 학교장은 검진기관 선정 기준을 마련하여 시행
- 학생들의 수업결손 최소화, 검사결과 일관성, 검진과정의 지도감독 용이, 안전 사고 예방 등 문제점을 고려하여 최적의 검진기관을 선정



- 검진실시에 따른 사전 준비 및 보건교육 실시
- 검진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심한 운동 참가, 당일 체육시간 운동량은 체육교사와 상의 결정
- 건강검진 결과처리 및 이상자(유증상자)에 대한 사후관리계획 수립 시행
- 건강검진 결과 이상자(유증상자)에 대하여 학부모(보호자)에게 가정통신 등으로 알려 정밀검진 및 조기치료를 받도록 안내
- 건강이상자에 대하여는 “건강이상자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관리하고, 담임교사에게 결과를 알려 수업활동에 참고하도록 하며, 보건교사 등이 연계하여 건강지도 철저
- 건강검진 결과 이상자(유증상자)의 정밀검진시 2차 검진기관은 학생 및 학부모가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검진비는 학부모가 부담 안내
- 2차 검진결과에 대하여도 확인하여 상담이나 건강관리에 대한 지도 등 사후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
- 보건의료기관, 체육단체 및 대학 등 협조를 받아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관리 지원

「학교보건법 시행령」 제23조(학교의사의 직무)

- | | |
|-----------------------|------------------------------|
| - 학교보건계획의 수립에 관한 자문 | - 학교 환경위생의 유지·관리 및 개선에 관한 자문 |
| -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진단과 건강평가 | - 각종 질병의 예방처치 및 보건지도 |
| -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상담 | - 그 밖에 학교보건관리에 관한 지도 |

- 건강검진은 학생이 원하는 건강검진 기관에서 언제든지 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이므로 학교 건강검진 제도 홍보를 통해 검진으로 인한 학생 및 학부모의 불만사항 발생 방지
- 검진기관이 갖추어야 할 서류에 대한 사전 점검[문진표(구강검진 포함), 건강검사결과통보서(구강검진 포함), 검진안내서, 의료 인력의 자격 및 채용관계 증명서류, 검진장비의 검사성적 확인을 위한 증명서류]
- 학생건강검진기관 계약서 간소화를 통한 업무 효율성 제고 <별첨 6>
- 계약체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준수 하되, 검진준비, 검사항목, 검진실시, 검진결과통보, 검진비용 청구 및 지급, 의료사고의 책임한계 및 손해배상 이행 등 검진과 관련된 제반사항에 대하여 쌍방 합의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기간은 가급적 12월 중순까지 계약

- 학생 건강검사 실시와 검진기관 선정 등을 이유로 학교는 어떤 혜택도 받지 않는다는 조건을 계약서에 명시하여 건강검사 부실 방지(예: 기부금, 장학금, 빵 등 현물제공의 특혜 및 교직원 무료건강검진 쿠폰 지급 등)
- 학교장은 검진기관으로부터 건강검사(구강검진) 결과 통보서 외의 통계자료 등 기타자료를 요구하여 민원이 발생하는 사례가 없도록 유의
 - ※ 일부 검진기관에서 학생검진결과를 임의 특정기관에 DB화 의뢰하는 것은 개인정보 보호에 위반되는 것으로 학교의 주의 요망
- 형식적인 검사가 되지 않도록 학생과 의사와의 충분한 진찰 및 상담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
- 건강검진 관련 민원이 발생할 경우 교육지원청 또는 단위학교에서 검진기관 방문 등을 통하여 해당 민원에 대한 설명 및 개선요청을 하고, 필요시 학생 및 학부모 등을 대상으로 검진의 문제점 발견 등을 위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질(質)관리를 추진하는 등 적극적인 조치방안 강구

○ 검진기관 준수 사항

- 검진대상 학생수, 검진일정, 검진팀 구성, 검진항목별 담당의사 등 검진요원 지정 및 검진장소 준비 등
- 검진기관은 문진표, 구강검진 문진표 및 검진 안내서 등을 사전에 학교장에게 통보하되, 검진 당일 개인별 문진표를 제출 받아 검진 실시
- 검진기관은 학교장과 협의, 검진 당일 진찰 및 각종검사 실시 전에 학생에게 주의사항 등 보건교육 실시
- 학생건강검사(구강검진) 결과 통보서 제출 등 검진 관련 제반사항에 대해 사전 학교장과 협의하여 시행
- 검진기관은 제시된 학생건강검진 검사항목을 누락하거나 그 이외에 자비부담의 추가검진을 유도하는 행위 금지
- 검진인력은 「의료법」 및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의 규정을 준수하여 무면허 의료행위 및 무면허자의 업무 금지
- 학교장으로부터 검진인력 및 검진장비 검증 등 확인을 위한 증명서류 요구시 지체 없이 응하여야 함.



- 건강검진결과 시급히 정밀검진을 필요로 하는 학생은 학교장 및 학부모에게 지체 없이 그 결과를 통보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안내
- 학생 개인에 대한 인적사항 및 검진결과와 관련된 사항은 반드시 비밀보장이 될 수 있도록 관리에 철저

학교보건법

제18조의2(비밀누설금지 등) 이 법에 따라 교직원 및 학생에 대한 건강검사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9조(벌칙) ① 제18조의2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III 별도 건강검사

○ 검사 개요

구분	소변검사	시력검사	결핵검사
대상	초등학교 2·3·5·6학년, 중·고등학교 2·3학년	초등학교 2·3·5·6학년, 중·고등학교 2·3학년	고등학교 2·3학년
내용	당, 단백, 잠혈, pH	시력측정	X-선 검사
검사기관	한국학교보건협회	교직원 실시	대한결핵협회
비용	730원	-	3,240원

○ 소변검사

- 목적 : 성장기 아동의 신장질환 및 소아당뇨병 등 소아성인병의 조기발견과 적절한 치료관리를 통하여 성인병으로의 이환 방지 및 건강한 학교생활 도모
- 검사대상 : 초등학교 2·3·5·6학년, 중·고등학교 2·3학년
- 검사항목 : 당, 단백, 잠혈, pH
- 검사방법 : 랍스딕스 검뇨법

- 검사요원이 검사 당일 학생에게 검사용 시약을 전달하면 검사 대상자는 중간뇨를 검사용 시약에 묻힌 후 검사요원에게 제출(보건교사 및 담임교사 협조 필요)
- 검사요원이 즉시 판독하여 유소견자 현황을 작성하여 학교에 제출하면 학교장은 유소견자에 대해 2차 검진토록 조치하고 2차 검진 결과를 덧붙인 보고서식에 의거 작성 제출

- 검사기관 : 한국학교보건협회 울산경남지부
- 검사수수료 : 730원/1인당
- 학교별 검사일정 : 【별첨 2】
- 일정 변경 시 연락처 : 한국학교보건협회 울산경남지부 ☎ 055-386-1178
- 예산 : 학교회계

○ 결핵검사

- 목적 : 학생들의 폐결핵, 심장질환, 척추옆굽음증 등의 질병을 조기발견·조기치료 등 적절한 조치로 건강한 학교생활
- 검사대상 : 고등학교 2·3학년
- 검사항목 : 폐결핵(척추옆굽음증, 심장질환, 그 외 기타 흉부질환)
- 검사방법 : 흉부X-선 Dr(Digital radiography) 촬영
- 검사기관 : 대한결핵협회 울산경남지부
- 검사수수료 : 3,240원/1인당
- 학교별 검사일정 : 【별첨 2】
- 일정 변경시 연락처 : 대한결핵협회 울산경남지부 ☎ 055-246-4225
- 예산 : 학교회계

○ 시력검사

- 목적 : 공인시력표에 의한 검사를 통하여 정확한 시력을 확인하고, 개인의 체계적인 시력관리로 건강한 학교생활
- 검사대상 : 초등학교 2·3·5·6학년, 중·고등학교 2·3학년
- 검사항목 : 시력측정



- 검사방법 : 공인시력표에 의한 검사
- 검사기관 : 교직원이 실시

IV 중학생 결핵 조기발견 사업

- 근거 : 「결핵예방법」 제27조
- 검사대상 : 중학교 2학년(18개 시군 읍·면지역 및 마산·진해 동지역), 중학교 3학년, 검진희망 교직원
- 검사기관 : 대한결핵협회 울산경남지사
- 학교별 검사일정 : 【별첨 2】
- 일정 변경시 연락처 : 대한결핵협회 울산경남지부 ☎ 055-246-4225
- 예산 : 시·군보건소 부담

V 요보호 학생 관리

- 학기초 건강실태조사를 통해 건강문제를 가진 학생을 파악하고 개별 면담과 정기적인 건강상담을 통해 요보호 학생이 학교생활을 안전하게 영위할 수 있도록 돕고, 응급상황 발생 사전예방을 위한 체계적 관리
- 학기초(입학식, 개학식 직후) 가정통신 통한 학생 건강실태 조사
 - 1차 : 담임교사는 면담을 통해 선별된 학급별 건강이상자 명단을 보건실에 제출, 건강실태조사서는 반드시 보호자 날인 또는 사인을 받도록 하고 가정에서 학생의 건강실태에 대하여 제출한 근거자료이므로 담임이 1년간 보관
 - 2차 : 보건교사는 제출된 학급별 건강이상자 상담 후 선별하여 “요보호 학생 명단” 작성·관리
- 전체 학교 활동에 참고할 수 있도록 교직원에게 요보호 학생 명단 배부 및 학생 주의 사항, 유의 관찰방법, 교사 지도조언 등 연수로 건강 이상 학생 보호 철저
 - ※ 주의: 교직원은 요보호 학생 명단이 학생과 외부인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보안관리 철저

【별첨 1】

학생 건강검진 수수료

(금액단위 : 원)

구 분		초등학교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1학년	4학년				남학생		여학생		
			정상	비만	정상	비만					
			정상	비만	정상	비만					
건강검진 상담료 및 행정비용		8,410	8,410	8,410	8,410	8,410	8,410	8,410	8,410		
- 척추											
- 눈(시력측정, 안질환)											
- 귀(청력, 귓병)											
- 콧병											
- 목병											
- 피부병											
* 키, 몸무게, 혈압 측정 포함											
* 비만학생 : 허리둘레											
구강(치아상태, 구강상태)		7,450	7,450	7,450	7,450	7,450	7,450	7,450	7,450		
병 리 검 사 등	소변		730	730	730	730	730	730	730	730	
	혈액		미 실시	미 실시	15,820	미 실시	15,820	미 실시	15,820	980	16,800
	- 비만학생 : 혈당, 총콜레 스테롤, AST, ALT, HDL, 중성지방, LDL(계산값)										
	- 여학생(고1) : 혈색소										
	결핵	직촬14"×14"	미 실시	미 실시	미 실시	7,820	7,820	7,820	7,820	7,820	7,820
		직촬14"×17"	미 실시	미 실시	미 실시	8,130	8,130	8,130	8,130	8,130	8,130
		CR or DR	미 실시	미 실시	미 실시	6,480	6,480	6,480	6,480	6,480	6,480
		Full PACS	미 실시	미 실시	미 실시	7,350	7,350	7,350	7,350	7,350	7,350
금액합계		16,590	16,590	32,410	24,410	40,230	24,410	40,230	25,390	41,210	
					24,720	40,540	24,720	40,540	25,700	41,520	
					23,070	38,890	23,070	38,890	24,050	39,870	
					23,940	39,760	23,940	39,760	24,920	40,740	

※ 참고자료

1. 「건강검진 실시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19-262호, 2019.12.10.) (2020.1.1.기준)
2.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4호, 2020.1.7.)
3. 2020년 검사항목별 검진비용(2020.1.1.기준)



【별첨 2】

학생 소변검사 일정표

지역	일정	초등학교(2,3,5,6학년)	중학교(2,3학년)	고등학교(2,3학년)
창원	3/16(월)	도천, 남산, 제황, 진해중앙, 대야	진해여중, 진해중	진해여고, 진해고
	3/17(화)	웅천, 웅동, 덕산	동진중, 동진여중, 안골포중, 웅동중	웅천고
	3/18(수)	안청, 용원, 안골포, 진해신평	진해용원중	진해용원고
	3/19(목)	동부, 석동, 장북,	석동중, 진해남중	진해중앙고, 세화여고
	3/20(금)	장천, 경화, 자은, 풍호, 냉천	냉천중	
	3/23(월)	안남, 대암, 삼정자, 성주	대방중, 삼정자중	대암고
	3/24(화)	남양, 남정, 남산, 대방, 창원천광(특)	안남중, 남산중	남산고
	3/25(수)	동산, 외동, 웅남	웅남중, 창원남중	창원남고, 창원중앙여고
	3/26(목)	사파, 토월	사파중, 상남중, 토월중	사파고, 토월고
	3/27(금)	상남, 용지, 반송	반송중, 반송여중, 반림중	
	3/30(월)	신월, 용남, 용호	신월중	신월고, 창원중앙고, 용호고
	3/31(화)	내동	경원중	창원기계공고, 경일고, 창원여고, 경일여고
	4/1(수)	유목, 봉림, 한들	봉림중, 봉곡중	봉림고, 경남관광고, 문성고
	4/2(목)	대원, 명서, 상북, 명곡	명곡여중, 명서중, 창원중앙중	창원공고
	4/3(금)	명도, 도계	창원중	창원고, 명곡고, 명지여고
	4/6(월)	창원, 소담, 중동	도계중, 창원여중	성민여고, 경상고, 창원과학고
	4/7(화)	사화, 평산, 신방, 자여	팔룡중, 창덕중, 대산중, 창원동중	대산고
	4/8(수)	신등, 봉강, 대산, 감계, 우암, 일동, 화양, 온천, 하천, 무등, 북면, 승산	창북중, 감계중	
	4/9(목)	진전, 하북, 우산, 진동, 현동, 반동, 구산, (구서), 동백학교(특)	진전중, 삼진중, 구산중, (구남)	삼진고, 태봉고
	4/10(금)	해운, 가포, 신월, 월포, 월영	해운중, 마산서중	가포고
	4/13(월)	무학, 완월	마산제일여중, 마산중, 마산동중	마산제일여고, 마산고
	4/14(화)	성호, 교방, 월성, 교동	성지여중, 마산여중,	성지여고, 마산여고
	4/16(목)	회원, 마산상남, 합포, 산호	의신여중, 합포중, 창신중	경남전자고, 창신고, 경남미용고
	4/17(금)	양덕, 팔룡, 봉덕	양덕중, 양덕여중, 마산중앙중	마산공고, 용마고
	4/20(월)	용마, 가고파	무학여중	무학여고, 합포고, 마산중앙고
	4/21(화)	구암, 합성, 복성, 마산중앙, 경남혜림(특)	구암중, 창원예술학교	구암고, 한일전산여고
	4/22(수)	석전, 내서, 중리, 호계, 양곡	합포여중, 호계중, 양곡중	
	4/23(목)	상일, 삼계, 안민	내서중, 삼계중, 안민중	내서여고, 마산제일고
	4/24(금)	광려, 안계, 감천, 전안	광려중	

지역	일정	초등학교(2,3,5,6학년)	중학교(2,3학년)	고등학교(2,3학년)
김해	4/24(금)	능동	능동중	
	4/27(월)	주석, 월산		장유고, 삼문고
	4/28(화)	김해부곡, 장유, 삼문, 석봉	월산중, 내덕중, 장유중	
	4/29(수)	계동, 대청, 관동	대청중	대청고
	5/11(월)	신안, 덕정	관동중, 율하중	율하고, 수남고
	5/12(화)	수남, 율하, 칠산, 김해은혜(특)	수남중	김해외고
	5/13(수)	금산, 진영대흥, 진영대창, 대진, 진례	진영여중, 한얼중, 진례중	진영제일고, 진영고
	5/14(목)	진영금병, 진영중앙, 한림, 이북, 안명, 주촌	진영중, 한림중	
	5/15(금)	김해내동, 가야, 우암	내동중	김해생명과학고, 임호고, 김해제일고
	5/18(월)	봉명, 봉황, 외동	경운중, 봉명중	경원고
	5/19(화)	구봉, 임호,	임호중, 가야중, 김해서중	가야고
	5/20(수)	김해동광, 합성, 경운	김해중, 김해중앙여중, 김해여중	김해여고, 김해중앙여고
	5/21(목)	화정, 구지, 삼계	구산중	구산고
	5/22(금)	생림, 이작, 신명	생림중, 삼계중	경남기술과학고, 김해건설공고
	5/25(월)	분성, 용산, 금동, 구산	분성중	분성고, 분성여고
	5/26(화)	김해삼성, 어방, 김해대곡	대곡중, 삼정중	김해고
	5/27(수)	김해활천, 신어, 대동, 대감, 대중	활천중, 신어중, 대동중	김해한일여고
	5/28(목)	영운, 삼방, 김해모산	영운중, 모산중	영운고, 삼방고
양산	4/1(수)	천성, 신명, 덕계	웅상중, 웅상여중	웅산고
	4/2(목)	대운, 서창	서창중	서창고
	4/3(금)	평산, 웅상, 백동	개운중	효암고
	5/29(금)	하북, 용연, 상북, 좌삼, 희망학교(특)	보광중, 양주중, 양산중	보광고, 양산고
	6/1(월)	어곡, 소토, 북정	양산여중	경남외고, 양산제일고, 양산여고
	6/2(화)	신기, 삼성, 양주, 양산, 삼랑, 중부, 영천	양산삼성중	
	6/3(수)	성산, 동산	양산중앙중	양산남부고, 범어고
	6/4(목)	범어, 신양, 서남, 오봉, 석산, 금오, 황산		
	6/5(금)	증산, 가남, 물금, 가양	물금동아중	
	6/8(월)	화제, 원동, 이천, 신주	신주중, 원동중, 범어중	물금고
거제	3/12(수)	하청, 장평, 양지	하청중	연초고, 거제공고, 경남산업고
	6/9(화)	오량, 사동, 외간, 송덕, 거제, 동부, (울포), 명사	둔덕중, 거제제일중, 동부중	거제제일고, 거제여상
	6/10(수)	중곡, 거제중앙, 오비	거제중앙중, 장평중	거제중앙고



지역	일정	초등학교(2,3,5,6학년)	중학교(2,3학년)	고등학교(2,3학년)
	6/11(목)	신현, 계룡, 거제고현	신현중, 거제고현중, 계룡중	
	6/12(금)	제산, 상동, 수월	수월중	
	6/15(월)	송정, 장목, 칠천, 연초, 진목, 외포	연초중, 장목중, 옥포중, 외포중	옥포고
	6/16(화)	아주, 능포, 장승포, 마전, 일운, 거제애광(특)	해성중, 지세포중	해성고
	6/17(수)	삼룡, 기성, 대우	거제중	거제고, 상문고
	6/18(목)	내곡, 옥포, 창호	옥포성지중, 성포중	
통영	6/19(금)	진남, 유영, 충무, 한려, 영운, 남포, 산양, 원량	통영중, 욕지중, 산양중	통영고
	6/22(월)	충렬, 두룡, 인평, 한산	충무중, 충무여중, 한산중, 통영여중	통영여고, 충무고
	6/23(화)	사랑(분교포함), 벽방, 광도, 도산, 원평, 용남, 통영잠포(특)	사랑중, 도산중, 충렬여중	충렬여고
	6/24(수)	죽림, 제석, 통영	동원중, 통영중앙중	동원고
고성	3/11(수)	대성, 고성, 대흥, 울천, 철성,	고성중, 고성여중, 철성중	경남항공고, 고성중앙고, 철성고
	6/25(목)	마암, 회화, 구만, 개천, 영오, 영현	회화중, 영천중	고성고
	6/26(금)	방산, 거류, 동광, 동해, 삼산, 하일, 하이, 상리	동해중, 고성동중, 소가야중	고성음악고
진주	4/9(목)		꿈키움중(대)	
	6/25(목)	금곡	금곡중	
	6/29(월)	금산, 금호, 장재	진주동중	명신고, 경남예술고, 경남자동차고
	6/30(화)	선학, 금성, 초전	동명중	동명고, 진주제일여고
	7/1(수)	도동, 동진, 남강	진주중앙중, 진명여중	진주중앙고
	7/2(목)	가람, 천전	삼현여중, 진주남중	삼현여고, 진주기계공고
	7/3(금)	정촌, 가좌, 예하, 내동	사대부중, 개양중	사대부고, 경남정보고
	7/6(월)	주악, 평거, 서진, 수정, 망경, 교대부속	진주제일중	
	7/7(화)	신진, 배영, 신안	경해여중	경해여고, 선명여고
	7/8(수)	축석, 명석, 진주, 봉곡	명석중, 진주여중, 대아중	대아고
	7/9(목)	문산, 봉래, 봉원	진주중, 봉원중	진주고, 진주여고, 경진고
	7/10(금)	관봉, 지수, 이반성, 사봉, 반성, 갈전, 무지개, 충무공, 진주해광(특)	문산중, 반성중, 지수중	진양고, 진주외고
	7/13(월)	집현, 미천, 진성, 대곡, 수곡	대곡중, 진서중, 선인국제중(대)	경남과학고, 경남체육고, 대곡고, 진서고
	7/14(화)	축동, 사천, 정동, 수양, 곤명	사천중, 사천여중, 곤명중	사천고, 사천여고, 경남자영고
사천	7/15(수)	대성, 문선	삼천포제일중, 삼천포중, 삼천포여중	삼천포고, 삼천포여고
	7/16(목)	삼성, 사남, 용현, 남양, 동성, 서포, 곤양	용남중, 남양중, 곤양중, 서포중	곤양고, 용남고
	7/17(금)	대방(마도), 노산, 삼천포(신수도), 용산	삼천포중앙여중	삼천포중앙고, 삼천포공고

지역	일정	초등학교(2,3,5,6학년)	중학교(2,3학년)	고등학교(2,3학년)
의령	7/20(월)	남산, 의령, 가례, 칠곡, 대의, 화정, 용덕, 정곡, 유곡, 부림, (봉수), 궁류, 낙서, 경남은광(특)	의령중, 의령여중, 정곡중, 신반중	의령고, 의령여고, 신반정보고
	7/21(화)	지정	지정중	
함안	7/21(화)	아라, 함안, 외암, 문암, 산인, 법수, 중앙, 대산	대산중, 함성중, 함안중	함안고, 로봇고
	7/22(수)	유원, 칠원, 호암, 예곡, 칠서, (이룡), (이령)	칠원중, 칠성중, 호암중	칠원고
	7/23(목)	가야, 월촌, 군북	군북중, 함안여중	군북고, 명덕고
밀양	9/1(화)	밀성, 부북, 상동, 산외, 산내	밀성중, 밀성여중, 동강중, 세종중	밀성고, 밀성제일고, 밀양여고, 세종고
	9/2(수)	수산, 태룡, 삼랑진, 송진, 산동, 상남, 산내남명	동명중, 삼랑진중, 홍제중	밀양동명고, 삼랑진고, 밀양영화고
	9/3(목)	무안, 청도, 초동	미리별중, 무안중	밀양전자고
	9/4(금)	밀양, 미리별, 밀주, 사포, 예림, 송진	밀양중, 밀양여중	밀양고
거창	3/13(금)	셋별, 남하	거창여중, 셋별중, 거창대성중	거창대성고, 거창중앙고, 거창고, 거창대성일고, 아림고, 거창여고
	9/7(월)	거창, 아림, 창남, 마리, 위천, 북상, 남상, 신원, 거창나래(특)	해성여중, 거창덕유중, (신원)	
	9/8(화)	월천, 주상, 웅양, 고제, 창동, 가조, 가북	가조중, 웅양중, (고제), 거창중	거창공업고
하동	3/9(월)	하동, 화개, (왕성), 악양, 적량, 쌍계, 고전, (고남)	악양중, 하동중, 하동중앙중, 화개중	하동고, 하동여고
	7/13(월)	옥종	옥종중	옥종고
	9/9(수)	목계, 청암	청암중	
	9/10(목)	횡천, 양보, 진교, 북천, 진정, 노량, 궁항, 갈육	진교중, 금남중, 한다사중	진교고, 금남고
남해	9/11(금)	창선, 지족, 이동, 삼동, 미조, 상주, 남명	창선중, 이동중, 꽃내중, 미조중, 상주중, 해성중	창선고, 남해고, 해성고, 남해해양고
	9/14(월)	설천, 남해고현, 도마, 남해, 해양, 성명	설천중, 남해중, 남해여중	남해제일고, 남해산업정보고
합천	9/15(화)	초계, 적중, 청덕, 쌍책, (덕곡), 영전, 야로, 합천가야, 묘산, 봉산	초계중, 해인중, 야로중, 묘산중	원경고, 초계고, 야로고
	9/16(수)	삼가, 쌍백, 대양, 가회, 대병, 용주, 합천, 남정	삼가중, 합천중, 가회중, 대병중, 합천여중	삼가고, 합천고, 합천여고
함양	3/10(화)	함양, 위성, 위림, 병곡, 백전, 수동, 유림, 금반, 마천	함양중, 함양여중, 수동중, 마천중	함양고, 함양제일고
	9/17(목)	지곡, 안의, 서상, 서하	서상중, 안의중	안의고, 서상고
산청	9/18(금)	산청, 생초, 오부, 차황, 금서	산청중, 차황중	산청고, 간디학교
	9/21(월)	단성, 신안, 도산, 단계, 생비량, 신천, 삼장, 덕산	단성중, 신등중, 덕산중	단성고, 신등고, 경남간호고, 지리산고
창녕	7/24(금)	영산, 남지, 동포, 도천, 길곡	남지여중, 남지중, 영산중	남지고, 영산고
	9/22(화)	계창, 장마, 고암, 부곡, (학포)	신창여중, 창녕여중, 부곡중	창녕고, 창녕여고, 창녕공고
	9/23(수)	장천, 대지, 이방, 대합, 유어, 명덕, 창녕, 창녕성산	옥야중, 창녕대성중, 성산중, 창녕중	옥야고, 창녕대성고, 창녕제일고



고등학생 결핵검사 일정표

일정	요일	지역	학교명 1	학교명 2	학교명 3	학교명 4
3월 9일	월	창원	창원남산고등학교			
		진해	진해고등학교			
3월 10일	화	창원	창원고등학교			
		진해	진해여자고등학교			
3월 11일	수	창원	창원명지여자고등학교			
		진해	진해세화여자고등학교			
3월 12일	목	창원	창원봉림고등학교			
		진해	진해중앙고등학교			
3월 13일	금	창원	경상고등학교			
		진해	용원고등학교			
3월 16일	월	창원	창원중앙여자고등학교			
3월 19일	목	진해	웅천고등학교			
3월 20일	금	창원	창원공업고등학교			
3월 23일	월	창원	창원토월고등학교			
		마산	마산공업고등학교			
3월 24일	화	창원	창원대암고등학교			
		마산	한일여자고등학교			
3월 25일	수	창원	창원명곡고등학교			
		마산	성지여자고등학교			
3월 26일	목	창원	창원경일고등학교			
		마산	마산제일고등학교			
3월 27일	금	창원	창원경일여자고등학교			
		마산	마산삼진고등학교	태봉고등학교		
3월 30일	월	마산	합포고등학교			
3월 31일	화	창원	창원사파고등학교			
		마산	마산제일여자고등학교			
4월 1일	수	창원	창원신월고등학교			
		마산	마산가포고등학교			
4월 2일	목	창원	창원대산고등학교			
		마산	창신고등학교			
4월 3일	금	창원	창원문성고등학교			
4월 6일	월	창원	성민여자고등학교	창원과학고등학교		
		마산	마산중앙고등학교			
4월 7일	화	창원	경남관광고등학교			
		마산	마산무학여자고등학교			
4월 8일	수	창원	창원용호고등학교			
		마산	경남미용고등학교	경남전자고등학교		
4월 9일	목	창원	창원중앙고등학교			
		마산	마산구암고등학교			
4월 10일	금	창원	창원남고등학교			
		마산	마산고등학교			

일정	요일	지역	학교명 1	학교명 2	학교명 3	학교명 4
4월 13일	월	창원	창원여자고등학교			
		마산	내서여자고등학교			
4월 14일	화	마산	마산용마고등학교			
4월 16일	목	남해	창선고등학교	경남해양과학고등학교		
		마산	마산여자고등학교			
4월 17일	금	남해	남해고등학교			
4월 20일	월	남해	남해해성고등학교	남해정보산업고등학교		
		함양	함양고등학교			
4월 21일	화	남해	남해제일고등학교			
		함양	함양제일고등학교			
4월 22일	수	함양	안의고등학교	서상고등학교		
4월 23일	목	하동	금남고등학교			
4월 24일	금	하동	하동고등학교			
4월 27일	월	하동	진교고등학교			
5월 11일	월	하동	옥종고등학교			
5월 12일	화	하동	하동여자고등학교			
5월 13일	수	거창	대성일고등학교			
5월 14일	목	창녕	영산고등학교			
		거창	거창공업고등학교	아림고등학교		
5월 15일	금	창녕	남지고등학교			
		거창	거창여자고등학교			
5월 18일	월	창녕	창녕고등학교			
		거창	거창중앙고등학교	거창대성고등학교		
5월 19일	화	창녕	창녕공업고등학교	창녕슈퍼텍고등학교		
		거창	거창고등학교			
5월 20일	수	창녕	창녕여자고등학교			
5월 21일	목	창녕	창녕대성고등학교	창녕옥야고등학교		
5월 25일	월	고성	고성고등학교			
		합천	야로고등학교			
5월 26일	화	고성	고성음악고등학교	경남항공고등학교		
		합천	합천고등학교	합천여자고등학교		
5월 27일	수	고성	고성중앙고등학교	철성고등학교		
		합천	초계고등학교	원경고등학교		
5월 28일	목	함안	함안고등학교			
5월 29일	금	함안	명덕고등학교			
		합천	삼가고등학교			
6월 1일	월	함안	군북고등학교			
		의령	의령여자고등학교			
6월 2일	화	함안	칠원고등학교			
		의령	의령고등학교			



일정	요일	지역	학교명 1	학교명 2	학교명 3	학교명 4
6월 3일	수	함안	경남로봇고등학교			
		의령	신반정보고등학교			
6월 5일	금	산청	산청고등학교			
		진주	경상대사대부설고등학교	경진고등학교		
6월 8일	월	산청	단성고등학교	경남간호고등학교		
		진주	진양고등학교			
6월 9일	화	산청	신등고등학교	덕산고등학교		
		진주	진주고등학교			
6월 10일	수	산청	지리산고등학교	간디고등학교		
		진주	경해여자고등학교			
6월 11일	목	사천	사천고등학교	경남자영고등학교		
		진주	진주제일여자고등학교			
6월 12일	금	사천	사천여자고등학교	용남고등학교		
		진주	삼현여자고등학교			
6월 15일	월	사천	삼천포공업고등학교	삼천포여자고등학교		
6월 16일	화	사천	삼천포고등학교	삼천포중앙고등학교		
		진주	선명여자고등학교			
6월 17일	수	사천	곤양고등학교			
		진주	대아고등학교			
6월 18일	목	진주	진주여자고등학교			
		밀양	밀양고등학교			
6월 19일	금	통영	통영고등학교			
		진주	명신고등학교			
		밀양	밀성제일고등학교			
6월 22일	월	통영	동원고등학교			
		진주	진주기계공업고등학교			
		밀양	밀양여자고등학교			
6월 23일	화	통영	통영여자고등학교			
		진주	진주동명고등학교			
		밀양	한국나노마이스터고등학교			
6월 24일	수	통영	충렬여자고등학교			
		진주	경남정보고등학교	경남자동차고등학교		
		밀양	밀양동명고등학교	삼랑진고등학교		
6월 25일	목	통영	충무고등학교			
		진주	경남체육고등학교	경남과학고등학교		
		밀양	세종고등학교	밀양영화고등학교		
6월 26일	금	진주	진주중앙고등학교			
		밀양	밀성고등학교			
6월 29일	월	거제	거제육포고등학교			
		진주	진주외국어고등학교			

일정	요일	지역	학교명 1	학교명 2	학교명 3	학교명 4
6월 30일	화	거제	거제고등학교			
		진주	대곡고등학교	경남예술고등학교		
		양산	양산여자고등학교			
7월 1일	수	거제	거제제일고등학교			
		진주	진서고등학교			
		양산	양산제일고등학교			
7월 2일	목	거제	거제중앙고등학교			
		양산	범어고등학교			
7월 3일	금	거제	경남산업고등학교			
		김해	김해고등학교			
		양산	보광고등학교			
7월 6일	월	거제	해성고등학교			
		김해	김해가야고등학교			
		양산	경남외국어고등학교			
7월 7일	화	거제	거제공업고등학교			
		김해	김해여자고등학교			
		양산	양산남부고등학교			
7월 8일	수	거제	연초고등학교			
		김해	김해생명과학고등학교			
		양산	물금고등학교			
7월 9일	목	거제	거제여자상업고등학교			
		김해	김해수남고등학교			
		양산	웅상고등학교			
7월 10일	금	거제	거제상문고등학교			
		김해	김해건설공업고등학교			
		양산	서창고등학교			
7월 13일	월	양산	효암고등학교			
7월 14일	화	김해	장유고등학교	김해중앙여자고등학교		
		양산	양산고등학교			
7월 15일	수	김해	김해분성고등학교	김해울하고등학교		
7월 16일	목	김해	구산고등학교	김해경원고등학교	김해분성여자고등학교	경남기술과학고등학교
7월 17일	금	김해	김해제일고등학교	김해영운고등학교	김해대청고등학교	
8월 25일	화	김해	김해삼방고등학교			
		창원	창원기계공업고등학교			
8월 26일	수	김해	김해한일여자고등학교	김해삼문고등학교		
8월 27일	목	김해	진영고등학교	진영제일고등학교		
8월 28일	금	김해	김해임호고등학교	김해외국어고등학교		



중학생 결핵 조기발견 사업 검사 일정표

일정	요일	지역	학교명 1	학교명 2	학교명 3	학교명 4
4월 2일	목	창원	창원대산중학교			
4월 16일	목	남해	창선중학교	꽃내중학교		
4월 17일	금	남해	남해중학교	이동중학교		
4월 20일	월	남해	남해해성중학교	실천중학교		
		함양	함양여자중학교			
4월 21일	화	남해	남해여자중학교			
		함양	함양중학교			
4월 22일	수	남해	미조중학교	상주중학교		
		함양	안의중학교	서상중학교		
4월 23일	목	하동	금남중학교			
		함양	수동중학교	마천중학교		
4월 24일	금	하동	화개중학교	악양중학교		
4월 27일	월	하동	진교중학교			
5월 11일	월	하동	옥중중학교	한다사중학교		
5월 12일	화	하동	하동중학교			
5월 13일	수	하동	하동중앙중학교	청암중학교	지리산중학교	
		거창	대성중학교			
5월 14일	목	창녕	영산중학교	부곡중학교		
		거창	가조중학교			
5월 15일	금	창녕	남지중학교	남지여자중학교		
		거창	거창여자중학교			
5월 18일	월	창녕	창녕중학교			
5월 19일	화	창녕	성산중학교			
		거창	샛별중학교			
5월 20일	수	창녕	창녕여자중학교	신창여자중학교		
		거창	덕유중학교	거창중고제분교	웅양중학교	혜성여자중학교
5월 21일	목	창녕	대성중학교	옥야중학교		
		거창	거창중학교			
5월 25일	월	합천	야로중학교	해인중학교	묘산중학교	
5월 27일	수	합천	초계중학교			
5월 28일	목	함안	함안중학교			
		합천	합천중학교	합천여자중학교		
5월 29일	금	함안	함안여자중학교	함성중학교		
		합천	삼가중학교	가회중학교	대병중학교	
6월 1일	월	함안	군북중학교			
		의령	의령여자중학교			
6월 2일	화	함안	칠원중학교			
		의령	의령중학교			
6월 3일	수	함안	대산중학교	칠성중학교		
		의령	신반중학교	정곡중학교	지정중학교	

일정	요일	지역	학교명 1	학교명 2	학교명 3	학교명 4
6월 4일	목	함안	호암중학교			
6월 5일	금	산청	산청중학교			
6월 8일	월	산청	단성중학교			
6월 9일	화	산청	신등중학교	덕산중학교		
6월 17일	수	사천	곤양중학교	곤명중학교	서포중학교	
6월 18일	목	밀양	밀양중학교			
6월 19일	금	밀양	밀양여자중학교			
6월 22일	월	밀양	밀양동강중학교	홍제중학교		
6월 23일	화	밀양	밀성여자중학교	무안중학교	미리벌중학교	
6월 24일	수	밀양	동명중학교	삼랑진중학교		
		통영	충렬여자중학교			
6월 25일	목	밀양	세종중학교			
6월 26일	금	밀양	밀성중학교			
6월 29일	월	진주	반성중학교	경남꿈키움중학교		
6월 30일	화	진주	대곡중학교	선인국제중학교		
7월 1일	수	진주	진서중학교			
7월 14일	화	김해	김해중앙여자중학교			
8월 31일	월	진주	대아중학교			
9월 1일	화	진주	진주동명중학교	진주제일중학교		
9월 2일	수	진주	경상대사대부중학교	개양중학교		
9월 3일	목	진주	문산중학교	지수중학교	금곡중학교	
9월 4일	금	진주	진주남중학교	삼현여자중학교		
9월 7일	월	진주	진주여자중학교	진주중학교	명석중학교	
		창원	창원중학교	도계중학교		
9월 8일	화	창원	명서중학교	명곡여자중학교		
9월 9일	수	진주	진주중앙중학교	진명여자중학교		
		창원	봉곡중학교	봉림중학교		
9월 10일	목	진주	봉원중학교	경해여자중학교		
		창원	사파중학교	신월중학교		
9월 11일	금	진주	진주동중학교			
9월 14일	월	김해	경운중학교	내동중학교		
		창원	창원여자중학교	팔룡중학교		
9월 15일	화	김해	장유중학교	월산중학교		
		창원	창원중앙중학교	안민중학교		
9월 16일	수	김해	김해서중학교	능동중학교		
		창원	반송중학교	반송여자중학교		
9월 17일	목	김해	김해구산중학교	김해삼계중학교		
		창원	경원중학교	반림중학교		
9월 18일	금	김해	수남중학교	김해대동중학교		
		창원	남산중학교	토월중학교		



일정	요일	지역	학교명 1	학교명 2	학교명 3	학교명 4
9월 21일	월	김해	봉명중학교	한림중학교		
		창원	대방중학교	안남중학교		
9월 22일	화	창원	웅남중학교	창원상남중학교		
9월 23일	수	김해	김해중학교	삼정중학교		
		창원	창덕중학교	창원동중학교		
9월 24일	목	김해	김해여자중학교	대청중학교		
		창원	창북중학교	감계중학교		
9월 25일	금	김해	울하중학교			
9월 28일	월	김해	영운중학교	관동중학교		
10월 5일	월	김해	생림중학교	진례중학교		
10월 6일	화	김해	진영중학교			
10월 7일	수	김해	내덕중학교	활천중학교		
		창원	창원남중학교	삼정자중학교		
10월 8일	목	김해	가야중학교	임호중학교		
		마산	마산제일여자중학교	마산의신여자중학교		
10월 12일	월	김해	진영여자중학교	한열중학교		
		마산	마산여자중학교	마산동중학교		
10월 13일	화	김해	김해대곡중학교	신어중학교		
		마산	호계중학교			
10월 14일	수	김해	분성중학교			
		마산	마산중학교	성지여자중학교		
10월 15일	목	마산	구산중학교	구산중구남분교		
10월 16일	금	양산	양산여자중학교	양산중학교		
		마산	구암중학교			
10월 19일	월	양산	신주중학교			
		마산	삼계중학교			
10월 20일	화	양산	보광중학교	양주중학교	원동중학교	
		마산	광려중학교	내서중학교		
10월 21일	수	양산	서창중학교	개운중학교		
		마산	양덕여자중학교	양덕중학교		
10월 22일	목	양산	물금동아중학교	삼성중학교		
		마산	해운중학교	마산서중학교		
10월 23일	금	양산	웅상중학교	웅상여자중학교		
		마산	마산중앙중학교	창신중학교		
10월 26일	월	양산	범어중학교			
10월 27일	화	양산	양산중앙중학교			
		마산	합포중학교			
		창원	양곡중학교			
10월 28일	수	양산	물금중학교			
		마산	마산삼진중학교	진전중학교		

일정	요일	지역	학교명 1	학교명 2	학교명 3	학교명 4
10월 29일	목	마산	마산무학여자중학교	합포여자중학교		
10월 30일	금	거제	하청중학교	연초중학교	장목중학교	외포중학교
11월 2일	월	거제	옥포성지중학교	해성중학교	지세포중학교	
		고성	고성여자중학교	소가야중학교		
11월 3일	화	거제	거제중학교	옥포중학교		
		고성	철성중학교	고성동중학교	동해중학교	
11월 4일	수	거제	수월중학교	신현중학교		
		고성	고성중학교	회화중학교	영천중학교	
11월 5일	목	거제	계룡중학교	거제고현중학교		
11월 6일	금	거제	거제중앙중학교	거제장평중학교		
		사천	사천중학교			
		진해	안골포중학교	웅동중학교		
11월 9일	월	거제	거제제일중학교	동부중학교	성포중학교	
		사천	사천여자중학교			
		진해	석동중학교			
11월 10일	화	사천	용남중학교	남양중학교		
		진해	진해중학교	진해여자중학교		
11월 11일	수	통영	동원중학교	통영중앙중학교		
		사천	삼천포제일중학교	삼천포여자중학교		
		진해	동진여자중학교			
11월 12일	목	통영	산양중학교	욕지중학교		
		사천	삼천포중학교	삼천포중앙여자중학교		
		진해	진해남중학교			
11월 13일	금	통영	한산중학교			
		거제	둔덕중학교			
		진해	진해냉천중학교			
11월 16일	월	통영	충무중학교	충무여자중학교		
		진해	동진중학교			
11월 17일	화	통영	통영중학교	통영여자중학교		
		진해	용원중학교	진해신흥중학교		
11월 18일	수	통영	도산중학교	사랑중학교		



특수학교 결핵검사 일정표

일정	요일	지역	학교명 1	학교명 2	학교명 3	학교명 4
5월 13일	수	거창	거창나래학교			
8월 28일	금	거제	거제애광학교			
		통영	통영잠포학교			
9월 1일	화	진주	진주혜광학교			
		의령	경남은광학교			
9월 2일	수	김해	김해은혜학교			
		양산	양산희망학교			
9월 3일	목	마산	경남혜림학교	동백학교		
		창원	창원천광학교			

【별첨 3-1】

학생건강검진 만족도 조사

(예시)

이 설문지는 학생건강검진과 관련된 학생 및 학부모님의 만족도를 조사하기 위하여 작성된 것입니다. 이 조사는 학생건강검진 만족도 개선을 위한 기초 자료로만 활용되며, 응답 내용은 통계분석에만 사용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바쁘시더라도 성의껏 응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학교장

검진기관명 :	
1. 검진기관과의 거리 (이용의 편리 정도)	① 적당함
	② 보통
	③ 멀어서 불편함
2. 병원 직원의 친절도	① 친절함
	② 보통
	③ 불친절함
	④ 매우 불친절함
3. 진료방법 및 검사내용	① 만족함
	② 보통
	③ 만족하지 않음 ▷만족하지 않는다면 그 이유는?
4. 건강검진 대기 시간	① 10분 미만
	② 10분 이상 ~ 30분 미만
	③ 30분 이상 ~ 1시간 미만
	④ 1시간 이상 ~ 2시간 미만
	⑤ 2시간 이상
5. 불만족/개선요구 사항이 있으면 구체적으로 적어주세요.	

(예시)

학생건강검진 만족도 조사 통계

○○학교

구분	전체 응답자 수	①		②		③		④		⑤		비고
		응답 자수	%	응답 자수	%	응답 자수	%	응답 자수	%	응답 자수	%	
1. 검진기관과의 거리												
2. 병원 직원의 친절도												
3. 진료방법 및 검사내용												
4. 건강검진 대기 시간												
5. 불만족/개선 요구 사항												

【별첨 3-2】

요보호 학생 조사

학생 건강 실태 조사 및 학교 내 응급환자 관리체계 안내

학부모님께

귀댁 자녀들의 학교생활을 보다 건강하고 명랑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자 건강에 관해 문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질병 보유자나 신체 이상자는 교내의 학습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돕고자 하오니 상세히 기록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회 신

▶ 현재 건강문제로 인한 교내 학습활동(체육·수련활동, 기타수업)에 지장 없음()

▶ 질병보유자나 신체허약자는 해당 사항에 ○표 하시고 자세히 기록하여 주십시오.

1. 허약 체질()
2. 심한 빈혈()
3. 기관지, 폐질환()
4. 심장병 ()
5. 신경정신 및 정서 질환-노이로제, 신경쇠약, 간질 등()
병명 : _____
6. 언어 장애()
7. 청력이상() : 오른쪽() 왼쪽()
8. 특이체질-알레르기() 민감한 물질 : _____
9. 지체부자유(근골격계 이상): 뇌성마비() 교통사고() 화상() 기타()
지체부위 : _____
10. 소화기계 질환() 병명 : _____
11. 기타() 병명 및 증상 : _____

* 자녀의 건강상태로 인한 학교생활에의 주의 사항이 있으면 자세히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직접 내교하여 상담하심도 가능합니다.(보건실 전화 : ×××- 0000)



회 신

▶ 학교 내 응급환자 관리 체계 안내

1. 응급상황으로 즉각적인 병원 이송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학생이 학습활동 중 상해를 입어 병원의뢰가 필요한 경우, 보호자에게 인계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2. 학교 내 응급환자 발생 시 보호자와 연락한 후 교사가 동행하여 인근병원으로 후송합니다. 항상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를 알려 주십시오.
3. 필요한 경우 119구조대에 연락할 것이며, 본교에서 지정하는 의료기관이나 보호자께서 지정하신 의료기관으로 신속히 응급 후송할 것입니다.

〈학교 내 응급환자 관리에 대한 동의서〉

연락 우선순위	학생과의 관계	보호자 연락처		
1차		집 :	휴대전화:	그 외(직장 등) :
2차		집 :	휴대전화:	그 외(직장 등) :

* 보호자 지정 이송병원:

* 만약, 학생에게 위급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신속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응급처치절차에 대한 권한을 학교에 위임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 □, 동의하지 않음 □)

학 년 반 번

성 명

보호자 성명

☑

□□□□ 학 교 장

학급별 요보호 학생 명단

학년 반		담임 (인)			
순	번호	이 름	병명 및 증상	발병시기	비고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별첨 3-3】

이 조사는 학생 여러분의 건강상태를 알아보고 학교 생활을 지도하는데 참고하기 위한 것입니다. 비밀이 보장되므로 설문내용에 솔직하고 성실하게 답변해서 여러분 자신의 건강보호 및 향상에 도움이 되도록 합시다. 본인이 작성하되 잘 모르는 문항은 부모님과 상의하여 기재하기 바랍니다.	건강조사서 (초등학생용)		수검자 인적 사항	학 교 명	초등학교	
				학년/반/번호	학년 반 번	
				성 명		
				성별	남	여
				생년월일		
			담임 확인란			

▶지금까지 많이 아파 수술을 받았거나 병원에 입원하였거나 주기적으로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있다면 자세히 기록해 주기 바랍니다. ▶다음 문항을 읽고 자신에 해당하는 곳에 “V” 표시하세요.

--

1. 현재 자신의 건강이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건강하다고 생각한다.
- ② 병은 없는 것 같으나 건강한 편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 ③ 무슨 병이 있는 것 같다.
- ④ 질병이 있다. 질병명 : _____

▶지난 1년 동안 질병을 앓았거나 병원진료를 받았다면 해당란에 “V” 표시를 하고 추후관리 (원치, 치료중, 관찰중 등)를 기록해 주세요.

번호	분 류	①예	②아니오	③추 후관 리
2	알레르기성 비염			
3	아토피 피부병			
4	천 식			
5	결 핵			
6	발작(경기 포함)			
7	암			
8	당뇨병			
9	치과 진료			
10	소아 정신과 질환			
11	기타 질환			

▶일주일 동안 다음 음식을 대체로 몇 번이나 먹습니까?

번호	음식 종류	① 안먹음	② 매일먹음	③ 1-2번	④ 3-5번
12	라면				
13	음료수 (주스 제외)				
14	패스트푸드(피자, 햄버거, 튀김 등)				
15	육류 (소, 돼지, 닭고기 등)				
16	우유, 유제품				
17	과일, 야채 (김치 제외)				

구별	번호	문 항	①예	②아니오
식생활 /비만	18	살을 빼는 방법에 대해 생각을 많이 합니까?		
	19	아침식사는 어떻게 합니까? ①거의 꼭 먹음 ② 대체로 먹음 ③ 대체로 안 먹음 ④ 거의 안 먹음		
개인 위생	20	밥을 먹기 전이나 외출에서 돌아와서 비누로 손을 씻습니까?		
	21	식사를 한 후와 잠자기 전에 이를 닦습니까?		
신체 활동	22	일주일에 세 번 이상 숨이 차거나 땀이 날 정도로 운동을 합니까?		
	23	평소에 하루 몇 시간 정도 잡니까? ① 6시간 이내 ② 6-7시간 ③ 7-8시간 ④ 8시간 이상		
가정 학교 생활	24	우리 가족은 나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고 나의 감정을 존중해 줍니까?		
	25	가정(가족)내의 문제에 대해 걱정이 됩니까?		
	26	자주 맞는다고 생각합니까?		
	27	학교를 가고 싶지 않을 때가 자주 있습니까?		
TV/ 인터 넷	28	지난 1년 동안 친구에게 괴롭힘이나 따돌림을 당한 적이 있습니까?		
	29	텔레비전을 하루에 몇 시간 정도 봅니까? ① 1시간 이내 ② 1~2시간 ③ 2~3시간 ④ 3시간 이상		
안전	30	인터넷이나 게임을 하루에 몇 시간 정도 합니까? ① 1시간 이내 ② 1~2시간 ③ 2~3시간 ④ 3시간 이상		
	31	인라인 스케이트, 롤러블레이드, 스케이트보드, 자전거 등을 탈 때 헬멧을 쓰거나 보호구를 착용합니까?		
학교 폭력	32	자동차를 탈 때 항상 안전벨트를 착용합니까?		
	33	무기로 사용할 목적으로 칼, 몽둥이, 쌍절곤 등을 가지고 다닌 적이 있습니까? (5-6학년만)		
음주 흡연 약물	34	같이 사는 사람중 담배를 많이 피워서 걱정되는 사람이 있습니까?		
	35	같이 사는 사람중 술을 많이 마셔서 걱정되는 사람이 있습니까?		
성인식	36	내 몸을 자주 만지는 사람이 있습니까?		
사회 성/ 정신 건강	37	내가 잘 할 수 있는 일이 두 가지 이상 있다고 말 할 수 있습니까?		
	38	사람들이 날 좋아하는 이유를 두 가지 이상 말할 수 있습니까?		
	39	친한 친구가 있습니까?		
	40	전에 재미있던 공부나 놀이가 재미가 없습니까?		
	41	항상 외롭다고 느낍니까?		
	42	화가 나면 난폭한 행동을 합니까?		
	43	차분하지 못하고 지나치게 활동적입니까?		
	44	늘 안절부절못합니까?		
	45	고민이나 괴로운 일에 대해 상담을 받고 싶습니까?		
학교 재량				



이 조사는 학생 여러분의 건강상태를 알아보고 학교 생활을 지도하는데 참고하기 위한 것입니다. 비밀이 보장되므로 설문내용에 솔직하고 성실하게 답변해서 여러분 자신의 건강보호 및 향상에 도움이 되도록 합니다.	건강조사서 (중학생용)		학 교 명		중학교	
			학년/반/번호		학년 반 번	
			성 명			
			성별	남 여	담임	인

▶지금까지 많이 아파서 수술을 받았거나 병원에 입원하였거나 주기적으로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있다면 자세히 기록해 주기 바랍니다.

1. 현재 자신의 건강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① 건강하다고 생각한다.
 ② 병은 없는 것 같으나 건강한 편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③ 무슨 병이 있는 것 같다.
 ④ 질병이 있다. 질병명 : _____

▶지난 1년 동안 질병을 앓았거나 병원진료를 받았다면 해당란에 “V” 표시를 하고 추후관리(완치, 치료중, 관찰중 등)를 기록해 주세요.

번호	분 류	①예	②아니오	③추후관리
2	알레르기성 비염			
3	아토피 피부병			
4	천 식			
5	결 핵			
6	발작(경기 포함)			
7	암			
8	당뇨병			
9	치과 진료			
10	소아 정신과 질환			
11	(여학생) 생리통			
12	기타 질환			

▶일주일 동안 다음 음식을 대체로 몇 번이나 먹습니까?

번호	음식 종류	① 안먹음	② 매일먹음	③ 1-2번	④ 3-5번
13	라면				
14	음료수 (주스 제외)				
15	패스트푸드(피자, 햄버거, 튀김 등)				
16	육류 (소, 돼지, 닭고기 등)				
17	우유, 유제품				
18	과일, 야채 (김치 제외)				

▶다음 문항을 읽고 자신에 해당하는 곳에 “V” 표시하세요.

구별	번호	문 항
식생활 / 비만	19	아침식사는 어떻게 합니까? ① 거의 꼭 먹음 ② 대체로 먹음 ③ 대체로 안 먹음 ④ 거의 안 먹음
	20	살을 빼기 위해 어떻게 합니까? ① 아무 것도 안 함 ② 자주 굶는다. ③ 약을 먹는다. ④ 운동으로 감량한다. ⑤ 섬유질이 많은 식사를 한다.

구별	번호	문 항	①예	②아니오
개인 위생	21	밥을 먹기 전이나 외출에서 돌아와서 비누로 손을 씻습니까?		
	22	식사를 한 후와 잠자기 전에 이를 닦습니까?		
신체 활동	23	지난 일주일 동안 숨이 차거나 땀이 날 정도로 운동이나 일을 했습니까? ① 거의 안 했음 ② 30분 -1시간정도 ③ 1시간 -2시간 정도 ④ 2시간 이상		
	24	평소에 하루 몇 시간 정도 잡니까? ① 6시간 이내 ② 6-7시간 ③ 7-8시간 ④ 8시간 이상		
가정 생활 / 학교 생활	25	우리 가족은 나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고 나의 감정을 존중해 줍니까?		
	26	가족(가족)내의 문제에 대해 걱정이 됩니까?		
	27	학교를 가고 싶지 않을 때가 자주 있습니까?		
	28	지난 1년 동안 가솔을 심각하게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29	지난 1년 동안 친구에게 괴롭힘이나 따돌림을 당한 적이 있습니까?		
	30	인터넷이나 게임을 하루에 몇 시간 정도 합니까? ① 1시간 이내 ② 1~2시간 이내 ③ 2~3시간 이내 ④ 3시간 이상		
인터넷 / 음란물	31	이상한 음란물을 보거나 성인사이트에서 채팅을 합니까? ① 거의 하지 않는다. ② 거의 매일 보거나 한다. ③ 일주일에 2-3번 정도 ④ 한 달에 3-4번 정도		
	32	인라인 스케이트, 롤러블레이드, 스케이트보드, 자전거 등을 탈 때 헬멧을 쓰거나 보호구를 착용합니까?		
안전	33	자동차를 탈 때 항상 안전벨트를 착용합니까?		
	34	지난 1년 동안 사고나 외상 때문에 병원, 보건실에서 치료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① 없음 ② 1번 ③ 2번 ④ 3번 이상		
학교 폭력	35	가정이나 학교에서 폭력으로 인해 자신의 안전이 위협을 받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음주 / 흡연	36	지난 한 달 동안 담배를 한 개비 이상 피운 날은 며칠 정도 됩니까? ① 전혀 피우지 않음 ② 매일 피움 ③ 일주일에 1-2일 ④ 일주일에 3-4일 ⑤ 일주일에 5일 이상		
	37	지난 한 달 동안 술을 한 잔 이상 마신 날은 며칠 정도 됩니까? ① 전혀 마시지 않음 ② 한 달에 2-3일 ③ 일주일에 1-2일 ④ 일주일에 3-4일 ⑤ 일주일에 5일 이상		
성인식	38	아주 친한 친구 중에 성관계를 해본 적이 있는 친구가 있습니까?		
사회성 / 정신 건강	39	내가 잘 할 수 있는 일이 두 가지 이상 있다고 말 할 수 있습니까?		
	40	사람들이 날 좋아하는 이유를 두 가지 이상 말할 수 있습니까?		
	41	지난 한 달 동안 기분이 처지거나 우울하거나 희망이 없다는 느낌이 들어 고민하고 있습니까?		
	42	화가 나면 난폭한 행동을 합니까?		
	43	차분하지 못하고 지나치게 활동적입니까?		
	44	늘 안전부절못합니까?		
	45	고민이나 괴로운 일에 대해 상담을 받고 있습니까?		
학교 재량				

이 조사는 학생 여러분의 건강상태를 알아보고 학교 생활을 지도하는데 참고하기 위한 것입니다. 비밀이 보장되므로 설문내용에 솔직하고 성실하게 답변해서 여러분 자신의 건강보호 및 향상에 도움이 되도록 합시다.	건강조사서 (고등학생용)		학 교 명		고등학교	
			학년/반/번호		학년 반 번	
			성 명			
			성별	남 여	답임	인

▶지금까지 많이 아파서 수술을 받았거나 병원에 입원하였거나 주기적으로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있다면 자세히 기록해 주기 바랍니다.

1. 현재 자신의 건강이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건강하다고 생각한다.
 ② 병은 없는 것 같으나 건강한 편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③ 무슨 병이 있는 것 같다.
 ④ 질병이 있다. 질병명: _____

▶지난 1년 동안 질병을 앓았거나 병원진료를 받았다면 해당란에 “V” 표시를 하고 추후관리 (완치, 치료중, 관찰중 등)를 기록해 주세요.

번호	분 류	①예	②아니오	③추후관리
2	알레르기성 비염			
3	아토피 피부병			
4	천 식			
5	결 핵			
6	발작(경기 포함)			
7	암			
8	당뇨병			
9	치과 진료			
10	소아 정신과 질환			
11	(여학생) 생리통			
12	기타 질환			

▶일주일 동안 다음 음식을 대체로 몇 번이나 먹습니까?

번호	음식 종류	① 안먹음	② 매일먹음	③ 1~2번	④ 3~5번
13	라면				
14	음료수 (주스 제외)				
15	패스트푸드(피자, 햄버거, 튀김 등)				
16	육류 (소, 돼지, 닭고기 등)				
17	우유, 유제품				
18	과일, 야채 (김치 제외)				

▶다음 문항을 읽고 자신에 해당하는 곳에 “V” 표시하세요.

구별	번호	문 항
식생활 / 비만	19	아침식사는 어떻게 합니다? ① 거의 꼭 먹음 ② 대체로 먹음 ③ 대체로 안 먹음 ④ 거의 안 먹음
	20	살을 빼기 위해 어떻게 합니다? ① 아무 것도 안 함 ② 자주 굶는다. ③ 약을 먹는다. ④ 운동으로 감량한다. ⑤ 섬유질이 많은 식사를 한다.

구별	번호	문 항	①예	②아니오
개인 위생	21	밥을 먹기 전이나 외출에서 돌아와서 비누로 손을 씻습니까?		
	22	식사를 한 후와 잠자기 전에 이를 닦습니까?		
신체 활동	23	지난 일주일 동안 숨이 차거나 땀이 날 정도로 운동이나 일을 했습니까? ① 거의 안 했음 ② 30분 ~1시간정도 ③ 1시간 ~2시간 정도 ④ 2시간 이상		
	24	평소에 하루 몇 시간 정도 잠니까? ① 6시간 이내 ② 6~7시간 ③ 7~8시간 ④ 8시간 이상		
가정 생활 / 학교 생활	25	부모님과 이야기가 잘 통한다고 생각하니까?		
	26	가정(가족)내의 문제에 대해 걱정이 됩니까?		
	27	학교를 가고 싶지 않을 때가 자주 있습니까?		
	28	지난 1년 동안 가출을 심각하게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인터넷 / 음란물	29	지난 1년 동안 친구에게 괴롭힘이나 따돌림을 당한 적이 있습니까?		
	30	인터넷이나 게임을 하루에 몇 시간 정도 합니까? ① 1시간 이내 ② 1~2시간 이내 ③ 2~3시간 이내 ④ 3시간 이상		
안전	31	이상한 음란물을 보거나 성인사이트에서 채팅을 합니까? ① 거의 하지 않는다. ② 거의 매일 보거나 한다. ③ 일주일에 2~3번 정도 ④ 한 달에 3~4번 정도		
	32	인라인 스케이트, 롤러블레이드, 스케이트보드, 자전거 등을 탈 때 헬멧을 쓰거나 보호구를 착용합니까?		
학교 폭력	33	지난 1년 동안 사고나 외상 때문에 병원, 보건실에서 치료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① 없음 ② 1번 ③ 2번 ④ 3번 이상		
	34	가정이나 학교에서 폭력으로 인해 자신의 안전이 위협을 받고 있다고 생각 됩니까?		
음주 / 흡연	35	지난 한 달 동안 담배를 한 개비 이상 피운 날은 며칠 정도 됩니까? ① 전혀 피우지 않음 ② 매일 피움 ③ 일주일에 1~2일 ④ 일주일에 3~4일 ⑤ 일주일에 5일 이상		
	36	지난 한 달 동안 술을 한 잔 이상 마신 날은 며칠 정도 됩니까? ① 전혀 마시지 않음 ② 한 달에 2~3일 ③ 일주일에 1~2일 ④ 일주일에 3~4일 ⑤ 일주일에 5일 이상		
성인식	37	피임법, 에이즈나 성병에 걸리지 않는 법을 알고 있습니까?		
	38	임신을 하거나 임신을 시킬 경우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니까? ① 앞날이 걱정되어 낙태를 시킨다. ② 미혼모 보호소에서 낳아 입양시킨다. ③ 아이를 낳아 기르거나 남자네 집에 보낸다. ④ 어른과 상의하여 결혼한다.		
사회성 / 정신 건강	39	내가 잘 할 수 있는 일이 두 가지 이상 있다고 말 할 수 있습니까?		
	40	사람들이 날 좋아하는 이유를 두 가지 이상 말할 수 있습니까?		
	41	의견이 달라도 그것을 인정하고 모든 활동에 계속 참여 하겠습니까?		
	42	스트레스를 받는 가장 큰 원인은? (가장 중요한 것 한 가지만 고르세요) ① 학교성적 ② 학습량의 과중(학원, 과외수업, 숙제 등) ③ 외모(얼굴, 몸무게, 키 등) ④ 집안의 경제적 문제나 가족의 건강문제 ⑤ 친구나 부모님, 선생님과의 관계		
	43	지난 한 달 동안 기분이 처지거나 우울하거나 희망이 없다는 느낌이 들어 고민하고 있습니까?		
	44	화가 나면 난폭한 행동을 합니까?		
학교 재량	45	늘 안전부절못합니까?		
	46	고민이나 괴로운 일에 대해 상담을 받고 싶습니까?		

【별첨 4】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 [별표 1] <개정 2019.9.27>

일반검진기관 지정기준

신청자격	인력기준	시설기준	장비기준
가. 종합병원 나. 병원(요양병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다. 의원 라. 보건소(보건의료원을 포함하며, 이하 “보건소”라 한다) 마. 의사를 두어 의과진료과목을 추가로 설치·운영하는 한방병원 및 치과병원	가. 의사 : 연평균 일일 검진 인원 25명당 1명을 두되, 끝수(연평균 일일 검진인원을 25로 나눈 나머지)가 있으면 1명을 추가한다. 나. 간호사(간호조무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1명 이상 다. 임상병리사 1명 이상 ※ 내원검진만 실시하는 의원은 연간 검진인원을 진료일수로 나눈 검진인원(이하 “일일 평균 검진인원”이라 한다)이 15명 미만일 경우 임상병리사를 두지 않을 수 있다. 라. 방사선사 1명 이상 ※ 내원검진만 실시하는 의원은 일일 평균 검진인원이 15명 미만일 경우 방사선사를 두지 않을 수 있다.	가. 진찰실 나. 탈의실 다. 검진대기실 라. 임상검사(검체검사 및 진단의학검사를 포함한다)를 하는 시설 마. 방사선촬영실	가. 신장 및 체중계 나. 혈압계 다. 시력검사표 라. 청력계기 마. 원심분리기 바. 혈액화학검사기기 사. 혈액화학분석기 아. 방사선촬영장치 :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른 검사·측정기관으로부터 검사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판정된 장비로서 방사선직접촬영장치를 말한다.

- 비고 : 1.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건강검진을 하려는 의사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한다.
2. 내원검진만 실시하는 의원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검체검사에 관한 업무를 관련 전문기관에 위탁한 경우에는 시설기준의 라목, 장비기준의 바목 및 사목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일반검진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3. 내원검진만 실시하는 의원이「의료법」제39조에 따라 장비를 공동으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인력기준의 라목, 시설기준의 나목 및 마목, 장비기준의 아목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일반검진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 [별표 4] <개정 2013.3.23.>

구강검진기관 지정기준

구 분	내 용
신청자격	가. 치과 병원 · 의원 나. 치과 진료과목이 개설된 종합병원 또는 보건소 다. 구강검진만을 목적으로 치과의를 고용한 일반검진기관
인력기준	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구강검진기관 교육과정을 이수한 치과의사 1명 이상 나. 간호사 또는 치과위생사 1명 이상
시설기준	가. 구강검진실 나. 검진대기실
장비기준	가. 치과용 진료장치 및 의자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의료기기 중 품목별 등급 A68010 장비이어야 한다. 나. 고압멸균소독기 다. 치경, 탐침 및 핀셋 라. 교육용 치아모형 세트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 [별표 5] <개정 2019.9.27.>

출장검진기관 지정기준

구분	인력기준	장비기준	차량기준	그 밖의 사항
일반 검진	가. 의사: 일일 건강검진을 받는 사람 100명당 1명을 두되, 끝수(일일 건강검진을 받는 사람 수를 100으로 나눈 나머지)가 있으면 1명을 추가한다. 나. 간호사 1명 이상 다. 임상병리사 1명 이상 라. 방사선사 1명 이상	가. 신장 및 체중계 나. 혈압계 다. 시력검사표 라. 청력계기 마. 원심분리기 바. 방사선촬영장치	의료기관의 개설자(대표자)가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등록증 상 소유자인 출장검진차량 또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시설대여업자로부터 대여받은 출장검진차량을 갖추야 한다. ※ 출장검진차량이란 출장검진을 위하여 자동차에 해당기준에 따른 장비를 갖추고 진료공간과 탈의공간을 구분한 차량을 말한다.	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건강검진을 하려는 의사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한다. 나. 방사선촬영장치는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른 검사·측정기관으로부터 검사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판정받은 장비로서 방사선 직접촬영장치를 말한다.
구강 검진	가. 치과의사: 일일 건강검진을 받는 사람 100명당 1명을 두되, 끝수(일일 건강검진을 받는 사람 수를 100으로 나눈 나머지)가 있으면 1명을 추가한다. 나. 간호사 또는 치과위생사 1명 이상	가. 치경 나. 탐침 다. 핀셋 라. 라이트		가. 치과의사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구강검진기관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한다. 나. 출장검진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 중 구강검진만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차량기준을 갖추지 않아도 된다.



【별첨 5-1】

학교건강검사규칙

[시행 2020. 3. 1.] [교육부령 제198호, 2020. 1. 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학교보건법」 제7조 및 제7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 건강검사의 실시 및 그 결과의 기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 1. 10.>

제2조(건강검사 실시계획의 수립) 학교의 장은 「학교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른 건강검사를 원활하게 실시하기 위하여 건강검사에 필요한 소요예산을 포함한 구체적인 건강검사 실시계획을 매년 3월 31일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6. 3. 4.>
[전문개정 2006. 1. 10.]

제3조(건강검사의 실시) ①건강검사는 신체의 발달상황, 신체의 능력, 건강조사, 정신건강 상태 검사 및 건강검진으로 구분한다. <개정 2016. 3. 4.>

②신체의 발달상황, 신체의 능력, 건강조사 및 정신건강 상태 검사는 해당 학교의 장이 실시하고, 건강검진은 「건강검진기본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검진기관(이하 "검진기관"이라 한다)에서 실시한다. <개정 2009. 5. 22., 2016. 3. 4.>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건강검진을 실시하는 학생에 대한 신체의 발달상황에 대한 검사는 검진기관에서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0. 1. 9.>
[전문개정 2006. 1. 10.]

제4조(신체의 발달상황에 대한 검사항목 및 방법) ①신체의 발달상황은 키와 몸무게를 측정한다. <개정 2006. 1. 10.>

②신체의 발달상황에 대한 검사의 방법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1999. 3. 8., 2006. 1. 10.>

③ 신체의 발달상황에 대한 검사는 매학년도 제1학기 말까지 실시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추가로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20. 1. 9.>
[제목개정 2006. 1. 10.]

제4조의2(건강조사의 항목 및 방법) ① 건강조사는 병력, 식생활 및 건강생활 행태 등에 대해서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3. 4.>

②건강조사의 항목에 따른 세부적인 내용 및 건강조사의 방법은 별표 1의2와 같다.

③ 건강조사는 매학년도 제1학기 말까지 실시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추가로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20. 1. 9.>
[본조신설 2006. 1. 10.]

제4조의3(정신건강 상태 검사) ① 정신건강 상태 검사는 설문조사 등의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설문조사 등의 시행과 그 결과 처리는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4에 따른 교육정보시스템(이하 "교육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하여 할 수 있다.

② 학교의 장은 정신건강 상태 검사를 실시하는 경우(법 제7조제6항에 따라 동의 없이 실시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검사와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을 학부모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본조신설 2016. 3. 4.]

제5조(건강검진의 항목 및 방법) ①건강검진은 척추, 눈·귀, 콧병·목병·피부병, 구강, 병리검사 등에 대하여 검사 또는 진단해야 한다. <개정 2006. 1. 10., 2020. 1. 9.>

②건강검진의 방법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1999. 3. 8., 2006. 1. 10.>

[제목개정 2006. 1. 10.]

제5조의2(건강검진의 절차 등) ①학교의 장은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학생의 건강검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2개 이상의 검진기관을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검진기관을 2개 이상 선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관할 교육감(「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에 따라 하급 교육행정기관에 권한을 위임한 경우에는 교육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승인을 얻어 1개의 검진기관만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16. 3. 4.>

②학교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진기관을 선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초·중등교육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받을 수 있다.

③학교의 장은 검진대상자가 검진기관을 방문하여 건강검진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6. 3. 4.>

④ 학교의 장은 제1항 본문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개의 검진기관만을 선정하여 검진기관이 검진대상자에 대한 출장검진을 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6. 3. 4.>

1. 학교가 소재한 지역(읍·면·동을 말한다)에 검진기관이 없는 경우
2.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른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의 학생을 대상으로 검진을 실시하는 경우
3.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출장검진이 불가피하다고 교육감이 승인한 경우

⑤ 검진기관은 검진대상자 여부를 확인한 후 검진대상자에 대하여 별표 1 및 별표 2의 검사항목에 해당되는 신체의 발달상황에 대한 검사 및 건강검진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3. 4.>

⑥ 검진기관은 검진을 실시하기 전에 검진에 필요한 별지 제1호의2서식부터 별지 제1호의4서식까지에 따른 문진표를 비치하고, 검진대상자에게 필요한 문진표를 작성·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6. 3. 4.>



⑦ 검진기관은 법 제7조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검사결과를 검사일 부터 30일 내에 해당 학생 또는 학부모와 해당학교의 장에게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진결과 질환이 의심되는 학생 또는 정밀검사가 필요한 학생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학부모에게 반드시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 3. 4.>

1. 별지 제1호의5서식에 따른 학생건강검사 결과 통보서
2. 별지 제1호의6서식에 따른 학생구강검사 결과 통보서

⑧ 건강검진에 소요되는 비용의 범위는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5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금액을 적용한다. <신설 2016. 3. 4., 2020. 1. 9.>

[본조신설 2006. 1. 10.]

제6조(별도의 검사) ①학교의 장은 법 제7조제3항에 따른 별도의 검사를 다음 각 호의 학생에 대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6. 1. 10., 2009. 5. 22.>

1. 소변검사 및 시력검사 : 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의 학생 중 교육감이 지정하는 학년의 학생
2. 결핵검사 : 고등학교의 학생 중 교육감이 지정하는 학년의 학생
3. 구강검사 : 중학교 및 고등학교의 학생 중 교육감이 지정하는 학년의 학생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의 시기 및 방법 등 검사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개정 2006. 1. 10.>

[제목개정 2006. 1. 10.]

제7조(신체능력검사의 대상 및 방법 등) ① 신체능력검사는 체력요소를 평가하여 제8조에 따른 신체의 능력등급을 판정하는 필수평가와 신체활동에 대한 인식정도 등 필수평가에 대한 심층평가를 하는 선택평가로 구분한다.

② 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학생을 대상으로 신체능력검사를 실시한다. 다만, 심장질환 등으로 인한 신체허약자와 지체부자유자는 그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초등학교 제5학년 및 제6학년 학생
2. 중학교 및 고등학교 학생

③ 필수평가는 체력요소별로 1개의 검사항목을 선택하여 매 학년 초에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선택평가는 학교의 장이 해당 학교의 여건을 고려하여 검사항목, 검사주기 등을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4. 3. 3.>

④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학교의 장은 해당 학교의 여건을 고려하여 초등학교 제4학년에 대한 필수평가 또는 선택평가의 실시여부를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필수평가와 선택평가의 검사항목 및 검사방법은 별표 3과 같다.

⑥ 선택평가의 검사항목 중 자기신체평가 및 자세평가를 측정하기 위한 설문지는 별지 제1호의7 서식과 제1호의8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 5. 22.]

제8조(신체의 능력등급) ① 신체의 능력등급은 제7조제3항에 따라 체력요소별로 선택하여 검사한 검사항목의 항목별 점수를 종합하여 별표 6의 신체의 능력등급 판정표에 따라 판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검사항목의 항목별 점수는 별표 4의 신체능력검사(필수평가) 기준표와 별표 5의 신체능력검사(필수평가) 항목별 등급 및 점수 기준표에 따라 산정한다

[전문개정 2009. 5. 22.]

제9조(건강검사 등의 실시결과 관리) ① 학교의 장은 법 제7조의3제1항에 따라 건강검사의 실시결과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6. 3. 4.>

1. 대상자가 학생인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작성·관리

가. 신체발달상황 및 신체능력검사 결과: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학생건강기록부로 작성·관리

나. 건강검진 결과: 제5조의2제7항에 따라 검진기관이 통보한 자료를 학생건강기록부와 별도로 관리

2. 대상자가 교직원인 경우: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의 결과를 관리

② 학교의 장은 제6조에 따른 별도검사의 실시결과를 학생건강기록부와 별도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6. 3. 4.>

③ 법 제7조의3제2항제3호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6. 3. 4.>

1.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예방접종 완료 여부

2.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건강검진의 검진일자 및 검진기관명

3. 제6조에 따른 별도검사의 종류, 검사일자 및 검사기관명

④ 학교의 장은 법 제7조의3제2항 각 호의 사항을 교육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처리하기 위하여 학생건강기록부에 기록해야 한다. <개정 2016. 3. 4., 2020. 1. 9.>

⑤ 고등학교의 장은 소속 학생이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 학생건강기록부를 해당 학생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6. 3. 4.>

⑥ 학생이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에 진학하지 아니하거나 휴학 또는 퇴학 등으로 고등학교를 졸업하지 못한 경우 그 학생이 최종적으로 재적하였던 학교는 학생건강기록부를 비롯한 건강검사 등의 실시결과를 학생이 최종적으로 재적한 날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신설 2016. 3. 4.>

⑦ 교육감은 제7조제1항에 따른 신체능력검사 결과에 따라 학생 개인별 신체활동 처방을 제공하는 학생건강체력평가시스템을 교육정보시스템과 연계하여 구축하고, 학생·학부모가 조회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6. 3. 4.>

[전문개정 2006. 1. 10.]



[제목개정 2016. 3. 4.]

제10조(건강검사 등의 실시결과에 따른 조치) ①학교의 장은 건강검사 등의 실시결과에 따라 보건 의료기관, 체육단체 및 대학 등의 협조를 받아 소속 학생 및 교직원에 대한 건강상담, 예방조치 및 체력증진 등 적절한 보호 또는 양호의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06. 1. 10., 2009. 5. 22., 2016. 3. 4.>

②학교의 장은 건강검사 등을 실시한 결과 수업면제·휴학·치료·보호 또는 교정 등을 필요로 하는 학생에 대해서는 본인 또는 그의 보호자에게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6. 1. 10., 2016. 3. 4.>

③학교의 장은 교직원에 대해서 건강검사 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을 실시한 결과 전염성질환 또는 신체의 심한 허약 등으로 복무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휴직 기타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임면권자에게 건의하여야 한다. <개정 1999. 3. 8., 2006. 1. 10., 2016. 3. 4.>

④ 학교의 장은 건강검사 등을 실시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통계표를 작성하여 해당 연도의 8월 31일까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통계표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의 2월 말일까지 관할 교육장을 거쳐 교육감에게 보고해야 한다. <신설 2016. 3. 4., 2020. 1. 9.>

⑤ 교육감은 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학생건강증진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학교의 장에게 건강조사 결과 및 건강검진 결과에 관한 통계자료를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신설 2020. 1. 9.>

[제목개정 2016. 3. 4.]

제11조(건강검사 표본학교의 지정 및 보고 등) ① 교육부장관은 법 제2조의2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시행과 시책 마련을 위하여 건강검사의 표본학교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6. 3. 4.>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표본학교(이하 "표본학교"라 한다)에 대해서 이 규칙이 정한 검사항목 외의 검사항목을 추가한 건강검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 3. 4.>

③ 표본학교의 장은 건강검사를 실시한 경우 그 결과를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감을 거쳐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 3. 4.>

④ 삭제 <2016. 3. 4.>

⑤ 삭제 <2016. 3. 4.>

[제목개정 1997. 12. 31., 2006. 1. 10.]

제12조(유치원 원아 등의 건강검사) 유치원 원아에 대한 건강검사는 이 규칙의 검사항목에 준하여 이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1999. 3. 8., 2006. 1. 10.>

[제목개정 1999. 3. 8., 2006. 1. 10.]



제13조(대학 학생의 건강검사) 「고등교육법」 제2조 각호의 학교의 장은 소속학생 및 교직원
에 대하여 이 규칙에 준하는 별도의 방법으로 건강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1999.
3. 8., 2006. 1. 10.>

[제목개정 2006. 1. 10.]

제14조(건강검사실시의 예외) 학교의 장은 법 제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에 건강
검사를 실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관할 교육감 또는 교육장의 승인을 얻어 신체의 발달상
황 및 신체의 능력과 건강조사를 생략할 수 있고, 건강검진은 다음 학년도로 연기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6. 1. 10.]

부칙 <제198호, 2020. 1. 9.>

이 규칙은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학교건강검사규칙 [별표 1] <개정 2020. 1. 9.>

신체의 발달상황에 대한 검사항목 및 방법(제4조제2항 관련)

검사항목	측정단위	검 사 방 법
키	센티미터 (cm)	1. 검사대상자의 자세 가. 신발을 벗은 상태에서 발꿈치를 붙일 것 나. 등·엉덩이 및 발꿈치를 측정대에 붙일 것 다. 똑바로 서서 두 팔을 몸 옆에 자연스럽게 붙일 것 라. 눈과 귀는 수평인 상태를 유지할 것 2. 검사자는 검사대상자의 발바닥부터 머리끝까지의 높이를 측정
몸무게	킬로그램 (kg)	옷을 입고 측정한 경우 옷의 무게를 뺀 것
비만도	—	1. 비만도는 학생의 키와 몸무게를 이용하여 계산된 체질량지수(BMI, Body Mass Index: kg/m^2)를 성별·나이별 체질량지수 백분위수 도표에 대비하여 판정한다. 2. 비만도의 표기방법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체질량지수 백분위수 도표의 5 미만인 경우: 저체중 나. 체질량지수 백분위수 도표의 85 이상 95 미만인 경우: 과체중 다. 체질량지수 백분위수 도표의 95 이상인 경우: 비만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정상

※ 비고: 수치는 소수 첫째자리까지 나타낸다(측정값이 소수 둘째자리 이상까지 나오는 경우에는 둘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 학교건강검사규칙 [별표 1의2] <신설 2006.1.10.>

건강조사 항목 및 방법(제4조의2제2항 관련)

조사항목	조 사 내 용
1. 예방접종/병력	가. 전염병 예방접종 나. 가족병력 다. 개인병력
2. 식생활/비만	가. 식습관 나. 인스턴트 및 그 밖에 식품의 섭취형태 다. 다이어트 행태
3. 위생관리	가. 손 씻기 나. 양치질
4. 신체활동	가. 근지구력 향상을 위한 운동 나. 심폐기능 향상을 위한 운동 다. 수면
5. 학교생활/가정생활	가. 가족 내 지지 정도 나. 학교생활 적응 정도 다. 교우관계
6. 텔레비전/인터넷/음란물의 이용	가. 텔레비전 시청 나. 인터넷 이용 다. 음란물예의 노출 여부 및 정도
7. 안전의식	가. 안전에 대한 인식 나. 안전사고의 발생
8. 학교폭력	가. 학교폭력예의 노출 여부 및 정도
9. 흡연/음주/약물의 사용	가. 흡연 나. 음주 다. 흡입제의 사용 여부 및 약물의 오·남용 여부 등
10. 성 의식	가. 성문제 나. 성에 대한 인식
11. 사회성/정신건강	가. 사회성(자긍심, 적응력 등) 나. 정신적 건강(우울, 자살, 불안증, 주의력 결핍 등)
12. 건강상담	가. 건강에 대한 상담의 요구 등



■ 학교건강검사규칙 [별표 2] <개정 2020. 1. 9.>

건강검진 항목 및 방법(제5조제2항 관련)

검진항목		검진방법(세부항목)
1. 척추		척추옆굽음증(척추측만증) 검사
2. 눈	가. 시력측정	1) 공인시력표에 의한 검사 2) 오른쪽과 왼쪽의 눈을 각각 구별하여 검사 3) 안경 등으로 시력을 교정한 경우에는 교정시력을 검사
	나. 안질환	결막염, 눈썹찢림증, 사시 등 검사
3. 귀	가. 청력	1) 청력계 등에 의한 검사 2) 오른쪽과 왼쪽의 귀를 각각 구별하여 검사
	나. 귓병	중이염, 바깥귀길염(외이도염) 등 검사
4. 콧병		코결막염(부비동염), 비염 등 검사
5. 목병		편도선비대 · 목부위림프절비대 · 갑상샘비대 등 검사
6. 피부병		아토피성피부염, 전염성피부염 등 검사
7. 구강	가. 치아상태	충치, 충치발생위험치아, 결손치아(영구치로 한정한다) 검사
	나. 구강상태	치주질환(잇몸병) · 구내염 및 연조직질환, 부정교합, 구강위생상태 등 검사
8. 병리 검사 등	가. 소변	요컵 또는 시험관 등을 이용하여 신선한 요를 채취하며, 시험지를 사용하여 측정(요단백 · 요잠혈 검사)
	나. 혈액	1회용 주사기나 진공시험관으로 채혈하여 다음의 검사 1) 혈당(식전에 측정한다), 총콜레스테롤, 고밀도지단백(HDL) 콜레스테롤, 중성지방, 저밀도지단백(LDL) 콜레스테롤 및 간 세포 효소(AST · ALT) 2) 혈액소
	다. 결핵	흉부 X-선 촬영 및 판독
	라. 혈압	혈압계에 의한 수축기 및 이완기 혈압
9. 허리둘레		줄자를 이용하여 측정
10. 그 밖의 사항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검진항목 외에 담당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추가하는 항목(검진비용이 추가되지 않는 경우로 한정한다)

※ 적용범위 및 판정기준

- 다음 각 목의 검진항목에 대한 검사 또는 진단은 해당 목에 따른 학생을 대상으로 하여 실시한다.
 - 가. 위 표 제8호나목1) 및 같은 표 제9호의 검진항목: 초등학교 4학년과 중학교 1학년 및 고등학교 1학년 학생 중 비만인 학생
 - 나. 위 표 제8호나목2)의 검진항목: 고등학교 1학년 여학생
 - 다. 위 표 제8호다목의 검진항목: 중학교 1학년 및 고등학교 1학년 학생
- 위 표에서 정한 건강검진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 및 건강검진 결과의 판정기준은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른다.
- 위 표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검진항목 외의 검진항목에 대한 검진방법 및 건강검진 결과의 판정기준은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5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른다.

■ 학교건강검사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0. 1. 9.>

학 생 건 강 기 록 부

(앞쪽)

1. 인적사항

성명		성별	☐ 남 ☐ 여	주민등록번호	~	
학 교	학 년	반(이수과정 / 학과)			번 호	담 임 성 명

2. 감염병 예방접종

가. 취학 전 예방접종

대상 감염병	접종여부					비 고
	1차	2차	3차	4차	5차	
디프테리아						
백 일 해						
파 상 풍						
홍 역						
유행성이하선염						
풍 진						
회색질척수염(polio)						
결 핵						
일본뇌염						
수 두						
B형 간염						

나. 취학 후 예방접종

대상 감염병	학교 / 학년	접종일	대상 감염병	학교 / 학년	접종일
일본뇌염					
디프테리아					
파 상 풍					
사람유두종바이러스					

(뒤쪽)

3. 건강검사 실시현황

가. 신체의 발달상황

구 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1	2	3	4	5	6	1	2	3	1	2	3
키 (cm)												
몸 무 게(kg)												
비만도												

나. 신체의 능력

구 분		단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4	5	6	1	2	3	1	2	3
왕 복 오 래 달 리 기		회									
오 래	1,000m(초)	분 : 초	공란								
달리기-걷기	1,600m(중·고 / 남)	분 : 초		공 란							
(초5~고3)	1,200m(중·고 / 여)	분 : 초		공 란							
스 텝 검 사		PEI	공란								
앉아윗몸앞으로굽히기		cm	공란								
종 합 유 연 성		점									
(무릎대고)팔굽혀펴기(중·고)		회		공 란							
윗몸말아올리기		회									
악 력		kg									
50m 달 리 기		초									
제자리멀리뛰기		cm									
체 지 방 률		%									
신체의 능력점수		점									
신체의 능력등급		등급									

다. 건강검진 현황

구 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1학년	1학년
건강 검진	검 진 일		공 란			공 란			
	검진기관		공 란			공 란			
구강 검진	검 진 일								
	검진기관								

라. 별도검사 현황

검 사 일												
검 사 명												
검사기관												

210mm×297mm(백상지 80g/㎡)

■ 학교건강검사규칙 [별지 제1호의2서식] <개정 2020. 1. 9.>

문진표(초등학생용)

수검자 인적 사항	학교명		초등학교		
	학년 / 반 / 번호		학년	반	번
	성명				
	성별	☐ 남 ☐ 여	생년월일		

이 설문조사는 건강검진에 앞서 학생들의 건강상태를 미리 알아보고 진찰을 받을 때 참고하기 위한 것입니다.
초등학교 1학년 학생은 부모님(보호자)이, 초등학교 4학년 학생은 본인 또는 부모님(보호자)과 상의하여 작성하
기 바랍니다.

1. 병원에서 진단 받고 현재 치료 중인 질환이 있습니까?	☐ 예 ☐ 아니오
1-1. 있다면 질환명을 기록하여 주십시오.()	
2. 최근 1개월 이내에 약을 복용한 적이 있습니까?	☐ 예 ☐ 아니오
2-1. 있다면 질환명, 약 종류를 기록하여 주십시오.()	
3. 병원에서 진단 받고 정기적으로 추적 관찰 중인 질환이 있습니까?	☐ 예 ☐ 아니오
3-1. 있다면 질환명을 기록하여 주십시오.()	
4. 학생이 건강에 대하여 걱정되거나 궁금한 것이 있습니까?	☐ 예 ☐ 아니오
4-1. 있다면 기록하여 주십시오.()	
5. 학부모님께서 학생의 건강에 대하여 걱정되거나 궁금한 것이 있습니까?	☐ 예 ☐ 아니오
5-1. 있다면 기록하여 주십시오.()	
6. 최근 한 달간 학생이 경험한 증상에 모두 "V"표시를 하여 주십시오.	

항목	나타나는 증상	예	아니오
전신상태	감기에 잘 걸리는 편이다.		
	온 몸에 힘이 없고 쉽게 피로한 편이다.		
	건강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호흡기	재채기와 함께 맑은 콧물이 흐를 때가 있다.		
	숨 쉴 때 소리가 난다.		
	기침과 함께 누런 가래가 올라온다.		
	열이 많이 나면서 목이 따가울 때가 자주 있다.		
	평소 코로 숨쉬기가 불편하고 코가 자주 막힌다.		
순환기	가만히 있어도 심장이 두근거린다.		
	운동을 할 때 몹시 숨이 차다.		
소화기	배가 자주 아프고 소화가 안 된다.		
	속이 답답하다.		
	배가 팽팽하거나 가스가 찬 듯한 느낌이 있다.		
	설사를 자주 한다.		
혈액	코피가 자주 나고 다치면 피가 잘 멈추지 않는다.		
	몸에 멍이 잘 든다.		
그 밖의 증상	머리가 자주 아프다.		
	귓속이 아프거나 귀에서 진물이 나온다.		
	귀에서 소리가 난다.		
	입이 잘 벌어지지 않는다.		
	목이나 허리가 아프다.		

210mm×297mm(백상지 80g/㎡)

문진표(중학생 · 고등학생용)

수검자 인적 사항	학교명		학교		
	학년 / 반 / 번호		학년	반	번
	성명				
	성별	☐ 남 ☐ 여	생년월일		

이 설문조사는 건강검진에 앞서 학생들의 건강상태를 미리 알아보고 진찰을 받을 때 참고하기 위한 것입니다.
본인이 작성하되 5번 문항 및 잘 모르는 문항은 부모님(보호자)과 상의하여 작성하기 바랍니다.

- 병원에서 진단 받고 현재 치료 중인 질환이 있습니까? ☐예 ☐아니오
1-1. 있다면 질환명을 기록하여 주십시오.()
- 최근 1개월 이내에 약을 복용한 적이 있습니까? ☐예 ☐아니오
2-1. 있다면 질환명, 약 종류를 기록하여 주십시오.()
- 병원에서 진단 받고 정기적으로 추적 관찰 중인 질환이 있습니까? ☐예 ☐아니오
3-1. 있다면 질환명을 기록하여 주십시오.()
- 학생이 건강에 대하여 걱정되거나 궁금한 것이 있습니까? ☐예 ☐아니오
4-1. 있다면 기록하여 주십시오.()
- 학부모님께서 학생의 건강에 대하여 걱정되거나 궁금한 것이 있습니까? ☐예 ☐아니오
5-1. 있다면 기록하여 주십시오.()
- 최근 한 달간 학생이 경험한 증상에 모두 "V"표시를 하여 주십시오.

항목	나타나는 증상	예	아니오
전신상태	감기에 잘 걸린다.		
	온 몸에 힘이 없고 쉽게 피로하다.		
	건강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호흡기	재채기와 함께 코와 눈이 가렵고 맑은 콧물이 흐를 때가 있다.		
	숨 쉴 때 숨이 가쁘면서 가슴에서 뻑뻑하는 소리나 휘파람 소리가 들릴 때가 많다.		
	기침과 함께 누런 가래가 올라온다.		
	열이 많이 나면서 목이 따가울 때가 자주 있다.		
	평소 코로 숨쉬기가 불편하고 코가 막힌다.		
	코를 심하게 곤다는 말을 듣는다.		
	목에서 몽우리가 만져진다.		
순환기	혈색이 안 좋고, 가만히 있어도 심장이 두근거린다.		
	운동을 조금만 해도 다른 사람보다 숨이 심하게 차다.		
소화기	속이 쓰리거나 아플 때가 있다.		
	속이 답답하거나 가득 찬 듯한 느낌이 있다.		
	배가 팽팽하거나 가스가 찬 것 같다.		
	아랫배가 살살 아프거나 설사를 자주 한다.		
혈액	코피가 자주 나고 다치면 피가 잘 멈추지 않는다.		
	몸에 멍이 잘 든다.		
그 밖의 증상	두통이나 편두통이 심하다.		
	귀속이 아프거나 귀에서 분비물이 나온다.		
	귀에서 맴미우는 소리나 웅하는 소리가 들린다.		
	턱관절이 아프거나 입이 잘 벌어지지 않는다.		
	목 · 허리 · 무릎 등이 쑤시거나 아프다. (여학생) 생리통이 심하다.		

[별지 제1호의4서식] <신설 2006.1.10>

구강검진 문진표

이 설문조사는 구강검진에 앞서 여러분의 구강증상과 구강건강행태에 대하여 미리 알아보고자 실시하는 것입니다. 설문 결과는 여러분이 진찰을 받을 때 참고하도록 할 것이며, 그 내용에 대하여는 비밀이 보장됩니다. 여러분의 솔직하고 성실한 답변은 여러분 자신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본인이 작성하되 모르는 사항은 부모님(보호자)과 상의하여 정확하게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검자 인적사항			
			학교명	학교		
			학년/반/번호			
			성명			
			성별	남여	생년월일	
구강 증상에 대한 물음			구강건강행태에 대한 물음			
※ 최근 1년 동안 학생이 경험한 증상에 모두 “V” 표시를 해 주십시오.			※ 학생의 구강건강행태에 해당하는 번호에 “V” 표시를 하여 주십시오.			
증상	①있다	②없다	7. 지난 1년간 치과병(의)원에 간 적이 있습니까? ① 있다 ② 없다 ③ 모르겠다			
1. 치아가 깨지거나 부러짐			8. 어제 하루 동안 이를 닦은 때를 모두 표시해 주세요. ① 아침식사 전 ② 아침식사 후 ③ 점심식사 후 ④ 저녁식사 후 ⑤ 잠자기 직전 ⑥ 간식섭취 후			
2. 차갑고 뜨거운 음료 혹은 음식을 마시거나 먹을 때 치아가 아픔			9. 과자 등 단음식이나 콜라 등 청량음료를 즐겨 먹습니까? ① 그렇다 ② 보통이다 ③ 아니다			
3. 치아가 쭈시고 욱신거리고 아픔			10. 현재 사용 중인 치약에 불소가 들어있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③ 불소치약이 무엇인지 모름			
4. 잇몸이 아프거나 피가 남						
5. 혀 또는 입 안쪽 뺨이 욱신거리며 아픔						
6. 불쾌한 입 냄새가 남						
※ 특별히 <u>치과의사 선생님께</u> 하고 싶은 말을 쓰십시오.						

210mm × 297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학교건강검사규칙 [별지 제1호의5서식] <개정 2020. 1. 9.>

학생건강검사 결과 통보서

학 교 명	학 교			학년 / 반 / 번호	학년	반	번호
성 명		성별	☐ 남 ☐ 여	생년월일			

구 분	검 사 항 목	검 사 결 과	구 분	검 사 항 목	검 사 결 과		
신 체 발 달 상 황	키	cm	혈 액	혈당(식전)	mg/dL		
	몸무게	kg		총콜레스테롤	mg/dL		
	비만도			고밀도지단백 (HDL) 콜레스테롤	mg/dL		
척 추				중성지방	mg/dL		
눈	시력	좌: 우:		결 핵			
	측정	교 정			좌: 우:		
안 질 환					혈 압	수 축 기	mmHg
귀	청 력	좌: 우:				이 완 기	mmHg
	귓 병					허리둘레	
콧 병				그 밖의 사항			
목 병							
피 부 병							
소 변	요 단 백						
	요 잠 혈						
진 찰 및 상 담	과거병력						
	외상 및 후유증						
	일반상태						

종합소견		가정에서의 조치사항	
종합소견		가정에서의 조치사항	

판정의사	면허번호		검진일 및 검진기관	검진일	
	의사명	(인)		검진기관명	

210mm×297mm(백상지 80g/㎡)

■ 학교건강검사규칙 [별지 제1호의6서식] <개정 2020. 1. 9.>

학생구강검사 결과 통보서

학 교 명	학 교				학년 / 반 / 번호		학년 반 번	
성 명	성별		☐ 남 ☐ 여		생년월일			

구강검사 결과 및 판정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공통 항목						중학교·고등학교 추가 항목						
충치	①	없음	②	있음	상 ()개 하 ()개	치주질환 (잇몸병)	①	없음	②	있음	잇몸출혈/비대() 치석 형성() 치주낭(잇몸과 치아 틈) 형성() 그 밖의 증상()	
충치발생 위험치아	①	없음	②	있음	상 ()개 하 ()개							
결손치아 (영구치에 한정)	①	없음	②	있음	상 ()개 하 ()개	턱관절 이상	①	없음	②	있음	()	
구내염 및 연조직 질환	①	없음	②	있음	()	고등학교 추가 항목						
부정교합	①	없음	②	교정 필요	③	교정 중	치아 마모증	①	없음	②	있음	()
구강위생 상태	①	우수	②	보통	③	개선 요망						
그 밖의 치아 상태	①	과잉치	②	유치 잔존	③	그 밖의 치아 상태:	제3대구치 (사랑니)	①	정상	②	이상	()

종합소견	
종합소견	가정에서의 조치사항

판정 치과의사	면허번호		검진일 및 검진기관	검진일	
	의사명	(인)		검진기관명	

210mm×297mm(백상지 80g/㎡)



■ 학교건강검사규칙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0. 1. 9.>

학생 신체의 발달상황 통계표

구 분		성별	학년도					
			□초	□중	□고	기관명 :		
키 평균 (cm)	남자							
	여자							
몸무게 평균 (kg)	남자							
	여자							
비만율	저체중 (%)	남자	()	()	()	()	()	()
		여자	()	()	()	()	()	()
	정 상 (%)	남자	()	()	()	()	()	()
		여자	()	()	()	()	()	()
	과체중 (%)	남자	()	()	()	()	()	()
		여자	()	()	()	()	()	()
	비 만 (%)	남자	()	()	()	()	()	()
		여자	()	()	()	()	()	()
수검자 인원 (명)	남자							
	여자							
	계							

작성방법

1. 이 통계표는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별로 각각 작성합니다.
2. 키·몸무게 평균은 성별·학년별 수검자의 키·몸무게를 평균한 값이며, 소수 첫째자리까지 작성합니다(계산한 값이 소수 둘째자리 이상까지 나오는 경우에는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합니다. 이하 제3호에서 같습니다).
3. 비만율은 성별·학년별 수검자 인원 대비 저체중·정상·과체중 및 비만인 수검자 인원의 비율이며, 소수 첫째자리까지 작성합니다. ()에는 해당 성별·학년별 수검자 인원을 작성합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별첨 5-2】

학교 건강검진 실시방법·결과 판정 및 기재방법 등에 관한 기준

[시행 2020.3.1.] [교육부고시 제2020-217호, 2020.2.13.,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기준은 「학교건강검사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건강검진 항목별 결과 판정기준, 판정결과 기재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검사항목 및 방법) ①건강검진 항목은 규칙 제5조에 따른 척추, 눈·귀, 콧병·목병·피부병, 구강, 병리검사 등을 말한다.

②검진 항목별 실시방법은 별표 1과 같다.

제3조(검진결과 판정) ①건강검진 결과 판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검진기관의 검진 의사가 건강검진 결과 종합판정, 진찰 및 소견을 기재할 때는 별표 2의 별첨 1 ‘건강검진 결과 판정기준 참고치’를 참조한다.

제4조(검진결과 기재) ①검진기관은 규칙 제5조의2에 정한 통보서에 검사결과, 소견 및 조치사항, 판정, 검진일자, 판정의사 및 검진기관 등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한다.

②검진의 판정 및 결과 기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검진의 소견 및 조치사항은 검진을 담당한 의사가 진찰(문진 포함), 별표 2의 별첨 2 ‘건강검진 항목별 검진결과 기재요령’을 참조하여 기재하고 판정은 별표 2에 따라 ‘정상’, ‘정상(경계)’, ‘정밀검사 요함’으로 한다.

2. 진찰(문진 포함)결과 생활습관의 개선 또는 특이사항(본인 소견사항 등)이 있을 때는 해당 소견을 결과통보서의 ‘소견 및 조치사항’란에 반드시 검진을 담당한 의사가 한글로 알기 쉽게 기재하되 ‘질환명’이 아닌 ‘증상명’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제5조(유효기간) 이 고시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칙 <제2020-217호, 2020. 2. 13.>

이 고시는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건강검진 항목 및 방법

검사 항목	검사방법(세부항목)	
문진, 진찰, 상담	※ 문진, 진찰, 상담은 반드시 의사가 실시하여야 한다.	
1. 척추	<척추옆굽음증(척추측만증) 검사> · 우선 똑바로 선 환자의 뒤에서 시진 · 양측 장골능(iliac crest)의 높이, 어깨선, 엉덩이나 견갑골의 돌출, 늘어뜨린 각각의 팔과 몸통과의 거리 비교 · 환자가 옷을 벗은 상태에서 양손을 몸 중앙선에서 잡고 앞으로 90도 허리를 구부리게 한 뒤 후부 흉곽의 대칭성을 보고(Adams test) 만일 한 쪽이 다른 쪽보다 높으면 측방만곡을 시사하며 scoliometer를 사용할 수도 있음 · 10도 이상의 외측척추만곡을 척추측만증으로 진단 · 환자의 옆에서도 관찰하여 척추의 앞뒤 굴곡을 살펴봄	
2. 눈	가. 시력측정	· 공인시력표에 의한 검사 · 오른쪽과 왼쪽의 눈을 각각 구별하여 검사 · 안경 등으로 시력을 교정한 경우에는 교정시력만 검사하고 교정시력 기록란에 기록 · 검사하지 않는 눈은 보이지 않게 확실히 가리고 측정 · 동일 줄에서 50% 이상을 맞추면 해당 시력 확인, 기재
	나. 안질환	· 결막염, 눈썹찢림증, 사시 등 검사 · 시진으로 외안부의 이상 유무를 확인함. 결막의 충혈이나 창백함, 눈곱 유무, 각막의 혼탁 여부를 손전등을 이용하여 관찰 · 안구 조절 마비 유무, 홍채의 색이나 침윤, 안구진탕, 안검(하수, 퇴축, 부종, 색소침착), 공막의 황달, 수정체 혼탁 유무 관찰 · 양측 동공의 크기가 대칭인지 대광반사가 즉시 유발되는지, 양쪽 눈의 동공의 위치가 같은지 관찰함. · 각막반사는 면봉 끝으로 각막을 살짝 건드려서 감박이면 정상임. · cover test는 한 눈은 가리고 다른 눈은 약 3m 전방의 한 점을 고정 응시하도록 한 뒤 가렸던 눈의 가리개를 치워서 그 눈이 가리지 않았던 다른 쪽 눈과 같은 방향을 응시하는지 관찰하여 어떠한 안구의 움직임이라도 있으면 사시에 대한 정밀 검사 의뢰 · ophthalmoscope를 사용하여 망막의 optic disc와 혈관분포 관찰 · simultaneous red reflex test(Bruckner test)는 동공의 색, 크기, 투명도가 비대칭이면 비정상적으로 보고 정밀검사 의뢰

검사 항목	검사방법(세부항목)	
3. 귀	가. 청력	· 순음청력검사 또는 귓속말검사 방법을 사용하여 검사 · 오른쪽과 왼쪽의 귀를 각각 구별하여 검사
	나. 귓병	· 외이의 모양, 위치, 외이와 외이도의 염증이나 종괴 유무 확인 · 고막은 귀를 외상방으로 당기면서 이경을 이용하여 관찰하며 고막의 천공이나 함몰, 고막 내 삼출물 등 확인
4. 코	· 코결막염(부비동염), 비염 등 검사 · 코의 모양, 분비물, 코에서 나는 냄새 등을 확인하고 코 점막의 충혈이나 이물, 종양 여부를 관찰	
5. 목 병	· 편도선비대, 목부위림프절비대, 갑상샘비대 확인 · 구개, 볼쪽 점막, 혀와 표면의 유두, 편도 비대나 삼출물, 후비루 등을 관찰 · 구강 내 염증, 감염, 출혈의 소견 유무를 관찰하며 청소년의 경우 치아 상태도 주의하여 관찰	
6. 피부병	· 전염성 피부병, 기타 피부병을 포함하여 조사 · 흉터, 화상, 멍이 많은지, 위치와 각 손상 부위의 진행 단계를 관찰 · 건조하거나 인설, 삼출액 등의 아토피성피부염 소견이 있는지 연령을 감안하여 호발 부위 관찰 · 사춘기 남자는 피지 분비가 많아지므로 여드름 여부나 정도 검사 · 피부의 발진 여부, 색소 침착, 점이나 줄, 진균이나 세균의 감염 소견이 있는지 관찰	
7. 구강	가. 치아상태	· 충치, 충치발생위험치아, 결손치아(영구치에 한정) 검사 · 진찰 및 상담은 치과의사가 직접 실시하여야 한다. · 종합소견 및 조치사항에 따라 구강 보건교육(잇솔질 교육) 실시
	나. 구강상태	· 치주질환(잇몸병)·구내염 및 연조직질환, 부정교합, 구강위생상태 등 검사
8. 병 리 검 사 등	가. 소변	· 요검 또는 시험관 등을 이용하여 채취하여야 하며, 시험지(Urine Test Strip)을 사용하여 측정하며 요 채취 후 1시간 이내에 시행하여야 한다. · 1회 검사하여 검사에 이상이 발견 될 경우 동일 방법으로 재검 · 사춘기 여학생의 경우 월경이 없는 상태를 확인하고 검체를 접수



검사 항목	검사방법(세부항목)	
	나. 혈액	· 1회용 주사기나 진공시험관으로 채혈하여 다음의 검사 - 비만학생 : 혈당(식전에 측정한다), 총콜레스테롤, 고밀도지단백(HDL) 콜레스테롤, 중성지방, 저밀도지단백(LDL) 콜레스테롤(총콜레스테롤, HDL콜레스테롤, 중성지방 수치를 활용하여 계산한다.) 및 간 세포 효소(AST·ALT) - 고1 여학생 : 혈색소 · 비만학생의 혈액검사는 수검자의 공복상태(8시간 이상)를 확인 한 후 1회용 주사기나 진공 시험관으로 채혈 · 검진기관은 당일 채취한 검체를 당일 중 분석 완료하며, 혈당의 경우 자가 혈당측정기 측정 가능
	다. 결핵	· 흉부 X-선 촬영 및 판독
	라. 혈압	· 자동 진동혈압계와 수은 수동 혈압계를 같이 사용할 수 있지만 현재 우리나라에 제시된 소아 청소년 혈압 기준치가 자동 진동 혈압계를 통해 마련된 것이기 때문에 가능한 자동혈압계를 통한 계측결과 사용 · 자동 진동혈압계의 계측치가 수은 수동혈압계보다 수축기에는 7-10 mmHg 정도 높게 나올 수 있지만 이완기 혈압은 비슷하거나 오히려 낮게 나올 수 있다는 점을 감안 · 혈압 측정 전 5분간 수검자를 앉은 자세로 휴식 시킨 후, 우측 상박에서 5분 간격으로 총 2회 측정 · 자동 진동혈압계로 고혈압이 의심되면 수은 수동혈압계로 확인 · 혈압은 측정하는 방법이 중요하므로 피측정자는 앉은 자세에서 우측 상박을 심장 높이에 펴놓고 압박대는 상박의 길이 2/3 이상을 덮고 완전히 감싸는 것을 사용하여 측정 · 불안하면 혈압이 높아지기 쉬우므로 처음에 혈압이 높은 경우는 진찰 끝에 어느 정도 안정되면 다시 측정 · 혈압 측정치가 90백분위수 이상인 경우는 별개로 3번 측정하여 계속 높은지 확인한 뒤 판정 필요 · 혈압판정은 먼저 성장도표에서 키의 백분위를 먼저 확인하고 이후 해당 혈압도표에 맞는 위치를 확인하여 혈압의 백분위수를 구함
9. 허리둘레		· 비만학생에 대한 허리둘레를 다음 방법으로 측정 · 양발 간격을 25~30cm 정도 벌리고 서서 체중을 균등히 분배 시킨 후 숨을 편안히 내쉬 상태에서 줄자를 이용하여 갈비뼈 가장 아래와 골반의 가장 윗부분(장골능)의 중간부위를 너무 조이거나 느슨하지 않도록 하여 0.1cm까지 측정
10. 그 밖의 사항		· 검사항목 제1호 내지 제9호 중 세부항목 외에 담당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추가하는 항목(검진비용이 추가되지 않는 경우에 한한다)

[별표 2]

건강검진 결과 판정기준

구 분	판정기준
정 상	검진결과 건강이 양호한 자
정상(경계)	- 검진결과 건강에 이상이 없으나, 생활습관, 환경개선 등 자기관리 및 예방조치가 필요한자 - 검진결과 질환으로 발전할 우려가 있어 추적검사가 필요한 자
정밀검사 요함	검진결과 질환 가능성이 높아 전문 의료기관을 통한 정확한 검진이 필요한 자

※ 최종 종합판정은 문진표, 진찰, 상담, 검사결과를 합하여 검진 의사가 한다.



[별표 2의 별첨 1]

건강검진 결과 판정기준 참고치

□ 검진결과 항목별 판정기준

질환별	검진항목		단위	판정 기준	
				판정	참고치
척추	척추옆굽음증 (척추측만증)			정상	없음
				정밀검사 요함	있음
눈	시력			정상	양쪽 눈 모두 각각 나안시력이 0.8이상인 경우
				정밀검사 요함	한 쪽 눈이라도 나안시력 0.7이하인 경우
	안질환			정상	이상소견이 하나도 없는 경우
				정밀검사 요함	이상소견이 1개 이상인 경우
귀	청력	귓 속 말 검사	개수	정상	양쪽 귀 모두 각각 불러준 6개 숫자 중 3개 이상을 정확히 따라할 경우
				정밀검사 요함	한쪽 귀라도 6개 숫자 중 3개 미만을 맞출 경우
		순음 청력 검사	dB	정상	40dB 미만
				정밀검사 요함	40dB 이상
	귓병			정상	이상소견이 하나도 없는 경우
				정밀검사 요함	이상소견이 1개 이상인 경우
코	콧병			정상	이상소견이 하나도 없는 경우
				정밀검사 요함	이상소견이 1개 이상인 경우
목	목병			정상	이상소견이 하나도 없는 경우
				정밀검사 요함	이상소견이 1개 이상인 경우
피부	피부병			정상	이상소견이 하나도 없는 경우
				정밀검사 요함	이상소견이 1개 이상인 경우
구강	치아상태			정상	검진결과 치아건강이 양호한 경우
				정상(경계)	충치는 없으나 예방치료가 필요한 경우
				정밀검사 요함	검진결과 치아 치료가 필요한 경우
	구강상태			정상	검진결과 구강건강이 양호한 경우
				정상(경계)	구강질환이 없으나 예방관리가 필요한 경우
				정밀검사 요함	구강질환이 의심되어 상담 또는 추적검사가 필요한 경우
신장	요단백			정상	음성 (-), 약양성 (±)
				정밀검사 요함	양성 (1+,2+,3+,4+), 양성과 신장 질환 증상 동반
	요잠혈			정상	음성 (-), 약양성 (±)
				정밀검사 요함	양성 (1+,2+,3+,4+), 양성과 신장 질환 증상 동반

질환별	검진 항목	단위	판정 기준	
			판정	참고치
혈액	총콜레스테롤	mg/dL	정상	< 170
			정상(경계)	170 ~ 199
			정밀검사 요함	≥ 200
	고밀도지단백 (HDL) 콜레스테롤	mg/dL	정상	> 45
			정상(경계)	40 ~ 45
			정밀검사 요함	< 40
	중성 지방 (TG)	mg/dL	정상	< 90
			정상(경계)	90 ~ 129
			정밀검사 요함	≥ 130
	저밀도지단백 (LDL) 콜레스테롤 (계산값 제공)	mg/dL	정상	< 110
			정상(경계)	110 ~ 129
			정밀검사 요함	≥ 130
간장질환	간세포효소 (AST) SGOT	U/L	10세 미만	정상 ≤ 55
				정밀검사 요함 > 55
			10세 이상	정상 ≤ 45
				정밀검사 요함 > 45
	간세포효소 (ALT) SGPT	U/L	정상	≤ 45
			정밀검사 요함	> 45
빈혈증 질환	혈색소	g/dL	정상	≥ 12.0
			정밀검사 요함	< 12.0
당뇨질환	혈당	mg/dL	정상	< 100
			정상(경계)*	100 ~ 125
			정밀검사 요함	≥ 126
폐결핵	흉부방사선 촬영		정상	비활동성
			정밀검사 요함	정상 및 비활동성 이외의 자 (사진불량, 미촬영 등은 제외)
혈압 이상	혈압 - 수축기 - 이완기	mmHg	정상	수축기/이완기 혈압 성별, 연령별, 신장대비 90백분위수 미만
			정상(경계)**	수축기/이완기 혈압 성별, 연령별, 신장대비 90~95백분위수
				단, 90백분위 미만이라도 130/80 mmHg 이상인 경우 포함
			정밀검사 요함	95백분위수 초과

- * 공복 시 혈당조절이 원활하지 않은 경우
- ** 고혈압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어 운동 및 식생활 관리 등을 필요로 하는 경우
- ※ 검진기관이 사용하는 시약 등의 차이로 자체 판정 참고치를 갖고 있는 경우에는 검사결과와 문진 등을 종합하여 자체 판정 참고치를 기준으로 판정



□ 연령·신장별 혈압의 성장도표 백분위수

연령 (세)	수축기 혈압 백분위수	신장 백분위수(남아)							신장 백분위수(여아)						
		5th	10th	25th	50th	75th	90th	95th	5th	10th	25th	50th	75th	90th	95th
7~8 ¹⁾	50th	99	100	101	103	105	107	108	97	98	98	100	101	103	104
	90th	114	115	116	118	120	122	123	112	112	113	114	115	117	118
	95th	119	119	121	123	125	126	127	116	116	117	118	119	121	122
	99th	127	128	129	131	133	135	136	123	123	124	125	127	128	129
8~9	50th	99	99	101	103	105	106	107	99	99	100	101	102	104	105
	90th	114	115	116	118	120	122	123	113	113	114	115	116	118	119
	95th	119	119	121	122	124	126	127	117	117	118	119	120	122	123
	99th	127	128	129	131	133	134	136	124	125	125	126	128	129	130
9~10	50th	99	100	102	103	105	107	108	100	100	101	102	104	105	106
	90th	115	116	117	119	121	122	124	114	114	115	116	118	119	120
	95th	119	120	121	123	125	127	128	118	118	119	120	122	123	124
	99th	127	128	130	131	133	135	136	126	126	127	128	129	131	132
10~11	50th	101	101	103	105	106	108	109	101	102	102	103	105	106	107
	90th	116	117	118	120	122	124	125	115	116	116	118	119	121	122
	95th	120	121	123	124	126	128	129	119	120	120	122	123	125	126
	99th	129	129	131	133	135	136	137	127	127	128	129	131	132	133
11~12	50th	102	103	105	106	108	110	111	102	103	103	105	106	108	109
	90th	118	119	120	122	124	126	127	116	117	118	119	120	122	123
	95th	122	123	124	126	128	130	131	120	121	122	123	124	126	127
	99th	130	131	133	134	136	138	139	128	128	129	130	132	133	134
12~13	50th	105	105	107	108	110	112	113	103	104	104	106	107	109	110
	90th	120	121	122	124	126	128	129	117	118	119	120	121	123	124
	95th	124	125	127	128	130	132	133	121	122	123	124	125	127	128
	99th	133	133	135	137	138	140	141	129	129	130	131	133	134	135
13~14	50th	107	108	109	111	113	115	116	104	104	105	106	108	109	110
	90th	122	123	125	126	128	130	131	118	119	119	120	122	123	124
	95th	127	128	129	131	133	134	136	122	123	123	124	126	127	128
	99th	135	136	137	139	141	143	144	130	130	131	132	133	135	136
14~15	50th	110	110	112	114	115	117	118	105	105	106	107	108	110	111
	90th	125	126	127	129	131	133	134	119	119	120	121	123	124	125
	95th	129	130	132	133	135	137	138	123	123	124	125	127	128	129
	99th	138	138	140	142	144	145	146	130	131	132	133	134	136	137
15~16	50th	112	113	115	116	118	120	121	106	106	107	108	109	111	112
	90th	128	129	130	132	134	136	137	120	120	121	122	123	125	126
	95th	132	133	134	136	138	140	141	124	124	125	126	127	129	130
	99th	141	141	143	144	146	148	149	131	132	132	133	135	136	137
16~17	50th	115	116	117	119	121	123	124	106	107	108	109	110	112	113
	90th	131	132	133	135	137	138	140	121	121	122	123	124	126	127
	95th	135	136	137	139	141	143	144	125	125	126	127	128	130	131
	99th	143	144	146	147	149	151	152	132	132	133	134	136	137	138
17~18	50th	118	119	120	122	124	126	127	108	108	109	110	111	113	114
	90th	134	135	136	138	140	141	143	122	122	123	124	126	127	128
	95th	138	139	140	142	144	146	147	126	126	127	128	130	131	132
	99th	146	147	149	150	152	154	155	133	134	134	136	137	139	140
18~19	50th	121	122	124	125	127	129	130	110	110	111	112	113	115	116
	90th	137	138	139	141	143	144	146	124	124	125	126	128	129	130
	95th	141	142	143	145	147	149	150	128	128	129	130	132	133	134
	99th	149	150	152	153	155	157	158	135	136	137	138	139	141	142

연령 (세)	이완기혈압 백분위수	신장 백분위수(남아)							신장 백분위수(여아)						
		5th	10th	25th	50th	75th	90th	95th	5th	10th	25th	50th	75th	90th	95th
7~8	50th	57	57	58	58	59	60	60	57	57	57	58	58	59	59
	90th	67	68	68	69	69	70	70	67	67	67	67	68	69	69
	95th	70	70	71	71	72	73	73	69	69	70	70	71	71	72
	99th	76	76	76	77	77	78	78	74	75	75	75	76	76	77
8~9	50th	58	58	58	59	59	60	60	57	57	58	58	59	59	60
	90th	68	68	68	69	70	70	70	67	67	67	68	68	69	69
	95th	71	71	71	72	72	73	73	70	70	70	71	71	72	72
	99th	76	76	77	77	78	78	79	75	75	75	76	76	77	77
9~10	50th	58	58	59	59	60	60	61	58	58	58	59	59	60	60
	90th	68	68	69	69	70	70	71	67	67	68	68	69	69	70
	95th	71	71	72	72	73	73	74	70	70	70	71	71	72	72
	99th	76	77	77	78	78	79	79	75	75	76	76	77	77	78
10~11	50th	58	59	59	60	60	61	61	58	58	59	59	60	60	60
	90th	69	69	69	70	70	71	71	68	68	68	69	69	70	70
	95th	71	72	72	73	73	74	74	71	71	71	71	72	73	73
	99th	77	77	77	78	79	79	79	76	76	76	77	77	78	78
11~12	50th	59	59	59	60	61	61	61	59	59	59	59	60	61	61
	90th	69	69	70	70	71	71	72	68	68	69	69	70	70	71
	95th	72	72	72	73	74	74	74	71	71	71	72	72	73	73
	99th	77	77	78	78	79	80	80	76	76	77	77	78	78	79
12~13	50th	59	59	60	60	61	61	62	59	59	60	60	61	61	61
	90th	69	70	70	71	71	72	72	69	69	69	70	70	71	71
	95th	72	72	73	73	74	75	75	72	72	72	72	73	74	74
	99th	78	78	78	79	79	80	80	77	77	77	78	78	79	79
13~14	50th	60	60	60	61	61	62	62	60	60	60	61	61	62	62
	90th	70	70	70	71	72	72	72	69	70	70	70	71	71	72
	95th	73	73	73	74	74	75	75	72	72	73	73	74	74	74
	99th	78	78	79	79	80	80	81	77	77	78	78	79	79	80
14~15	50th	60	60	61	61	62	62	63	60	60	61	61	62	62	63
	90th	70	70	71	71	72	72	73	70	70	70	71	71	72	72
	95th	73	73	74	74	75	75	76	73	73	73	74	74	75	75
	99th	78	79	79	80	80	81	81	78	78	78	79	79	80	80
15~16	50th	61	61	61	62	62	63	63	61	61	61	62	62	63	63
	90th	71	71	71	72	72	73	73	71	71	71	71	72	73	73
	95th	74	74	74	75	75	76	76	73	74	74	74	75	75	76
	99th	79	79	80	80	81	81	82	79	79	79	79	80	81	81
16~17	50th	61	61	62	62	63	63	64	62	62	62	62	63	64	64
	90th	71	72	72	73	73	74	74	71	71	72	72	73	73	74
	95th	74	74	75	75	76	76	77	74	74	74	75	75	76	76
	99th	80	80	80	81	81	82	82	79	79	80	80	81	81	82
17~18	50th	62	62	63	63	64	64	65	62	62	63	63	64	64	65
	90th	72	72	73	73	74	74	75	72	72	72	73	73	74	74
	95th	75	75	76	76	77	77	78	75	75	75	76	76	77	77
	99th	80	81	81	82	82	83	83	80	80	80	81	81	82	82
18~19	50th	63	63	64	64	65	66	66	63	63	63	64	65	65	65
	90th	73	74	74	75	75	76	76	73	73	73	74	74	75	75
	95th	76	76	77	77	78	79	79	76	76	76	76	77	78	78
	99th	82	82	82	83	83	84	84	81	81	81	82	82	83	83

주 : 혈압 성장도표는 자동혈압계(Dinamap Procare 200)로 측정된 것으로서 수은혈압계 측정치와 비교시 주의를 요함

주 : 7~8은 만7세부터 만8세 미만에 해당하며, 다른 연령에도 동일하게 적용됨

주 : 6~7세(초1)는 7~8 혈압 기준치에 준해서 접근

참고자료 : 이종국 등. 2005년도 소아청소년 신체발육 및 혈압 표준치 제정사업 연구 보고서. 대한소아과학회, 질병관리본부, 2005



□ 연령별 신장 성장도표

연령	백분위수(남아)												
	1st	3rd	5th	10th	15th	25th	50th	75th	85th	90th	95th	97th	99th
6세(초1)	105.5	107.4	108.4	110.1	111.2	112.8	115.9	119.1	120.8	122.0	123.8	125.0	127.2
7세(초2)	111.0	113.1	114.2	115.9	117.0	118.8	122.1	125.4	127.3	128.6	130.5	131.7	134.1
8세(초3)	116.3	118.5	119.6	121.4	122.6	124.4	127.9	131.4	133.3	134.7	136.6	137.9	140.4
9세(초4)	121.3	123.6	124.8	126.6	127.9	129.8	133.4	137.1	139.1	140.5	142.5	143.9	146.5
10세(초5)	126.0	128.4	129.7	131.6	133.0	135.0	138.8	142.8	145.0	146.5	148.7	150.2	153.1
11세(초6)	130.6	133.2	134.6	136.8	138.3	140.5	144.7	149.0	151.4	153.0	155.5	157.1	160.2
12세(중1)	135.1	138.2	139.9	142.4	144.1	146.7	151.4	156.2	158.7	160.5	163.0	164.7	167.9
13세(중2)	140.5	144.2	146.1	148.9	150.8	153.6	158.6	163.5	166.1	167.8	170.3	171.9	174.9
14세(중3)	146.7	150.6	152.6	155.5	157.4	160.2	165.0	169.5	171.8	173.3	175.5	176.9	179.5
15세(고1)	153.1	156.5	158.2	160.8	162.5	164.9	169.2	173.2	175.3	176.6	178.6	179.9	182.2
16세(고2)	157.5	160.3	161.7	163.9	165.4	167.5	171.4	175.2	177.2	178.5	180.5	181.7	184.1
17세(고3)	159.8	162.2	163.5	165.5	166.9	168.9	172.6	176.4	178.4	179.7	181.8	183.1	185.5

연령	백분위수(여아)												
	1st	3rd	5th	10th	15th	25th	50th	75th	85th	90th	95th	97th	99th
6세(초1)	104.7	106.6	107.6	109.1	110.2	111.8	114.7	117.8	119.4	120.5	122.2	123.3	125.5
7세(초2)	110.2	112.2	113.2	114.8	116.0	117.6	120.8	124.1	125.9	127.1	128.9	130.2	132.5
8세(초3)	115.5	117.5	118.6	120.3	121.5	123.2	126.7	130.2	132.2	133.6	135.7	137.1	139.7
9세(초4)	120.7	122.8	124.0	125.8	127.1	129.0	132.6	136.5	138.7	140.2	142.5	144.1	147.0
10세(초5)	125.7	128.2	129.5	131.6	133.0	135.1	139.1	143.3	145.6	147.2	149.6	151.2	154.2
11세(초6)	130.9	133.8	135.3	137.6	139.2	141.5	145.8	150.0	152.3	153.9	156.1	157.6	160.4
12세(중1)	136.5	139.5	141.1	143.5	145.1	147.5	151.7	155.7	157.8	159.2	161.3	162.6	165.0
13세(중2)	141.8	144.7	146.2	148.4	149.9	152.0	155.9	159.7	161.6	162.9	164.8	166.0	168.3
14세(중3)	145.3	147.9	149.2	151.3	152.6	154.6	158.3	161.9	163.8	165.0	166.9	168.1	170.3
15세(고1)	146.8	149.3	150.6	152.6	154.0	155.9	159.5	163.0	164.9	166.1	168.0	169.2	171.4
16세(고2)	148.0	150.3	151.5	153.4	154.7	156.5	160.0	163.5	165.4	166.7	168.6	169.8	172.2
17세(고3)	149.0	151.0	152.2	153.9	155.1	156.9	160.2	163.7	165.6	166.9	168.8	170.1	172.6

참고자료 : 2017 소아청소년 성장도표(질병관리본부, 대한소아과학회)

□ 성별·연령별 정상 총콜레스테롤 참고치(mg/dL)

총콜레스테롤 백분위수	5th	75th	95th
6-9세 (초1~4), 남	126	172	191
6-9세 (초1~4), 여	122	174	209
10-14세 (초5~중3), 남	130	173	204
10-14세 (초5~중3), 여	124	174	217
15-19세 (고1~3), 남	114	167	194
15-19세 (고1~3), 여	125	175	212

참고자료 : 홍창의 소아과학. 제 9판, 안효섭편, 2007

[별표 2의 별첨 2]

건강검진 항목별 검진결과 기재요령

구분		작성요령
1. 신체의 발달 상황	판정기준일	생년월일과 측정년월일을 학교에 함께 통보해야 함
	키	검사 방법에 의거 cm 단위로 소수 첫째자리까지 기재
	몸무게	검사 방법에 의거 kg 단위로 소수 첫째자리까지 기재
	비만도	검사 방법에 의거 체질량지수를 구하고 구분 기재
2. 척추		척추 질환이 의심되는 경우 그 '이상 증상과 징후'를 기재 ※ 예시 : 척추 질환(전만, 측만, 후만 등)
3. 눈	시력	검사 방법에 의거 '나안' 및 '교정' 시력을 아라비아 숫자로 기재
	안질환	이상 유무에 따라 '없음', '결막염', '사시', '기타 증상과 징후'를 좌우 구분 기재
4. 귀	청력	이상 유무에 따라 '정상', '이상'을 좌우 구분 기재
	귓병	이상 유무에 따라 '없음', '중이염', '외이도염', '기타 증상과 징후'를 좌우 구분 기재
5. 콧병		이상 유무에 따라 '없음', '코결막염', '비염', '기타 증상과 징후'를 좌우 구분 기재
6. 목병		이상 유무에 따라 '없음', '편도비대', '목부위림프절비대', '갑상샘비대', "기타 증상과 징후"를 기재
7. 피부병		이상 유무에 따라 '없음', '아토피성피부염', '전염성피부염', '기타 증상과 징후'를 기재
8. 소변 검사	요단백	'음성(-)', '약양성(±) 또는 '양성(+1 ~ +4)'으로 기재
	요잠혈	'음성(-)', '약양성(±) 또는 '양성(+1 ~ +4)'으로 기재
9. 혈액 검사	혈당(식전)	검사치를 mg/dL 단위로 기재
	총콜레스테롤	검사치를 mg/dL 단위로 기재
	고밀도지단백(HDL) 콜레스테롤	검사치를 mg/dL 단위로 기재
	중성지방	검사치를 mg/dL 단위로 기재
	저밀도지단백(LDL) 콜레스테롤 (계산값)	검사치를 mg/dL 단위로 기재
	간세포효소(AST)	검사치를 U/L 단위로 기재
	간세포효소(ALT)	검사치를 U/L 단위로 기재
	혈색소	검사치를 g/dL 단위로 기재
10. 흉부방사선 검사		이상 유무에 따라 '정상', '비활동성', '결핵의심', 기타 이상(심장비대, 척추측만)이 있을 경우 함께 기재
11. 혈압		수축기 및 이완기 혈압을 mmHg 단위로 기재
12. 허리둘레		측정방법에 의거 cm 단위로 소수 첫째자리까지 기재
13. 기타		담당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추가하는 검사항목(검진비용이 추가되지 않는 경우에 한함)에 대한 결과에 대해 '검사항목' 및 그 결과를 '정상' 또는 '이상 증상과 징후'를 기재
14. 진찰 및 상담		담당의사가 과거병력, 생활습관, 외상 및 후유증, 일반상태에 대해 적절히 기재
15. 종합소견 및 가정에서 조치할 사항		검진 의사가 "문진표"·"진찰"·"상담"·"각종 검사 결과" 등을 최종 종합하여 - '정상', '정상(경계)' 또는 '정밀검사요함'으로 기재하고, - 종합소견 및 가정에서 조치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되, '정밀 검사요함'의 경우 해당 질환명이 아닌, 정밀검진이 필요한 증상과 징후에 대해 안내

참고자료 : 학생 건강검진 항목개선 연구. 교육부, 2016



【별첨 5-3】

학생건강기록부 전산처리 및 관리지침

[시행 2020.3.1.] [교육부훈령 제327호, 2020.2.13.,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학교건강검사규칙」에서 정한 학생건강기록부와 건강검사통계의 전산처리 및 관리요령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훈령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서 규정한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와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에 적용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전산자료"라 함은 학생건강기록부 및 관련 보조장부 등을 체계적으로 전산처리한 자료를 말한다.
2. "전산매체"라 함은 각종 전산자료가 기억·보관되어 있는 자기테이프, 디스크 등 보조기억매체를 말한다.
3. "사용자"라 함은 각급학교의 학생건강기록부에 관련되는 업무를 담당하는 교사(보건교사, 담임교사, 체육담당교사, 학교보건담당교사 등)를 말한다.
4. "원적교"라 함은 학생이 재입학, 전입학 및 편입학(이하 '재·전·편입학'이라 한다)한 학교의 이전 학교를 말한다.

제4조(처리요령) ① 학생건강기록부 전산처리를 위한 자료입력은 당해 업무를 담당하는 사용자가 수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전산입력은 한글 또는 아라비아숫자 등으로 한다.

③ 학생건강기록부 작성에 필요한 보조장부는 각 학교 실정에 맞게 작성·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시·도 교육청별로 통일을 기하기 위하여 일정한 서식을 작성·활용할 수 있다.

④ 학생이 재·전·편입학할 때와 상급학교에 진학할 때에는 학생건강기록부 전산매체와 함께 용지에 출력한 출력물을 원적교에서 재·전·편입학 또는 진학하는 상급학교로 이관하며, 「학교건강검사규칙」제9조4항에 따른 학생건강체력평가시스템의 신체의 능력검사와 관련된 전산매체는 학생건강기록부 전산매체와 동일하게 처리한다.

제5조(자료입력항목 및 출력서식) ① 학생건강기록부 전산처리를 위한 자료입력 항목은 「학교건강검사규칙」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② 학생건강기록부 서식은 전산처리된 출력서식(백상지 80g/m², 용지규격 210×297mm : A4)이 되며, 학생개인별 2쪽 분량 단면인쇄로 한다.

제2장 학생건강기록부 전산처리 요령

제6조(인적사항) 「학교건강검사규칙」 별지 제1호서식 학생건강기록부 제1쪽의 ‘인적사항’은 다음과 같이 입력한다.

1. 학생의 성명은 한글로 입력한다.
2. 학생의 성별은 "남" 또는 "여"로, 주민등록번호는 아라비아숫자로 입력한다.
3. ‘학교’, ‘학년, 반, 번호, 담임성명’은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의 작성 및 관리지침"에 준하여 입력하며, 학년도중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는 당해 학년말을 기준으로 한다.

제7조(감염병예방접종) 「학교건강검사규칙」 별지 제1호서식 학생건강기록부 제1쪽의 ‘감염병예방접종’은 표준예방접종지침(보건복지부, 예방접종심의위원회)에 의한 소아표준예방접종 대상감염병에 한하여 다음과 같이 입력한다.

1. ‘취학전 예방접종’란에는 초등학교의 장이 디프테리아, 백일해, 파상풍, 홍역, 유행성이하선염, 풍진, 회색질척수염(Polio), 결핵, 일본뇌염, 수두, B형간염 등에 대해 「학교보건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예방접종 완료여부를 검사하여 접종을 완료하였을 경우에는 "접종"으로 입력하고, 접종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미접종"으로 입력하며, 비고란에는 접종 금기자 여부를 기재(선택을 통한 자동입력기능 내장)한다.
2. ‘취학후 예방접종’란에는 예방접종을 실시하였을 경우에 한하여 ‘학교/학년’란에는 "초·중·고" 및 "1년·2년·3년" 등으로, ‘대상감염병’란에는 "감염병명"을 한글로, ‘접종일’은 "연·월·일"을 아라비아숫자(예 : 초/3년, 일본뇌염, 1999. 05. 17)로 입력한다.

제8조(신체의 발달상황) ① 「학교건강검사규칙」 별지 제1호서식 학생건강기록부 제2쪽 ‘신체의 발달상황’란의 ‘키·몸무게’는 아라비아숫자로 소수 첫째 자리까지 입력한다.

② ‘비만도’란은 입력한 키와 몸무게를 저장하면 자동적으로 계산되어 나타난다. 산출된 체질량지수(BMI, Body Mass Index)를 ‘대한소아과학회에서 정한 표준성장곡선’에 대비하여 85백분위수 이상 95백분위수 미만인 경우에는 "과체중", 95백분위수 이상인 경우에는 "비만", 5백분위수 미만인 경우에는 "저체중", 이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는 "정상"으로 판정한다.(전산처리프로그램에 비만도 자동산출기능 내장).

<비만도 체질량지수 산출의 기본공식>

$$\text{체질량지수(kg/m}^2\text{)} = \text{실측체중(kg)} / \text{신장(m)}^2$$

제9조(건강검진 및 별도검사 현황) ① 「학교건강검사규칙」 별지 제1호서식 학생건강기록부 제2쪽의 ‘건강검진 현황’ 중 ‘건강검진’과 ‘구강검진’은 검진일은 "연·월·일"을 아라비아숫자로, ‘검진기관’은 한글로 입력한다.

- ② 「학교건강검사규칙」 별지 제1호서식 제2쪽 ‘별도검사 현황’은 다음과 같이 입력한다.
1. ‘검사일자’란에는 "연·월·일"을 아라비아숫자로 입력한다.
2. ‘검사명’란에는 시행한 별도검사명(소변검사, 결핵검사, 구강검사, 시력검사)을 한글로



입력한다.

3. '검사기관'란에는 별도검사를 시행한 기관명을 한글로 입력한다.

제10조(신체의 능력검사) 「학교건강검사규칙」 별지 제1호서식 제2쪽 '신체의 능력'은 각 항목별 검사결과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력한다.

1. '왕복오래달리기'란에는 실시한 횟수(첫번째 '△'는 측정횟수에 포함)를 아라비아숫자로 입력하되, "50회"의 경우 "50"과 같이 표기한다.
2. '오래달리기걷기'란에는 분·초 단위(다만, 초미만의 단위가 0으로 끝나는 경우 이외에는 0.1초 단위에서 버림하여 6분2.0초는 6분2초, 6분2.1초는 6분2초를 적용)로 측정된 기록을 아라비아숫자로 입력하되, "6분6초"의 경우 "6.06"과 같이 소수점이하의 자리수는 두 자리를 갖추어 표기한다.
3. '스텝검사'란에는 계산된 PEI 값을 0.1점 단위(0.01단위에서 올림하여 기록)의 아라비아숫자로 입력하되, "70.5점"의 경우 "70.5"과 같이 표기한다.(전산처리프로그램에 PEI 자동산출기능 내장).
4. '앉아윗몸앞으로굽히기'란에는 0.1센티미터 단위로 측정된 기록(2회 측정된 기록 중 높은 기록)을 아라비아숫자로 입력하되, "9.3센티미터"의 경우 "9.3"과 같이 표기한다.
5. '종합유연성'란에는 측정된 점수를 모두 합산하여(오른쪽 왼쪽 모두 성공하면 2점, 한쪽만 성공하면 1점, 모두 실패하면 0점) 아라비아숫자로 입력하되, "6점"의 경우 "6"과 같이 표기한다.
6. '(무릎대고)팔굽혀펴기(중·고)'란에는 실시한 횟수를 아라비아숫자로 입력하되, "9회" 실시한 경우 "9"와 같이 표기한다.
7. '윗몸말아올리기'란에는 실시한 횟수를 아라비아숫자로 입력하되, "20회" 실시한 경우 "20"와 같이 표기한다.
8. '악력'란에는 0.1킬로그램 단위(0.01킬로그램 단위에서 올림하여 기록한다)로 측정된 기록(오른쪽 2회·왼쪽 2회, 총 4회 측정된 기록 중 최고 높은 기록)을 아라비아숫자로 입력하되, "20.5킬로그램"의 경우 "20.5"와 같이 표기한다.
9. '50미터 달리기'란에는 0.01초 단위까지 측정된 기록을 아라비아숫자로 입력하되, '8.23초'의 경우 "8.23"와 같이 표기한다.
10. '제자리멀리뛰기'란에는 0.1센티미터 단위(0.1센티미터 미만은 측정하지 아니한다)로 측정된 기록(2회 측정된 기록 중 높은 기록)을 아라비아숫자로 입력하되, "89.3센티미터"의 경우 "89.3"와 같이 표기한다.
11. '체지방률'란에는 0.1퍼센트 단위로 측정된 기록을 아라비아숫자로 입력하되, "18.5퍼센트"의 경우 "18.5"와 같이 표기한다.
12. '신체의 능력점수'란은 실시한 신체의 능력검사의 기록을 「학교건강검사규칙」 별표5에 따라 산정한 항목별 점수를 합산하여 아라비아숫자로 입력한다.
13. '신체의 능력등급'란은 '신체의 능력점수'를 「학교건강검사규칙」 별표6에 따라 산정된

등급을 아라비아숫자로 입력한다.

제3장 학생 건강검사 통계처리

제11조(학생 신체의 발달상황 통계표) 「학교건강검사규칙」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학생 신체의 발달상황 통계표는 다음과 같이 아라비아숫자로 입력한다.(자동 산출기능 내장)

1. 학생 신체의 발달상황 통계표는 연도별, 초·중·고등학교별, 남·여별로 작성하며, ‘기관명’에는 학교명 또는 교육청명을 입력한다.
2. ‘학년’란에는 초등학교의 경우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중학교는 1학년부터 3학년까지, 고등학교는 1학년부터 3학년까지 통계자료를 입력한다.
3. ‘키’는 센티미터를 단위로하여 학년별, 남·여별 검사인원수 전체의 키를 합산하여 그 인원수로 나눈 평균값을 소수첫째자리까지 입력한다.
4. ‘몸무게’는 킬로그램을 단위로 하여 학년별, 남·여별 검사인원수 전체의 몸무게를 합산하여 그 인원수로 나눈 평균값을 소수첫째자리까지 입력한다.
5. ‘비만율’은 수검자 인원대비 저체중·정상·과체중 및 비만인 수검자 인원의 비율을 소수첫째자리까지 입력하고, ()에는 해당 성별·학년별 수검 인원수를 입력한다.
6. ‘수검자 인원’은 학년별, 남·여별 검사인원수와 합계를 각각 입력한다.

제12조 삭제 <2020. 2. 13.>

제13조(학생신체의 능력검사 통계표) ① 「학교건강검사규칙」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학생신체의 능력검사 통계표 중 ‘등급별 분포 통계’란은 다음과 같이 입력한다.(전산처리프로그램에 학생신체의 능력검사 각종 통계 자동산출기능 내장)

1. ‘검사인원수’란은 신체의 능력검사에 참여한 학생수를 학년별, 남·여별로 분류하여 총 인원수를 아라비아숫자로 입력한다.
2. ‘인원’란에는 신체의 능력검사에 참여한 학생건강기록부상의 신체의 능력등급이 동일한 학생수를 학년별, 남·여별로 분류하여 아라비아숫자로 입력한다.
3. ‘백분률<>’란은 제1호에 따른 검사인원수에서 각 급의 인원이 차지하는 비율을 백분율로 소수점이하 첫째자리(소수점이하 둘째자리는 측정하지 아니한다)까지 입력하되, "8.4"의 경우 "8.4"와 같이 표기한다.

② 「학교건강검사규칙」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학생신체의 능력검사 통계표 중 ‘항목별 평균기록 통계’란의 자료입력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왕복오래달리기’란에는 제1항제1호의 ‘검사인원수’에 대한 왕복오래달리기의 기록을 누계하여 산술평균한 값을 소수점이하 첫째자리(소수점이하 둘째자리는 계산하지 아니한다)까지 아라비아숫자로 입력하되, "50.2회"의 경우 "50.2"와 같이 표기한다.
2. ‘오래달리기걷기’란에는 제1호의 방법에 따라 산출한 값을 분·초 단위(초 단위 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한다)까지 아라비아숫자로 입력하되, "6분6초"의 경우 "6.06"과 같이 소수점이하 자리수는 두자리를 갖추어 표기한다.



3. ‘스텝검사’란에는 제1호의 방법에 따라 산출한 값을 소수점이하 첫째자리(소수점이하 둘째자리는 계산하지 아니한다)까지 아라비아숫자로 입력하되, "70.3점"의 경우 "70.3"과 같이 표기한다.
4. ‘앉아윗몸앞으로굽히기’란에는 제1호의 방법에 따라 산출한 값을 소수점이하 첫째자리(소수점이하 둘째자리는 계산하지 아니한다)까지 아라비아숫자로 입력하되, "9.3센티미터"의 경우 "9.3"과 같이 표기한다.
5. ‘종합유연성’란에는 제1호의 방법에 따라 산출한 값을 소수점이하 첫째자리(소수점이하 둘째자리는 계산하지 아니한다)까지 아라비아숫자로 입력하되, "6.4점"의 경우 "6.4"과 같이 표기한다.
6. ‘(무릎대고)팔굽혀펴기(중·고)’란에는 제1호의 방법에 따라 산출한 값을 소수점이하 첫째자리(소수점이하 둘째자리는 계산하지 아니한다)까지 아라비아숫자로 입력하되, "9.1회" 실시한 경우 "9.1"와 같이 표기한다.
7. ‘윗몸말아올리기’란에는 제1호의 방법에 따라 산출한 값을 소수점이하 첫째자리(소수점이하 둘째자리는 계산하지 아니한다)까지 아라비아숫자로 입력하되, "20.6회" 실시한 경우 "20.6"와 같이 표기한다.
8. ‘악력’란에는 제1호의 방법에 따라 산출한 값을 소수점이하 첫째자리(소수점이하 둘째자리는 계산하지 아니한다)까지 아라비아숫자로 입력하되, "20.5킬로그램"의 경우 "20.5"와 같이 표기한다.
9. ‘50미터 달리기’란에는 제1호의 방법에 따라 산출한 값을 소수점이하 둘째자리(소수점이하 셋째자리는 계산하지 아니한다)까지 측정된 기록을 아라비아숫자로 입력하되, ‘8.23초’의 경우 "8.23"와 같이 표기한다.
10. ‘제자리멀리뛰기’란에는 제1호의 방법에 따라 산출한 값을 소수점이하 첫째자리(소수점이하 둘째자리는 계산하지 아니한다)까지 아라비아숫자로 입력하되, "89.3센티미터"의 경우 "89.3"와 같이 표기한다.
11. ‘체질량지수(BMI)’란에는 제1호의 방법에 따라 산출한 값을 소수점이하 첫째자리(소수점이하 둘째자리는 반올림하여 계산한다)까지 아라비아숫자로 입력하되, "18.3kg/m²"의 경우 "18.3"과 같이 표기한다.
12. ‘체지방률’란에는 제1호의 방법에 따라 산출한 값을 소수점이하 첫째자리(소수점이하 둘째자리는 계산하지 아니한다)까지 아라비아숫자로 입력하되, "18.5퍼센트"의 경우 "18.5"와 같이 표기한다.

제4장 자료의 보관 및 관리

제14조(자료의 보관) ① 학생이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에는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12년간 계속적으로 기록·관리해온 학생건강기록부 출력물(종전의 건강기록부를 포함한다)을 본인 또는 보호자에게 교부하고, 전산매체에 이를 저장하여 「공공기록물 관리

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록물관리기관에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② 학생이 휴학, 퇴학, 사망 및 중·고등학교 미진학시에는 최종적으로 재적하였던 학교에서 학생건강기록부 전산자료(종전의 건강기록부를 포함한다) 및 출력물을 5년간 당해 학교에 보존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지 않는 출력물과 보조부 등은 사용 용도가 소멸되는 즉시 폐기한다.

제15조(프로그램관리) ① 학생건강기록부 전산처리에 사용하는 프로그램의 등록 및 사용에 대해서는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 학생건강기록부에 사용되는 전산프로그램이나 파일의 구조 등은 교육부장관의 승인 없이 이를 변경할 수 없다.

제16조(자료의 활용 및 출력물관리) ① 학생건강기록부의 전산자료, 관련내용이 수록된 파일 및 그 출력물은 「학교건강검사규칙」 제9조에 따라 필요시 학생 및 보호자에게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요주의자 등 건강에 이상이 있는 학생에 대한 건강상담 및 보건교육·치료지도를 위하여 활용할 수 있다. 다만, 「학교건강검사규칙」 제9조제4항에 따라 신체의 능력검사는 학생 및 보호자에게 측정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제공하여야 한다.

② 학생건강기록부의 전산자료 및 그 출력물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규 및 지침에 의하여 민원인에게 교부되거나, 학생의 전·편입학, 상급학교 진학 등 공무에 제공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외부로 반출 또는 유출할 수 없다.

제17조(자료의 정비) ① 각급 학교의 장은 매 학년말 학생건강기록부 입력사항을 각종 보조부 내용과 반드시 대조·확인하여야 하며 오류가 발견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수정하여야 한다. 단, 재·전·편입학 등 학생 재적사항의 변동사항에 대해서는 당일 처리와 동시에 대조·확인하여야 한다.

② 완료된 건강기록부의 내용을 수정 또는 삭제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거하여 작성한다.

제18조(준용 등) ① 학생건강기록부 전산처리 업무에 있어 이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법규를 준용한다.

② 학생건강기록부등의 전산처리 방법과 처리결과 확인 등 이 지침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9조(유효기간) 이 훈령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칙 <제327호, 2020. 2. 13.>

이 훈령은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첨 6】

(1면)

학생건강검진기관 계약 관련 서류 간소화방안으로 마련한 ‘학생 건강검진 승낙서’에 대한 관계자 의견수렴 결과 작성된 서식(안)으로 학교 필요에 따라 검진기관 계약 서류로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학생 건강검진 승낙서

■ 학생 검진기관으로서 아래 계약내용, 학생건강검진 유의사항 및 준수사항 등 검진기관으로서의 책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승낙합니다.(계약서 작성 생략)

□ 검진기관		(전화번호 :)	
병원명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원장성명	(인)

□ 계약내용			
계약건명	20 년도 ○○학교 학생 건강검진		
1인당검진비용	1학년	4학년	4학년 비만학생
검진대상	1, 4학년 학생 명 중 방문학생		
검진기간	20 년 월 일 ~ 월 일	검진완료일	20 년 월 일
계약보증금	계약금액(검진대상인원×검진비용)의 10%		
지연배상금	검진완료 후 30일 이내에 결과통보를 하지 않는 경우 매1일마다 청구금액(검진인원*검진비용)의 1,000분의 1.3에 해당하는 지연배상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하여야할 금액은 계약대가에서 상계할 수 있다.		

(2면)

□ 검진기관의 학생건강검진 유의사항 및 준수사항

1. 건강검진 항목 및 방법 : 검진기관은 학교건강검사규칙 제5조제2항 관련 [별표2] 건강검진 항목 및 방법에 따라 적절한 의료장비를 사용하여 학생 개인별로 정밀하게 실시한다.
2. 건강검진 결과 판정 및 기재방법 : 검진기관은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학교 건강검진 결과 판정 및 기재 방법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검진결과를 판정, 기재한다.
3. 검진결과 통보 : 검진기관은 건강주의, 질환의심 또는 유소견자의 경우 치료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건강검진 완료 후 30일 이내에 검진학생에 대하여 학생건강검사(구강검진)결과통보서를 2부 작성하여 1부는 학생 또는 그의 보호자, 1부는 학교로 통보한다.
4. 검진기관 준수사항
 - 가. 검진기관은 검진실시에 앞서 검진에 필요한 일반검진문진표, 구강검진문진표, 검진안내서(검진장소, 검진시간, 검진절차 및 검진 시 유의사항 등) 등을 사전에 학생들에게 배부
 - 나. 검진기관의 「인력·시설 및 장비기준」을 반드시 충족하고 검진업무 수행
 - 다. 검진기관은 흉부방사선 검사를 위한 방사선발생장치 및 방어시설 검사성적서, 방사선발생장치 설치 및 사용신고필증 사본을 비치하고, 검진장비에 대한 정도관리 철저
 - 라. 무자격자(의사가 아닌 간호사, 치과위생사 등)의 검진행위 금지
 - 마. 검진결과 통보시기 준수
 - 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학생의 인적사항, 검진자료 등의 개인정보 보호 및 검진통계자료 보안관리 철저
5. 사고책임 : 검진기관은 학생 건강검진에 따른 제반 의료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검진과 관련하여 발생한 의료사고는 검진기관이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6. 기타 비용 : 검진기관은 학생 건강검사에 따른 제비용을 부담하고, 계약금액이외의 여하한 명목의 경비를 “계약자”에게 요구할 수 없다.
7. 검진비용의 청구·지급 : 검진기관은 검진비용을 청구할 수 있으며, 학교는 청구일로부터 5일 이내(토요일, 공휴일 제외)에 지급한다.
8. 계약조건 : 이 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 일반조건(행정안전부 예규), ○○학교 청렴계약 특수조건을 적용한다.(청렴계약특수조건은 학교에서 교부)
9. 계약 시 제출서류 :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수의각서(학교에서 서식 제공), 통장사본



참고자료 19

2020년 주요 변경내용

구 분	2019년 주요 내용	2020년 주요 변경내용	비고
I. 학교보건 운영관리 내실화	2. 보건교육 및 업무관리 효율화	(5쪽) □ 추진과제 가. 학교 교육과정 편성 운영을 통 한 체계적인 보건교육 실시 ○ 학교운영계획 수립시 ...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 학교운영계획 수립시 ... 학교 교 육과정 편성·운영 － (모든 학교) 최소한 1개 학년 이 상을 대상으로 교과와 창의적 체 험활동을 통해 연간 17시간* 이상 보건교육 실시(단, 보건과목 운영 학교는 제외 가능) *1시간 기준: 초 40분, 중 45분, 고 50분 － (보건과목 운영학교) 연간 17차시 이상 시수를 확보하여 교육과정 운영토록 필요한 사항 조치 ○ 척추염·급음증 예방, 건강한 체중 관 리, 구강 및 시력 건강관리 등 학생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교육과정과 연 계한 보건교육 활성화	<변경> 교육부 내용 반영
		(5쪽) 나. 행·재정 지원 강화 ○ 보건교사 수업 중 학생건강관리 및 응급상황에 대한 대응체계 구축 － 특히, 학생수가 많거나 소아당뇨 등 특별관리·보호 학생이 있는 학 교는 원활한 응급처치 및 건강관 리를 위해 보건교사 업무 적정화 노력	<추가>
	4. 학생건강 증진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	(9쪽) □ 추진과제 가. 학생건강증진 분야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 ○ 도내 우수사례 발굴 및 전파를 위한 ‘학생건강증진 프로그램 우 수사례 공모전’ 개최 시 적극 참 여(선정자에 대한 표창 등 인센 티브 제공) (10쪽) ○ 도내 ... 적극 참여(선정자에 대한 표창, 국외연수 등 인센티브 제 공)	<변경>

구 분		2019년 주요 내용	2020년 주요 변경내용	비고
II. 학생 건강 증진 활동 활성화	1. 학생 건강검사 관리 철저	(13쪽) □ 현황 ○ 초·중·고등학교에서는 「학교보건법」 2006년부터 재학생에 대한 건강 검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u>학교별로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해야 하는 건강조사가 제대로 실시되지 않음</u> － <u>학교건강검사의 결과 분석과 학생건강증진계획 수립 시 학생 건강조사 및 건강검진 결과 분석 자료의 활용 미흡</u> － <u>일부 건강검진 기관의 형식적·불성실한 검진에 따른 학부모 민원 발생</u>	(13쪽) ○ 초·중·고등학교에서는 「학교보건법」 및 「학교건강검사규칙」에 따라 재학생에 대한 건강 검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 학기초에 신체발달상황 및 건강조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아 학교별 학생건강증진계획 수립 시 학생건강조사 결과 활용 미흡 － 2005년 제도개선 이후 학생들의 질병향상 및 건강행태 변화 등을 고려하여 건강검진 항목 및 문진표, 건강조사 시기 등 보완 필요	<변경> 교육부 내용 반영
		(13~14쪽) □ 추진과제 가. 건강검사 실시계획 수립	(14쪽) ○ 2020.3.1. 시행되는 「학교건강검사규칙」에 따라 학생 건강검사 추진 － 건강검진 일부 항목 삭제 및 추가, 문진표와 건강조사서 분리 ※ 건강조사는 전교생을 대상(건강검진 대상 학년 포함)으로 학교장이 실시 － 비만도는 ‘체질량지수(BMI)’ 기준 산출방식 일원화 － 신체발달 측정 및 건강조사는 매 학년도 1학기까지 완료 － 학생건강증진 정책 추진 등을 위해 유병률이 높은 시력 및 구강, 혈액검사 등 일부 항목에 대한 검사 결과 제출 ○ 학생건강기록부 전산처리 및 관리지침(교육부훈령 제327호, 2020.3.1.시행), 학교 건강검진 실시방법·결과 판정 및 기재방법 등에 관한 기준(교육부고시 제2020-217호, 2020.3.1.시행)에 따라 건강검사결과 관리 철저	<추가> 규칙 개정 사항 반영 각종 지침 및 기준 개정



구 분		2019년 주요 내용	2020년 주요 변경내용	비고
II. 학생 건강 증진 활동 활성화	1. 학생 건강검사 관리 철저	(16쪽) 다. 검진기관 선정 및 방법 ○ 건강검진 절차 - 학교장은 지정 검진기관에 검진대상자 명부를 전산출력물 또는 파일로 제공하여 검진대상자 여부와 검사항목 확인 대조에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	(16쪽) 학교장은 지정 검진기관에 검진대상자 명부를 전산출력물 또는 파일로 제공하여 검진대상자 여부와 검사항목 확인 대조에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	<삭제> 개인정보 관리 철저
		(17쪽) 마. 검사결과의 적극 활용 및 민원 대응 ○ 검사결과에 따라 건강 상담, 질병의 예방조치 및 치료 ... 적절한 대책 마련·추진 - <u>검진기관과 연계한 학교 의사 등을 위촉하여</u>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관리 지원	(18쪽) - 보건의료기관, 체육단체 및 대학 등 협조를 받아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관리 지원	<변경> 학교 의견 반영 (학교건강검 사규칙 조문 내용으로 변경)
	2. 학생 정신건강 지원 강화	(19쪽) □ 현황 ○ <u>개인사정(인식부족, 경제사정 등)으로 전문기관 미연계 학생에 대한 정신건강 전문가 학교방문 관리 및 치료비 지원 등 촘촘한 지원망 구축·운영</u>	(삭제)	<삭제> 교육부 내용 반영
		(20~21쪽) □ 추진과제 가.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 철저 ○ (검사대상) <u>초14학년, 중고 1학년</u>	(21~23쪽) ○ (검사대상) 초(공민)14학년, 중(고 등공민) 1학년, 고(고등기술) 1학년, 특수학교, 각종학교 ※ 단, 검사 주체인 학교장이 교육청과 협의하여 대상자(학생) 제외* 처리 가능 (제외 예시: 신체적·인지적으로 검사가 불가능한 경우, 대상자가 성인인 경우 등)	<변경> 교육부 내용 반영

구 분	2019년 주요 내용	2020년 주요 변경내용	비고
II. 학생 건강 증진 활동 활성화	2. 학생 정신건강 지원 강화 ○ (검사절차) 2단계 검사(학교내 검사 1차, 전문기관 2차) 절차 유지 ○ (검사시기) 교육청 및 학교 기본 계획에 따라 4월중 실시 (21쪽) ○ 전문적인 치료지원이 ... 학교 지원시스템 구축·운영 <표> [학생정신건강 지역협력모델 구축·지원 사업] (추진방법) 교육지원청 단위 학교-지역사회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 및 체계적인 역할분담, 학교 지원 ※ 학교 및 지역사회 유관기관 체계적인 역할분담 및 유기적인 연계·협력체계 구축	○ (검사절차) 2단계 검사(학교내 검사 1차, 전문기관 2차) 절차 유지 - 1차 학교 온라인(NEIS)/서면검사: 검사대상 학교의 학생 대상 특성검사 - 2차 전문기관 심층검사: Wee센터, 정신건강복지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의료기관 등에서 심층평가 실시 ○ (검사도구) 학교급별 1종 ○ (평가영역 및 문항) 학생의 정서행동문제, 성격 특성을 평가하며, 문항에 대한 신뢰도 확보 및 자살위기학생 선별 문항 등 포함 ○ (검사기간) 2020.4.1.(수)~4.30.(목) (23쪽) <표> [학생정신건강 학교-지역사회 연계 지원체계 구축·운영] (추진방법) 교육지원청이 중심이 되어, 학교-지역사회 ...학교 지원 ※ 교육지원청은 자체 추진방안 마련, 전체 학교에서 학생 관리에 필요한 지역사회 전문(가)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	<변경> 교육부 내용 반영
	3. 건강증진학교 운영 활성화 (23쪽) □ 추진과제 가. 교육과정과 연계한 건강증진 활동 추진	(25쪽) 가. 지역별 '건강증진학교' 운영 활성화 ○ 교육장은 기존의 교육부지원 건강증진학교 운영사례, 자료 등을 참고하여 지역별로 예산확보 및 추진체계를 마련하여 건강증진학교 적극 운영	<추가> 교육부 내용 반영 (교육부 주관 건강증진학교 사업 중단)



구 분	2019년 주요 내용	2020년 주요 변경내용	비고	
II. 학생 건강 증진 활동 활성화	3. 건강증진학교 운영 활성화	※ 교육부 : 건강증진학교 운영실적, 사례 등 자료집 발간 보급 예정('20년 초) / 건강증진학교 운영에 관한 매뉴얼 및 참고자료는 '학생건강정보센터(www.shoolhealth.kr)' 탑재 ○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기획추진한 건강증진 우수 프로그램(사업) 발굴보급, 운영성과 발표회 등을 통한 건강증진학교 일반화 추진 - 우수사례 선정 학교에 대한 표창, 국외연수 등 인센티브 제공 예정 ※ 도교육청 주관 '학생건강증진 프로그램 우수사례 공모전' 계획 별도 안내('20.10월경)		
III. 감염병 및 응급상황 관리 강화	2. 감염병 예방 및 위기대응력 제고	(39쪽) □ 추진과제 가. 감염병 예방 대응 기반 조성 ○ 만12세 이하 어린이 대상 인플루엔자 무료예방접종 지원 사업 적극 홍보	(41쪽) ○ 정부의 인플루엔자 무료예방접종 지원 사업 적극 홍보 ※ 보건당국: '20~'21절기부터 만13세 (중1학년)까지 무료접종 확대, 백신 3가→4가 변경 예정	<변경> 교육부 내용 반영
		(40쪽) 나. 감염병 예방교육 및 연수 강화 ○ 학부모용 홍보자료 가정과 연계한 감염병 예방관리 강화	(42쪽) ○ 교육부 및 도교육청에서 제공하는 '학생 감염병 감시정보' 적극 활용하여 학생 및 학부모 감염병 예방교육 및 안내 강화 ※ (교육부) 매주 학생건강정보센터 탑재(주간분석자료), (경남교육청) 매월 공문 안내(월별 감시정보) ○ 학부모용 ... 감염병 예방관리 강화 - 가정내 개인위생 관리 및 지도 협조, 감염병 유행시 유의사항 등을 가정통신문, SNS 등을 통해 적극 홍보	<추가> 교육부 내용 반영 등

구 분		2019년 주요 내용	2020년 주요 변경내용	비고
		(41쪽) 다. 감염병 발생 보고 및 확산 차단 등 후속 대응 철저	(43쪽)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2020.1.1.) － 감염병 분류체계, 신고기간, 보고기간 및 대상, 신고의무자 벌칙 규정(벌금) 등 개정 － 종전 질환별 특성(물/식품매개, 예방접종대상 등)에 따른 군(群)별 분류에서 심각도·전파력·격리수준을 고려한 급(級)별 분류로 개편 ※ (종전) 제1군~제5군 및 지정감염병 총 80종 → (변경) 제1급~제4급 감염병 총 86종	<추가> 법령 개정사항 반영
Ⅲ. 감염병 및 응급상황 관리 강화	2. 감염병 예방 및 위기대응력 제고	(41쪽) ○ 학생 감염병 확진 및 의심환자 발생시 NEIS 즉시 보고 ... 확산 방지 조치 철저 － (학교) 학생 및 교직원이 <u>법정 제1군(콜레라,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세균성이질, 장출혈성 대장균감염증, A형간염)</u> , <u>홍역, 결핵</u> 에 감염된 경우 즉시 보건소에 유선 및 서면으로 신고	(44쪽) ○ 학교 내 감염병 발생 시 감염병 환자(의심자 포함) 관리 강화 － 학생 감염병 ... 확산 방지 조치 철저 ※ 환자 발생시 조치내용 및 절차는 「학생 감염병 예방위기대응 매뉴얼」에 따르며, 등교중지 및 출석인정 등 출결상황 관리는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및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에 따름 － (학교) 학생 및 교직원이 <u>결핵, 홍역, 콜레라,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세균성이질,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A형간염</u> 에 감염된 경우 즉시 보건소에 유선 및 서면으로 신고	<변경> 교육부 내용 반영 법령 개정사항 반영



구 분	2019년 주요 내용	2020년 주요 변경내용	비고
Ⅲ. 감염병 및 응급상황 관리 강화	(43쪽) □ 현황	(52쪽) ○ 「당뇨병 학생 지원 가이드라인 보급(경상남도교육청 체육예술건강 강화-10083, 2019.9.24.)」	<추가>
	(45쪽) 다. 소아당뇨(제1형 당뇨) 학생에 대한 지원·관리체계 강화 ○ 학교장은 담임교사, 보건·영양체 육교사 등으로 하여금 필요한 지 원방안을 마련·시행하도록 조치	(49쪽) ○ 기 보급된 「당뇨병 학생 지원 가 이드라인」에 따라 학교장은 담임 교사, 보건·영양체육교사 ... 지원 방안을 마련·시행하도록 조치 <신설> ○ 학교장은 질병이나 장애로 특별 관리·보호가 필요한 학생을 위해 보조인력을 둘 수 있음 ※ 학교보건법 제15조의2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 <신설> [학교에서의 당뇨병 학생 지원 절차] * 별첨 참고	<추가> 교육부 내용 반영
V. 참고자료	참고자료 6	(87쪽) <감염병 분류 및 종류(80종)> * 별첨 참고	(91쪽) <감염병 분류 및 종류(86종)> * 별첨 참고
	참고자료 12	(97쪽) <학교에서의 결핵환자 발견과 관리> 나. 접촉자조사 실시 기준 - 지표환자의 객담을 포함한 호 흡기검체 검사 결과 양성으로 확 인된 경우 - 집단 내에서 6개월 이내에 활 동성 결핵환자가 2명 이상 발생 한 경우	(100~102쪽) <학교에서의 결핵환자 발견과 관리> 나. 결핵역학조사 방법 및 절차<추 가> 다. 접촉자조사 실시 기준 - 지표환자의... 양성으로 확인된 경우 - 지표환자의 객담을 포함한 호흡 기검체 검사 결과 음성이나, 흉부 X선 상 공동이 확인된 경우 - 집단 내에서 6개월 이내에 ...2 명 이상 발생한 경우

구 분	2019년 주요 내용	2020년 주요 변경내용	비고
V. 참고자료	참고자료 16	(108쪽) <학생 건강검사 실시요령> 2. 세부 실시내용 ○ 신체의 발달상황 - 검사시기: 연중 ○ 건강조사 - 조사시기: 4월 중 - 조사대상: 초중고등학교(특수 학교·각종 학교 포함) 학생 - 조사방법: 설문조사(초등학교 2·3·5·6학년 및 중·고 2·3학년)	<변경> 규칙 변경사항 반영
		(113쪽) - 검사시기: 1학기말까지 완료 ○ 건강조사 - 조사시기: 4월중(1학기말까지 완료) - 조사대상: 초중고등학교(특수학교·각종 학교 포함) 학생(전 학년-건강검진 대상학생 포함) - 조사방법: 설문조사(전교생)	
		(117쪽) III. 별도 건강검사 ○ 소변검사 - 검사항목: 당, 단백, 잠혈, 빌리루빈(담즙), 유로빌리노젠(간기능<5종> IV. 중학생 결핵 조기발견 사업 ○ 검사대상: 중학교2학년(읍면소재지 중학교만 대상), 중학교3학년, 검진희망 교직원	
		(121쪽) III. 별도 건강검사 ○ 소변검사 - 검사항목: 당, 단백, 잠혈, pH IV. 중학생 결핵 조기발견 사업 ○ 검사대상: 중학교2학년(18개 시군 읍면지역 및 마산·진해 동지역), 중학교3학년, 검진희망 교직원	
		(143쪽) [별첨 5-1] <학교건강검사규칙> (149쪽) <학교건강검사규칙> - 신규대조표 <추가> - 조문내용 <변경> [시행2020.3.1.][교육부령 제198호 2020.1.9. 일부개정]	<변경> 개정
		(147쪽) (155쪽) <신체의 발달상황에 대한 검사항목 및 방법>(개정 2020.1.9.) - 비만도: 체질량지수(BMI) 산출 방식으로 일원화	
		(149쪽) <건강검진 항목 및 방법> - 근·골격 및 척추 - 목병/갑상선비대 - 구강/치아상태/우식치아, 우식 발생위험치아, 결손치아 검사	<변경> 개정
		(157쪽) <건강검진 항목 및 방법>(개정 2020.1.9.) - 척추 - 목병/갑상샘비대 - 구강/치아상태/충치, 충치발생위험치아, 결손치아(영구치로 한정한다) 검사	



구 분		2019년 주요 내용	2020년 주요 변경내용	비고
V. 참고자료	참고자료 16	- 구강/구강상태/구내염 및 ... - 기관능력 - 병리검사 등/혈액/ - 병리검사/혈액형	- 구강/구강상태/치주질환(잇몸병), 구내염 및 ... - 카관능력<삭제> - 병리검사 등/혈액/...고밀도지단백(HDL) 콜레스테롤, 중성지방, 저밀도지단백(LDL) 콜레스테롤 <추가> - 병리검사/혈액형<삭제> - 허리둘레<추가>	
		(150~151쪽) <학생건강기록부>	(158~159쪽) <학생건강기록부>(개정 2020.1.9.)	<변경> 개정
		(152~153쪽) <문진표(초등학생/중고등학생)>	(160~161쪽) <문진표(초등학생용/중고등학생용)> (개정 2020.1.9.)	<변경> 개정
		(155쪽) <학생건강검사 결과 통보서>	(163쪽) <학생건강검사 결과 통보서> (개정 2020.1.9.)	<변경> 개정
		(156쪽) <학생구강검진 결과 통보서>	(164쪽) <학생구강검진 결과 통보서> (개정 2020.1.9.)	<변경> 개정
		(157쪽) <학생 신체의 발달상황 통계표>	(165쪽) <학생 신체의 발달상황 통계표> (개정 2020.1.9.)	<변경> 개정
		(158쪽) <학생건강검진 통계표>	<학생건강검진 통계표> <삭제>	<변경> 개정
		(159쪽) <학교 건강검진 결과 판정 및 기재방법 등에 관한 기준>	(166쪽) <학교 건강검진 실시방법·결과 판정 및 기재방법 등에 관한 기준> [시행 2020.3.1.][교육부고시 제2020-217호, 2020.2.13., 일부개정]	<변경> 개정
		(168쪽) 연령별 신장 성장도표	(175쪽) 연령별 신장 성장도표	
		(170쪽) <학생건강기록부 전산처리 및 관리지침>	(177쪽) <학생건강기록부 전산처리 및 관리지침> [시행 2020.3.1.][교육부훈령 제327호, 2020.2.13., 일부개정]	<변경> 개정